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方案

- 豫定利率 및 契約者配當을 中心으로 -

1997. 3

丁奉恩

盧秉鎳

睦鎮永

保 險 開 發 院

保 險 研 究 所

序 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質的 變化의 時期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保護와 指導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험시장의 開放幅이 확대되고 市場競爭原理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업에 대한 責任經營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自由化와 國際化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利自由化 및 금융산업간의 業務領域擴大 措置는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가일층 촉진시키고 있다.

生命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 역시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일환으로 1994년 이래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검토할 예정인 第4段階 保險價格自由化는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아직 미흡하여 보험회사가 經營戰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격 자유화의 兩大 軸인 保險契約者配當制度和 保險料算出基礎의 自由化方向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株式會社 形態로 운영되는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는 株主와 保險契約者간의 利益이 상충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保險契約者配當制度를 고찰함으로써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を 유지하는 한편 保險契約者の 利益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보험료산출기초 측면에서는 豫定利率의 自由化와 병행하여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標準責任準備金制度의 導入方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가격자유화 결과에 대하여 評價를 내리고, 외국제도를 참고로 하여 계약자배당제도의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즉 利益剩餘金의 결정단계로 부터 剩餘金의 内部留保, 配當方式에 이르기 까지 계약자배당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先積立後配當制로의 전환, 배당방식의 단순화, 消滅時配當의 導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標準責任準備金制度의 중심이 되는 責任準備金 評價利率의 산출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制度導入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본 보고서가 향후 보험가격자유화의 推進方向 設定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험계약자, 보험업계, 학계 그리고 정책당국간의 보다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保險消費者를 保護하는 동시에 保險會社の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本 報告書는 보험연구소의 정봉은 부연구위원, 노병윤 선임연구원, 목진영 책임연구원, 유병순 책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원고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 주신 조해균 교수, 오창수 교수, 그리고 원고내용을 충실히 檢討해 준 김규승 연구위원, 이근영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研究擔當者 個人的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3月

保險開發院

院長 金勝濟

< 目 次 >

I . 序 論	1
II . 金融環境의 變化와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4
1. 金融環境의 變化	4
2.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18
III . 우리나라 生命保險 價格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29
1. 契約者配當制度	29
2. 豫定利率制度	47
IV . 契約者配當自由化의 推進方案	54
1. 概觀 및 基本方向	54
2. 配當可能 剩餘金의 決定	56
3. 契約者配當의 分配方法	60
4. 先積立後配當制度의 擴大	63
5. 消滅時特別配當	65
6. 契約者配當 例示	67
7. 契約者配當 自由化의 副作用 및 對應方案	71

V. 豫定利率 自由化 推進方案	74
1. 概觀 및 基本方向	74
2. 豫定利率 自由化 方案	78
3. 標準責任準備金 評價利率 算出方案	83
4. 自由化 效果 및 時期	105
5. 豫定利率 自由化의 副作用 및 對應方案	114
VI. 結論	119
<부록> 主要國의 生命保險 價格制度	122
1. 美國	125
2. 英國	144
3. 日本	152

< 表 目 次 >

<표Ⅱ-1> 主要國의 金利自由化	10
<표Ⅱ-2> 段階別 受信金利自由化 比重	13
<표Ⅱ-3> 殘餘 規制金利(1996년 7월 현재)	13
<표Ⅱ-4> 短期市場性 商品의 自由化 推移	14
<표Ⅱ-5> 金利自由化 推進計劃 및 經過	15
<표Ⅱ-6> 生命保險 資産運用對象 比重	19
<표Ⅱ-7> 金融機關別 預金의 占有率 現況	22
<표Ⅱ-8>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經營破綻 主要 要因(1976 1991)	24
<표Ⅱ-9>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25
<표Ⅱ-10> 豫定維持費 比率 推移(收入保險料 基準)	27
<표Ⅱ-11> 會社別 死差配當率 推移	28
<표Ⅲ-1> 生命保險會社의 利原別 損益現況(1995년)	31
<표Ⅲ-2> 責任準備金 積立方法別 損益變化	34
<표Ⅲ-3> 投資收益率 推移	35
<표Ⅲ-4> 責任準備金 積立狀態에 따른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의 配分方式	36
<표Ⅲ-5> 保險會社의 利益剩餘金 處分	38
<표Ⅲ-6> 配當種類別 規模 및 構成比(1995년도)	44
<표Ⅲ-7> 우리나라 豫定利率의 變遷過程	49
<표Ⅴ-1> 商品別 豫定利率	78
<표Ⅴ-2> 預金銀行 負債現況	83
<표Ⅴ-3> 豫定利率別 月納 保險料 例示	88

<표 V-4> 利子率 變動에 따른 責任準備金의 變化	89
<표 V-5> 評價方法別 比較	92
<표 V-6> 主要 金利指標	95
<표 V-7> 發行年度方式의 評價利率 算出	96
<표 V-8>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發行年度方式 基準)	97
<표 V-9> 保險料와 準備金의 關係	99
<표 V-10>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評價年度方式 基準)	101
<표 V-11>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推移	104
<표 V-12> 豫定利率의 策定과 諸要素와의 關係	106
<표 V-13> 發行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108
<표 V-14>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109
<표 V-15> 評價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111
<표 V-16>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111
<표 V-17> 시나리오별 維持契約 準備金 占有率	113
<표 V-18> 豫定利率 變化에 따른 商品種類別 保險料 比較	115
<표 부록-1> 主要國의 生命保險 價格 規制制度 概要	124
<표 부록-2> 生命保險 標準責任準備金 算出要素	128
<표 부록-3> 動的最大利子率 算出 方式 (要約)	130
<표 부록-4> 生命保險 動的最大利子率	134
<표 부록-5> 一時納 即時年金의 動的最大利子率	135
<표 부록-6> 年金의 加重值 (1)	136
<표 부록-7> 年金의 加重值 (2)	137
<표 부록-8> 日本의 保險契約者 配當準備金 換入規模의 推移	162

< 그림 目次 >

<그림Ⅱ-1> 市中金利와 生命保險會社の 運用資産 收益率	20
<그림Ⅲ-1> 準備金 積立 및 剩餘金 配分	37
<그림Ⅳ-1> 責任準備金 積立方式別 責任準備金額의 變化	57
<그림Ⅴ-1> 保險市場에서의 價格形成	76
<그림Ⅴ-2> 市場利率 變動에 따른 評價利率	103
<그림 부록-1> 市場金利와 動的最大利率과의 關係	132
<그림 부록-2> 日本의 生命保險 豫定利率 推移	154

I . 序 論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産業은 國民經濟의 급속한 성장과 政府의 保護・育成에 편승하여 수익성보다는 成長性에 치우친 經營戰略을 채택한 결과, 타 금융권보다 높은 外形成長을 이룩하였으나, 급격한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리의 하향기조와 固有業務領域의 蠶食 및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한편 金融産業의 自由化(liberalization), 世界化(globalization) 및 證券化(securitization)로 요약되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여 금융산업을 재편성하고 民間自律의 風土를 조성하여 競爭力을 確保하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생명보험분야 역시 1987년 對內外的 開放¹⁾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金融自由化 措置의 일환으로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價格自由化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중 1998년 이후 검토 예정인 費差配當自由化와 豫定利率 및 豫定事業費率의 自由化는 생명보험 상품 가격자유화의 최종단계로서, 이의 시행과 더불어 회사별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적인 보험료의 산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價格引下를 통한 市場確保 競爭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²⁾ 가입을 계기로 經濟的需要審査(ENT ; Economic Needs Test)³⁾가 廢止되고, 國境間去來

-
- 1) 1987년부터 현재까지 內國社 6개사, 地方社 9개사, 合作社 7개사, 外國社 5개사 등 총 27개의 生命保險會社가 新設되었음.
 - 2) 會員國間 經濟協力 및 政策調整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기국의 하나로서 미・소 冷戰體制下에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守護하기 위하여 1961년 9월에 창설되었음.
 - 3) 保險會社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이 資格要件, 設立 妥當性 등을 심사하는 사항으

(Cross-Border)⁴⁾가 許容됨에 따라 신규회사의 진입과 가격덤핑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은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의 가격자유화는 無原則的인 가격의 산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의 無形的, 專門的인 特性和 社會性, 公共性에 입각하여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일반상품과 달리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⁵⁾되므로 高度의 專門性을 요하게 된다. 또한, 事前的價格인 保險料 외에도 決算을 시행한후 剩餘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配當(事後的價格)까지를 가격의 결정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보험료 산출단계에서부터 將來의 經濟狀況을 예측하여 회사의 부실화 방지와 契約者 權益의 保護를 동시에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국내의 보험환경은 金融의 世界化에 따른 金利의 下向安定化가 예측되고, 保險技術의 先進化와 綜合金融化에 따른 조달코스트의 감소 및 규모의 경제로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경영방식으로는 深刻한 經營危機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보험정책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 부여를 중심축으

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設立要件 緩和 및 透明性 提高로 新規進入 및 引受合併이 이루어질 것임.

4) 外國會社가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자회사 등의 營業據點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國內消費者에게 보험상품을 販賣할 수 있는 國境間去來로 損害保險의 수출입적하보험과 항공보험은 기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生命保險 전종목 및 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장기상해보험, 선박보험 등에 도입하였음.

5) 契約者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被保險者 團體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加入開始부터 終了까지 기간중 基礎率(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등)을 예상하여 收支相等의 原則(Equivalence Principle)에 의거하여 산출함.

로 하여 自己責任의 強化와 契約者 保護에 그 기초를 두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세계화, 자유화에 따른 國際競爭力 強化 및 自生力 確保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豫定利率과 契約者配當을 中心으로 생명보험의 가격 자유화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먼저 계약자배당에 관해서는 現行 配當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檢討하고, 예정이율에 관해서는 보험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豫定利率의 自由化 方向과 準備金積立의 充實化를 도모하기 위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制度 도입에 따른 評價利率制度로 나누어 예정이율의 二元的體系에 대해서 기술하므로써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金融環境의 變化와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1. 金融環境의 變化

가. 政府의 金融產業 規制

金融產業은 政府의 介入이 가장 많은 분야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 정도 및 범위는 상이하며, 그것은 각국 금융산업의 歷史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일머니의 유럽유입은 유로시장을 확대하였고 이는 다시 유럽 각국의 금융시장을 자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은 현재 金利, 商品開發, 行政規制 등에 있어서 自由化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부족한 金融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위하여 국가가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정부가 금융산업에 積極的으로 介入하는 理由는 무엇이며, 금융산업 자율화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아가 他金融機關의 自由化와 保險產業 自由化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金融去來는 현재와 미래의 相異한 時點間의 資源配分이기 때문에 情報의 不完全性·非對稱性이 불가피하다. 直接金融市場에서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의 신용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알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資金剩餘者와 資金不足者 간에 원활한 자금이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은 금융중개기관이 중간에 개입하는 間接金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금자는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에게 대출하는지, 차입자를 정확히 심사하는지, 차입자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情報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金融機關 經營者의 道德的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금융기관 활동에 介入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政府介入의 根據로서는 市場失敗의 可能性과 더불어 금융시스템의 安定性 確保를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금융산업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信用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이다. 안정적 화폐제도와 금융시장의 편익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향수되므로 일종의 公共財的 性格을 지닌다. 한 金融機關의 倒産은 금융시장의 信賴度를 損傷시키고 타금융기관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어 결국 經濟活動을 低下시키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즉, 신용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이유 이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企業活動을 促進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자원을 직접 조달하고 金利規制 등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보험사업의 고유특성에서 비롯되는 규제도 있다. 保險事業은 公共性을 띠고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營業하는 特殊한 事業이다. 保險事業이 인간의 경제생활에 따라다니는 각종의 위험을 보험단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分散하고, 그 구성원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자금으로 축적하여 이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金融制度(financial instruments) 가운데 독특한 機能을 하고 있다⁶⁾. 이에 따라 보험사업은 어떠한 사업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社會性·公共性이 강조되고 보험사업자는 株式

6) Kenneth Black, Jr., Harold D. Skipper, Jr., *Life Insurance*, 11 ed., 1987, p.7 참조. 특히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으로서 저축성과 보장성을 지니고 있어 생명보험사업자는 자본시장에서 투자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會社 또는 相互會社로서 비록 私企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準公企業 (quasi-public corporation)으로 다루고 있다⁷⁾.

보험사업은 人保險事業에 있어서는 100억원 이상, 損害保險事業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가진 株式會社 또는 相互會社로서 財經院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를 영위할 수 있다(保險業法 第5條, 第6條). 즉 보험사업은 그 성질상 시장의 進入이나 退出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準公企業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事業이다.

보험감독의 방법은 公示主義, 準據主義 및 實質的 監督主義 등으로 나누어나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實質的 監督主義에 따라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英國에서는 보험사업의 자율규제로 정부의 통제는 거의 없었으나 몇몇 중요한 보험회사의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보험감독이 강화되었음은 주목할 일이다⁹⁾.

우리나라에서 보험감독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實質的 監督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資格을 制限하고(第5條 第2項, 第6條) 또한 보험사업의 許可(保險業法 第5條)를 비롯하여 보험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財經院長官의 監督을 받도록 하고, 보험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保險監督院의 檢査(保險業法 第14條)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정부의 금융시장 규제 형태는 競爭制限 規制와 業務運營 規制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 경쟁제한 규제는 다시 신규참여 제한과 업계내 경쟁제한으로 나눌

7) 44 C.J.S. Insurance, 1993, p.208. 梁承圭, 保險法, 1992, 56면.

8) Kraus, a.a.O., S.22f., 梁承圭, 앞의 책, 41면 이하 참조.

9)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3d., 1993, p.18f. 참조.

10) 井口富夫, 現代保險業の産業組織, NTT出版, pp 165 172

수 있다. 新規參與 制限은 금융기관 수의 증가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개별 금융기관의 經營狀態를 惡化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독과점을 발생시켜 결국에는 資金配分の 效率性 및 公正性을 沮害하게 된다. 業界內 競爭制限 方法에는 점포 신설, 신상품 개발, 가격(금리, 보험료 등)의 인허가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계내 경쟁제한은 신규참여 제한과 마찬가지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비효율적 기관을 구제하는 셈이 되어 社會的 損失을 야기한다.

업무운영 규제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資産과 그 保有比率을 制限하는 것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든지 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 ;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s)¹¹⁾ 혹은 위험보유한도 설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 제한은 파산가능성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預金保險制度나 保險保證基金의 존재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moral risk)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험사업에 대하여 政府가 監督權을 행사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는 공정한 보험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保險業法은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즉 保險事業의 許可(第5

11) 현재 미국에서 보험회사의 위험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각 위험별 등급계수를 산출하여 법정 최저 자본금을 유지토록 규제하고 있는 제도

C1 Risk : 자산가치의 감소 위험

C2 Risk : 보험료를 부적절하게 책정할 위험

C3 Risk : 금리변동 위험

C4 Risk : 일반적인 경영 위험

條 第1項), 保險約款을 비롯한 基礎書類의 認可(第5條 第3項 第3號), 基礎書類의 變更認可(第7條), 보험사업자의 兼營制限(第9條, 第10條), 보험사업자의 공동행위를 위한 相互協定の 認可(第17條) 및 財産利用에 대한 制限(第19條), 責任準備金の 積立(第98條), 保險募集에 관한 規制(第144條 以下), 保險紛爭의 調整(第197條의2 以下), 保險料率의 檢證(第198條의2) 등의 규정은 모두가 保險事業의 公正한 去來를 도모하고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商法 第663條는 원칙적으로 保險篇의 規定을 당사자의 特約으로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법을 相對的 强行規定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꾀하고 있다¹²⁾.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산업에도 規制緩和와 自由化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最小限의 規制와 事後的 監督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가격규제, 점포증설규제, 자산운용규제, 금융기관 인사권에 관한 규제 등 금융사업 전반에 깊숙히 개입하던 각종 규제들이 撤廢되고 가격자유화, 점포의 자율설치, 자율운용자산의 신설, 인사자율권 부여 등 自律性이 한층 強化되고 있다. 이는 일련의 금융환경 변화와 그에 대응한 금융자유화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金融環境 變化와 金融自由化

世界 金融市場은 自由化의 길을 급속히 걷고 있다. 최근의 국제적 금융자유화 조치에는 金利自由化와 資本自由化를 들 수 있다.

美國에서는 聯邦準備制度의 權限強化, 金利自由化와 經濟原理 導入을 主目的으로 하는 金融制度改革法(Depository Institution Deregulation & Monetary

12) 梁承圭, 앞의 책, 56면 참조.

Control Act)이 제정된 1980년 이후 금리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3월에 저축예금에 대한 金利上限規制(Regulation Q)를 撤廢함으로써 금리자유화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규제 철폐에는 화폐시장증서(MMC ; Money Market Certificate)¹³⁾,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¹⁴⁾, Super NOW계정¹⁵⁾ 등 금리규제를 회피하는 각종 신상품 개발이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선진국중 금융시장 규제가 가장 강했던 日本도 1989년 대출금리를 자유화한데 이어 1994년까지 예금금리도 完全自由化하였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유금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자유화에는 금리자유화 외에도 외환거래 규제 폐지, 외국투자가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등 資本自由化가 있다¹⁶⁾.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은 1990년 7월에 발효된 자본이동자유화 지침에 의해 타회원국에 개인의 구좌를 개설 할 수 있게 되었고 短期資本의 移動에 대한 規制도 撤廢하였다. 또한 단일 면허주의에 따라 EU회원국에 영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등)은 별도의 허가없이도 타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미국시장에서 자금을

13) 단기재정증권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6개월물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증서

14) 금리상한 및 만기규제를 받지 않고 3회 이하의 수표발행을 포함해 월 6회의 계정 이체가 가능한 자유금리부 예금계정

15)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결합함으로써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자지급이 허용되는 형태가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계정이며, 이를 수정하여 금리제한 규제를 철폐한 것이 Super NOW계정임.

16) 조정구,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 13 16.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86년부터 외국 회사들도 특정 조건하에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1990년에는 우량 기관투자가에 대한 사모증권의 등록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미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표Ⅱ-1> 主要國의 金利自由化

국 가	금리자유화 내역
미 국	- 1970년, 거액CD의 금리자유화 이후 1970년대에 걸쳐 MMMF(71), NOW계정(72), CMA(77), MMC(78) 등 단기시장 성상품이 도입됨 - 1980-86년에 걸쳐 금리자유화(86.3월 요구불예금 이외의 모든 예금금리 자유화 완료)
영 국	- 1970.10, 어음교환소가맹은행간의 금리협정 폐지 - 1975.2, 1만파운드 이하 예금의 금리상한규제 폐지
독 일	- 1967, 금리자유화
프랑스	- 1986.5,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자유화 - 1990.1,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자유화
일 본	- 1979.5, CD판매개시 - MMC 창설(85.3), 거액정기예금 창설(85.10), 소액MMC 창설(89.6) 이후 최저발행한도를 지속적으로 인하 - 1991-93년, 정기예금의 단계적 자유화 - 1994.10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자료 : 신한종합연구소 역, 세계의 금융자유화, 1993 참조 작성.

- 주 1. 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
 2.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3. MMC(Money Market Certificate) : TB(미 재무증권) 금리기준 정기예금
 4.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 증권사 개방형 투자신탁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함께 海外에서의 資金調達이 自由化 되는 한편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정부규제를 통해서 資金을 임의로 配分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通商摩擦, 競爭力 弱화, 金融市場 歪曲의 副作用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산업을 재편성하고 民間自律의 風土를 造成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정책을 최근 서둘러 왔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금리자유화, 보험 가격자유화 등의 자유화 부문이다.

다. 우리나라의 金利自由化

우리나라는 1970년대말까지 輸出主導의 經濟政策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정책 금융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金融費用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공금리를 비롯한 각종 金利를 規制하였다. 즉 금융시장의 내재적 위험인 시장실패 및 신용질서 확립의 목적 이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취하게 되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金利規制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정책금융의 과다, 시중금리와 공금리와의 괴리, 각 금리간 연계성 저하 등 金融構造의 歪曲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세계 각국의 금융자유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일부 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金利上昇 억제를 위한 窓口指導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⁷⁾.

17) 80년대 초부터 시장실세금리 조건의 기업어음(1981년), 양도성예금증서(1984년)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인 CMA(Cash Management Account) 및 가계금전신탁(1985년), BMF(Bond Management Fund) 및 기업금전신탁(1987년)을 도입하였다. 은행대출금리의 밴드제 도입 및 밴드폭 확대, 콜 금리 자유화, 무보증 회사채 발

그 이후 對內的으로는 金融市場機能을 提高하여 金融산업의 質적 발전을 추구하고, 對外的으로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의 金融시장 개방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金融서비스협상에 따른 金融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金利自由化를 다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물경제여건, 金融시장상황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4단계에 걸친 점진적 金利자유화 계획을 1991년 8월에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第1段階 自由化(1991년 11월)로는 상품의 특성상 자유화 필요성이 크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 및 3년 이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다. 第2段階 自由化(1993년 11월)는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의 경우 은행경영수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상승압력등을 고려하고 수신의 장기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2년 이상(적금 등은 3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다. 第3段階 自由化(1994년 7월 1996년)는 金利자유화의 사실상 완료 단계로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단기수신상

행금리 자유화(이상 1984년), 최우량기업 발행 CP매입 금리의 상한 철폐(1985년), 회사채, 금융채 및 CD의 발행금리(이상 1986년)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의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창구지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규제를 지속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8년 12월에도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에 힘입어 金利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때 취해진 金利자유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 및 제2 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단, 재정지원이 포함된 자금은 제외),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신용금고는 1년 이상)와 단기 거액수신금리 및 실적배당 상품금리, 금융채 및 회사채발행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시행후 또다시 금리가 상승하고 노사분규 및 수출부진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1989년 하반기부터 창구지도를 실시했고, 은행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1989년 11월)토록 하였으며, 제2금융권의 단기금리를 인하(1990년 6월)토록 함으로써 金利자유화는 실질적으로 실패하였다.

품의 금리를 「장기·거액→단기·소액」 순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1994년 7월 1차 금리자유화 이후 4차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第4段階 自由化(1997년 이후)는 금융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여 국제수준에 이르고 경제여건도 성숙단계에 진입하며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시장금리수준도 국제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하에 1995년 11월에 3단계 금리자유화가 완료됨으로써 금융기관 총수신고의 약 83%, 은행수신고의 약 65%, 총여신고의 약 95% 이상의 금리가 자유화된 상태이다. 즉 현재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수신금리와 농수축산자금 등의 政策金融을 除外한 대부분의 여·수신 금리가 自由化된 셈이다.

<표Ⅱ-2> 段階別 受信金利自由化 比重

(단위 :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94)	3단계(95.7)	3단계(95.11)	잔 여
전체수신	52.7	17.6	7.6	1.9	3.4	16.8
누 계	-	70.3	77.9	79.8	83.2	100.0
은행수신	17.8	24.8	12.3	2.8	7.0	35.3
누 계	-	42.6	54.9	57.7	64.7	100.0

<표Ⅱ-3> 殘餘 規制金利(1996년 7월 현재)

수 신	여 신
-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 예치기간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 농·수·축산자금 - 수출산업 설비금융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

금리의 자유화와 더불어 단기시장성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의 최저발행금액 인하와 만기축소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금리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표Ⅱ-4> 短期市場性 商品の 自由化 推移

상 품	취급기관	만 기		최저금액(만원)		
		'95.7이전	'95.7	'95.7이전	'95.7	'95.11
C D	은 행	60 270일	30 270일	3,000	2,000	1,000
거액상업어음	은 행	60일 이상	30일 이상	3,000	2,000	1,000
거액무역어음	은행, 투금	60 180일	30 180일	3,000	2,000	1,000
거 액 R P	은행, 증권	60일 1년	30일 1년	3,000	2,000	1,000
거 액 C P	투 · 종금	60 270일	30 270일	3,000	2,000	1,000
중 개 어 음	투 금	60 180일	30 180일	5,000	3,000	1,000
표 지 어 음	은 행	60 180일	30 180일	2,000	1,000	500
	투 · 종금	1 180일	1 180일	500	500	500
	상호 금고	60 180일	30 180일	1,000	1,000	500

주 : CD, 거액상업어음, 거액무역어음, 거액RP, 거액CP의 수신금리는 1단계(1991.11)에서 자유화

이러한 금리자유화에 의해 은행의 수신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계 및 기업의 金利敏感度가 높아지고 금융기관간 受信競争이 深化되면서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경우 금리가 자유화된 CD, RP,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등이 總受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말 6.2%에서 1995년 5월 7.7%로 확대되었다.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금전신탁 등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고금리상품의 한시판매, 예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경품이 딸린 상품개발 등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서비스 중심의 비가격경쟁에서 高金利 中心의 價格競爭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리자유화가 장기예수금으로부터 단기예수금으로의 순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제1·2금융권 수신에서 장기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년말 61.9%에서 95년 5월말에는 70.5%로 상승하였다.

<표Ⅱ-5> 金利自由化 推進計劃 및 經過

구 분		계 획	자 유 화 내 용	실시 시기
1단계 (91.하 - 92)	수신	CD, 거액RP 등 단기시장성 신상품	- 은행권 : CD, 거액RP, 거액상업어음 및 거액무역어음 일반대출, 3년만기 정기예금 등 - 제2금융권 : CP, 3년이상 예금 등(신용금고는 2년)	'91.11.21 시행
	여신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단기여신	- 은행권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연체대출 이자 - 제2금융권 : 상업어음할인(신탁, 신용금고, 보험), 투금사의 기업어음할인 및 무역어음할인 등	
	채권	2년이상 회사채	- 2년이상 회사채	
2단계 (93년)	수신	2년이상 정기예금 및 3년이상 정기적금 등	- 은행권 : 2년이상 정기예금, 3년이상 적금 등 - 제2금융권 : 2년이상 예금, 3년이상 적금 등(신용금고는 1년이상 예금 및 2년이상 적금 등)	'93.11.1 시행
	여신	제1·2금융권 여신(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 제외)	-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재정 및 한은지원대상 대출 제외)	
	채권	2년미만 회사채, 2년이상 금융채	- 2년미만 회사채 - 금융채 및 국공채	

구 분		계 획	자 유 화 내 용	실시 시기
3단계 (94-96)	수 신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 확대 (94-95년), 요구 불예금을 제외 한 2년미만 수 신(96년)	- CD, CP, RP의 최단만기 단축 - 은행표지어음발행 허용	'94.7.18 시행
			-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94.12.1 시행
			- 6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 단기시장성상품 자유화폭 추가 확대 (최단만기 추가 단축, 최저발행금액 인하)	'95.7.24 시행
			- 6개월미만 정기예금 - 1년미만 적금 -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발행한도 추가 인하	'95.11.20 시행
	여 신	한은자금지원대 상정책자금대출 (94-95년)	- 한은 총액한도 대출 관련 자금 금리를 우대 금리범위내에서 자유화	'94.12.1 시행
			- 한은총액한도 대출 관련 자금 금리폭 변경 (우대금리이내 → 우대금리+가산금리)	'95.7.24 시행
			- 한은총액한도 대출 관련 상업어음의 범위 확대 - 제조업으로 국한된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비 제조업까지 확대적용	'95.11.20 시행
4단계 (96년 이후)	수 신	전단계 미완료 단기수신 및 요 구불예금	미 정	

라.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

금리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資本自由化이다. 과거 자본이동을 제약했던 것은 금리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국내 금리가 외국 금리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海外에서 貸出을 받거나, 해외에서 증권발행 혹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증권매각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국내 금리규제가 실효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資本流入 規制는 기업의 잠재적 자금원을 제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킴으로써 市場中心의 金融構造로의 改革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외환 및 자본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1985년에는 「外貨證券發行規程」, 「上場法人의 海外證券 發行 및 管理에 관한 規程」이 제정되어 국내상장기업이 국제시장에서 轉換社債(CB ; Convertible Bond), 新株引受權附社債(BW ; Bonds with Warrants), 株式預託證書(DR ; Depository Receipt)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1992년에는 약 62억 달러, 1993년 약 97억 달러, 1994년에는 약 151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국내에 도입되어 그 규모가 급신장하고 있다¹⁸⁾. 1994년도의 해외자금조달 규모는 원화로 환산하여 약 12조원(1994년 연평균 환율 1\$=803.62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년도 생명보험 총대출금의 43%에 달하는 규모이다.

1995년 1월에는 「外換制度改革 計劃」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 대출, 차관, 현지금융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외국인에 의한 국내 증

18) 권재중,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5, pp 121 ~ 124.

권투자도 자유화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OECD의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자본거래에 장애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가. 金利自由化와 生命保險 價格自由化의 關係

금리자유화와 자본자유화는 長期的으로 金利의 下落, 金利變動性的 增加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실세금리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會社債 流通收益率은 장기적으로 下落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자유화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면서 자금의 초과수요에 의한 만성적인 고금리현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적인 資本市場 開放으로 국제적인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추가적인 金利下落도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시중금리는 1.6 ~ 8.2%²⁰⁾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아직 차이가 크다. 따라서 資本市場의 開放과 더불어 금리차에 의한 국내로의 資本流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콜금리, CD유통수익율, 통안증권 유통수익율, 회사채 유통수익율 등 시장금리 지표들간에 상관성이 커져, 각 수익율간의 상관계수가 금리자유화 이전인 1989 ~ 91년간에 0.65 ~ 0.87 이었던 것이 1992 ~ 94년간에는 0.82 ~ 0.96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定期預金金利와 會社債流通收益率의 경우 그 격차가 1991년

19) 권재중,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5, pp91 ~ 93.

20) '95년 5월 현재 주요국의 프라임레이트 : 일본 1.63%, 미국 8.25%, 독일 4.5%, 영국 6.0%

6.2 7.6%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0.7 2.7%로 축소되어 預貸金利와 市場金利 간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연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¹⁾. 이는 은행권이 실질금리 변동에 맞춰 정기예금 금리를 변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리자유화 이후 시장금리의 단기적 변동성은 다소 확대되어 금융기관들의 金利危險을 增大시키고 있다.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金利豫測力의 重要性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生命保險産業은 保障機能과 더불어 다수의 자금잉여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金融仲介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절반가량이 대출금으로 운용되므로 금리와 무관할 수 없다.

<표 II-6> 生命保險 資産運用對象 比重

(단위 : 억원, %)

구 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부동산	기타자산	총자산
금 액	113,220	202,071	337,483	55,510	42,710	750,994
(비 중)	(15.1)	(26.9)	(44.9)	(7.4)	(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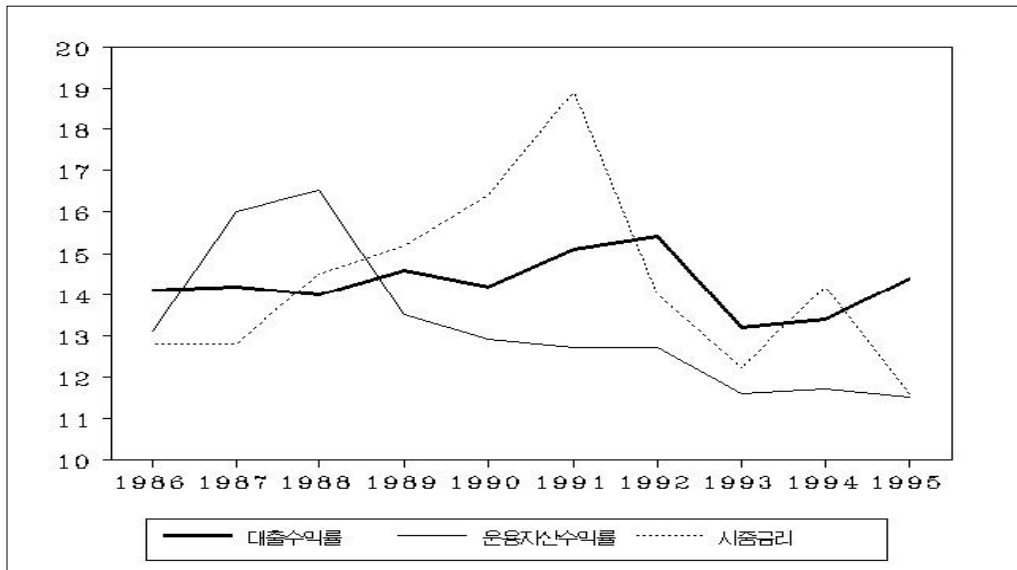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1996. 11

최근 與信金利自由化에 따라 대기업 등 우량대출업체들은 저금리의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低金利 貸出을 활용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대출처가 중소기업 위주로 변모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출자금 회수위험이 높아져 資産運用收益率의 變動性도 增加할 것이다. 자산운용수익율은 보험수리적으로 볼 때 예정이율 설정 및 배당금의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21) 한국은행, 한은정보, 1995.10

고 있어 보험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타금융권의 금리수준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림 II-1> 市中金利와 生命保險會社の 運用資産 收益率



1980년대 후반 14~18%였던 市中金利(會社債 流通收益率)가 1992년 이후 점차 下落하여 1995년에는 11%대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시중금리의 下向安定化 경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예측하고 있는 WEFA에서는 1997년 2000년까지 우리나라 국채 수익율이 12.0%~12.6%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²⁾. 이것은 80년대 중반 보다 2~6%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保險會社の 資産運用收益率도 점차

22) 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5.11.

下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주식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투자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현재와 같은 체계하에서는 배당 뿐 아니라 이차역마진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金利自由化는 곧 금융기관간 특히 저축기관간 격심한 가격경쟁을 의미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보장함에 따라 타금융권 상품과의 차별성은 있지만, 貯蓄性保險이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타금융권의 수신금리 자유화와 무관할 수 없다. 먼저 생명보험상품이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價格競爭力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의 가격도 자유화되어야 한다. 이미 위에서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규제금리 상품으로부터 자유화금리 상품으로의 資金移動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金融商品 比較能力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Ⅱ-7>에서 전체 금융권의 資金保有比率을 보면, 1991년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권(은행신탁 제외)과 보험권의 자금보유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非通貨機關의 자금보유비율은 伸張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自由化 比率이 높은 비통화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보험분야의 점유율 감소현상은 금리자유화의 영향 이외에도 短期貯蓄性商品의 판매를 줄이고, 經營效率 및 財務構造의 充實을 도모할 수 있는 中長期商品으로의 판매전환에 기인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점유율 감소는 무리한 외형경쟁이 아닌 회사체질에 맞는 상품의 다양화로 가격자유화 진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에도 財務健全性の 確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 強化 및 契約者保護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Ⅱ-7> 金融機關別 預金の 占有率 現況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6
통화기관	51.3	49.2	47.4	43.6	41.4	38.5	34.5	30.8	29.2	27.8	26.1
비통화기관	48.7	50.8	52.6	56.4	58.6	61.5	65.5	69.2	70.8	72.2	73.9
생명보험	12.1	12.5	12.5	12.9	13.1	13.8	13.4	12.5	11.7	11.7	11.8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96. 11

한편 각 금융기관별로 漸進的인 自由化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 상품중 特殊商品의 경우 부리이율이 1년만기 定期預金利率에 連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 2%) 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times$ 125%)로 부리되는 상품을 들 수 있다. 이 때 정기예금이율은 수신고 상위 5개 은행의 이율을 산술평균한 것이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자유화되어 있어 각 銀行의 價格戰略에 의해 보험상품의 부리이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예금 이율이 규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금리를 사용하였으므로 보험회사들도 은행금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은행들이 獨自的인 金利設定 戰略을 채택할 수 있어 長期安定的 金利를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함께 보험업계 독자의 예정이율 체계와 부리이율 체계가 요구된다.

나. 價格自由化의 推進效果

가격자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自由競爭原理의 實質的 效果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가격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많은 利益을 示顯했다 하더라도 타보험 회사와 同一한 配當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가격에 관한 각 보험회사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험료의 인하, 계약자배당률의 인상 등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이는 곧 契約者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創意的, 戰略的, 責任經營의 風土를 造成한다. 과거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채널, 자산운용, 가격경쟁면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經營戰略은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보험회사의 過當競爭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金融產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창의적·전략적 책임경영을 저해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國際競爭이 활발한 작금에는 產業體質을 허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각 보험회사가 형편에 맞는 고유의 경영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經營技法 및 保險技術의 發展을 誘導한다. 가격자유화의 요체는 보험회사의 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실적은 언더라이팅, 투자, 경영효율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각 보험회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기법 및 보험기술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격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消費者들의 價格敏感度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에 뒤떨어질 경우 과거에 비해 쇠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와 같이 보험가격자유화는 보험산업 경영체질의 劃期的 改善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副作用도 간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은 지나친 保險料 引下競爭과 配當競爭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가격이 자유화될 경우 販賣量 増加를 위해서 보험료 인하경쟁과 배당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보험료 인하경쟁이 장래의 보험금지급에 부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消費者利益을 增大시키고 경쟁력있는 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므로 경쟁의 원리에 합당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不充分한 價格設定은 막대한 營業損失과 財務不健全性을 초래한다.

미국 A.M. BEST사가 1976년 1991년간 倒産한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 不適切한 料率設定이나 剩餘金 不足이 도산의 가장 큰 原因으로 나타났다. 전체 290개(원인 확인 회사 207개)의 도산회사중 47개사가 요율설정이나 잉여금 부족으로 도산하였으며, 이는 도산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過度한 價格引下 競爭은 止揚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I -8> 美國 生命保險會社の 經營破綻 主要 要因(1976 1991)

경영파탄 원인	회사 수	구성비율(%)
부적절한 보험가격/잉여금 부족	47	22.7
급속한 성장	41	19.8
자회사 문제	40	19.3
자산의 과대평가	37	17.9
사기행위	16	7.7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15	7.2
재보험 실패	5	2.4
기타	6	2.9
계(원인 확인된 건수)	207	100
원인 불명 건수	83	

자료 : A.M. Best Company, Best's Insolvency Study Life/Health Insurers, 1976 1991

生命保險 價格自由化는 타금융권의 금리자유화 일정, 외국 보험사업자와의 경쟁,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保險料算出基礎와 配當自由化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6년도 현재에는 1단계와 2단계의 자유화가 시행되어 契約者配當 側面에서는 死差配當, 保險料算出基礎 側面에서는 예정사업비중 維持費 比率이 자유화된 상태이다. 1997년 4월부터는 利差配當과 豫定危險率이 자유화될 계획이다. 그리고 費差配當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率의 自由化는 1998년 이후에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표Ⅱ-9>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일정 대상	제1단계 (1994.4)	제2단계 (1995.4)	제3단계 (1997.4)	제4단계 (1998 이후)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료 :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 심의위원회 확정방안, 1993. 12.20

1996년까지 自由化된 部門에 대한 效果를 살펴보면, 먼저 예정유지비의 경우 자유화를 전후로 하여 예정유지비 비율 수준을 平面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전에는 예정유지비의 慢性的인 維持費差損으로 인해 하한선을 규제함으로써 비차손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예정유지비를 최소로 부가하여 타사 상품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였다.

과거에는 예정유지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사망급부금이 아닌 특정급부(예:암사망급부)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사업비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生命保險商品管理規程에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全體保險料를 基準으로 예정유지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상품포트폴리오의 차이가 감안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을 概括적으로 고찰해 보면, <표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후 사망보험을 제외한 종목에서 오히려 豫定維持費率이 多少 上昇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향상되는 등 모집효율성이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정유지비 引下競爭을 自制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을 명확히 정의²³⁾함에 따라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이 상향 조정된 요인도 작용하였다.

23)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정(1993. 7)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판매단위별로 계산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였으나, 제정후 회사별, 상품별로 통일되었음.
상품별 예시를 변경전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장내용	변경전	변경후
교육 보험	보험가입금액	생존급여금 총액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1,000	3/1,000 × 2 = 6/1,000
연금 보험	보험가입금액	연금연액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보험가입금액은 연금연액의 10배)	4/1,000	3/1,000 × 2 = 6/1,000

제정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대해 4/1,000를 적용하였으나, 제정후 보험가입금액의 3/1,000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제로는 제정전 기준으로 6/1,000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

<표 II-10> 豫定維持費 比率 推移(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

연 도	보 험 종 목				합계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1986	3.0	11.7	2.4	1.4	2.7
1987	2.8	11.0	1.9	1.2	2.2
1988	3.3	8.6	1.7	1.0	2.2
1989	2.9	8.7	2.0	1.0	2.3
1990	2.8	9.2	1.9	0.8	2.2
1991	2.8	8.8	1.8	0.9	2.2
1992	2.7	8.1	1.7	0.9	2.3
1993	2.7	7.7	2.6	1.1	2.7
1994	3.3	7.9	2.8	1.1	3.2
1995	3.6	7.9	2.0	1.0	3.2

한편 死差配當率에 관해서 보면, 과거에는 사차배당율을 일정범위내(예: 경험사망율의 20 ~ 30%)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사차배당율 最高限度를 適用함으로써 사차배당 범위를 실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均等配當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차배당율의 完全自由化가 시행된 1995년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 및 재무건전성에 따라 회사간 사차배당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5년도에는 사차배당율의 차이가 벌어져 사차배당율이 0% ~ 30%까지 多様な 樣相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財務構造가 堅實한 會社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하는 반면, 赤字를 보이는 회사들은 배당규모가 적거나 심지어는 사차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언더라이팅 실적에 의거하여 사차배당율이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配當準備金の 적립이 充實한 회사들중 일부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사들은 1994년 이후 동일한 사차배당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사(동아제외)들은 사차배당율의 자유화이후 1994년에 經驗死亡率의 25%, 1995년에 25%, 1996년에 20%를 사차배당율로 결정하여 배당율에 차이가 없다.

配當率 決定에는 實積 뿐만 아니라 將來의 收支推移, 經營政策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실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들이 배당경쟁에 消極的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행동양식이 향후 이차배당 자유화나 보험요율 자유화시에도 지속된다면 재무건전성이 허약한 회사들의 經營難을 加重시킬 뿐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자유화의 肯定的 效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Ⅱ-11> 會社別 死差配當率 推移

(단위 : %)

구 분	사 차 배 당 율					
	1996 ³⁾	1995 ²⁾	1994 ¹⁾	1993	1992	1991
기존 6개사	20	25	25	23	22	37
내국사	5	15	25	23	22	30
지방사	5	15	25	23	22	30
합작사	5	15	25	23	22	30
외국사	5	15	25	23	22	30

주 : 1) 1994년 배당율 : 영풍 30%, 코오롱 20%

2) 1995년 배당율 : 동아 15%, 영풍 30%, 네덜란드 및 프랑스 0%

3) 1996년 배당율 : 동아 5%, 한일 15%, 영풍 20%, 프랑스 0%

Ⅲ. 우리나라 生命保險 價格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契約者配當制度

가. 契約者配當의 性格 및 配當原則

1) 契約者配當의 性格

生命保險 保險料는 利率, 死亡率, 事業費 등에 관한 일련의 가정을 통하여 계산된다. 이때 이들 가정은 保守的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계약의 장기성에 기인한다. 환경을 단기에측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長期的인 環境變化를 豫測하기는 어렵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가정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이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금리가 하락하거나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하는 등 經濟社會的 變化로 인하여 가정에 못미치는 실적을 나타내면 계약자에게 追加保險料를 徵收해야 하나, 이것은 社會通念上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安全率(Safety Margin)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를 계약자들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가 급속하지 않으면 가정보다 나은 실적이 나오게 되고, 실적과 가정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이 契約者配當이다.

생명보험회사의 형태를 相互會社와 株式會社로 분류하면, 계약자배당제도는 상호회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상호회사는 配當商品(Participating Product)을 판매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사원인 계약자에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無配當商品(Non - Participating Product)을 판매하여 가정과 실적간의 차이를 주주의 이익으로 지급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보험주식회사도 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됨에 따라 배당제도가 더욱 복잡해 지게 되었다. 상호회사의 경우는 잉여금을 公平하게 分配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만,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와 더불어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분배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자배당을 保險料의 還給으로 본다면, 이원분석상 일부 항목에서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전체적으로는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利益示顯 部門에서는 배당을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금리차보장과 같이 이차손익에 관계없이 일정율을 확정적으로 배당하는 것도 인정된다. 보험료는 환경예측의 곤란성으로 인해 概略的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환경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환급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의 安定性 및 持續性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배분의 시기 및 방법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자배당을 개략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保險料의 還給”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으로는 배당을 “營業成果 參與”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지급계획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배당은 보장된 급부가 아니며 보험회사 경영성과의 일부를 資產形成 貢獻者인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특히 상호회사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계약자는 스스로 청약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택하였고 이유야 어떻든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보험자산 형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없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계약자배당은 보험료의 事後精算으로서 계약자에게 환불해 주는 부분과 보험회사의 경영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經營利益의 일부를 계

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두가지 개념을 混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자를 기록한 회사도 이원별로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율이 자유화된 부문에서는 배당폭을 보험회사 자율로 함으로써 비록 일부 부문에서 이익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Ⅲ-1> 生命保險會社の 利原別 損益現況(199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퇴직손익	준비금손익	기타손익	당기손익
기존사(6)	220,470	549,191	61,286	△2,362	△731,552	△128,392	△31,359
내국사(6)	49,783	△70,963	△280,132	△272	3,039	△14,311	△312,856
지방사(9)	20,799	△125,049	△206,396	△598	6,009	△25,675	△330,910
합작사(7)	25,544	△52,894	△134,470	△3	1,377	△8,934	△169,380
외국사(5)	3,003	283	△7,666	△128	215	△1,582	△5,875
전 체(33)	319,599	300,568	△567,378	△3,363	△720,912	△178,894	△850,380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5.

2) 契約者配當의 原則

원론적으로 계약자배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公平性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간 배당금액의 대소가 타당하게 결정되고 特定契約者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각 계약이 잉여금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實務적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계약자간 공평성을 유지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彈力性이 있어야 한다. 계약자배당은 잉여금의 배분이므로 經營實積이나 社會環境의 變化 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방법은 이들의 변화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簡明性이 있어야 한다. 배당은 공평성과 탄력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簡潔明瞭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리적 공평성을 다소 犧牲하더라도 一般大衆이 배당방식을 理解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알기 쉬울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배당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業務處理能力 및 實用性을 위해서도 간명성이 요구된다

넷째, 繼續性이 있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잉여금의 크기에 따라 매년 배당금을 변동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金融環境의 變動性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잉여금을 그대로 배당금에 반영할 경우 배당액 규모가 매년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는 豫測可能性을 중요시하는 계약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배당방법과 배당율은 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네가지 조건은 서로 相沖되는 부분들이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배당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공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간명성이나 계속성이 毀損되기 쉽고 탄력성을 강조하면 계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네가지 조건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優先順位를 부여하여 적당한 保險數理 및 공정한 會計慣行에 기초를 두고 관련 規定과 保險約款의 契約條項을 근거로 하여 배당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당율이나 배당소요액을 결정하기 以前에 자산가치의 帳簿價基準과 時價基準에 비추어 責任準備金 積立水準, 支給餘力水準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契約者配當前 剩餘金の 決定

배당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配當財源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당재원은 잉여금으로 부터 결정되는 바, 배당재원 결정문제는 곧 잉여금의 계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잉여금을 純資産에서 純負債를 差減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보험계약준비금이라는 특수한 계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投資資産의 상당부분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어 유가증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잉여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현행 剩餘金 決定課程을 살펴보자. 현재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은 契約者配當前剩餘金으로서, 이는 總收支差(투자수익을 포함한 수지차)에서 직전년도 말 K율²⁴⁾ 수준의 책임준비금 및 金利差保障所要額을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결정짓는가가 契約者配當前剩餘金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은 회사에 따라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K율 100%)을 적립하는 회사로부터 解約還給金式 責任準備金(K율 0%)을 적립하는 회사에 이르기 까지 회사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이 상이하다. 1996년 3월

24) K율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고준비금 적립수준인 순보험료식준비금을 1로 하고, 최저적립 수준인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0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 적립율보다 하향 조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_tV = K \cdot {}_tV^{(N)} + (1 - K) \cdot {}_tV^{(W)}$$

$$\text{단, } K = \frac{({}_tV - {}_tV^{(W)})}{({}_tV^{(N)} + (1 - K) \cdot {}_tV^{(W)})}$$

${}_tV$: 실제 준비금 ${}_tV^{(W)}$: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K : 보험료적립금 적립율 ${}_tV^{(N)}$: 순보험료식 준비금

말 현재 3개사(삼성, 흥국, 교보)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1개사(제일)가 K율 14.8%를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29개사는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따른 損益의 變化를 보기위하여 예를 들어본다. 아래 <표Ⅲ-2>의 A사는 당해년도에 자사의 K율에 따라 2,783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신규로 적립하였으며, 이 금액은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보다 48억원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 B사는 당해년도에 적립해야 할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보다 4,557억원 많은 4조 2,051억원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각각 48억원과 4,557억원 만큼 이익이 적게 계산되며, 이는 결국 配當可能 財源의 縮小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Ⅲ-2> 責任準備金 積立方法別 損益變化

(단위 : 억원, %)

구 분	해약환급금식 초과액 순증(A)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순증(B)	해약환급금식 초과적립률(C=A/B)
A사(K율 적용회사)	48	2,783	1.7%
B사(순보식 적용회사)	4,557	42,051	10.8%

책임준비금 적립기준과 함께 배당가능 재원의 규모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소로 資産의 評價를 들 수 있다. 生命保險會社의 資産은 現·預金, 有價證券, 貸出金, 不動産, 其他資産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評價方式에 따라 이익규모가 변동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評價損 또는 貸損充當金을 어떻게 계상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再評價 與否에 따라 이익

규모가 크게 변동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株式投資에 있어서 1995년 말부터 커다란 評價損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가손은 장부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을 무시하고 외면적으로 나타난 이익만을 기초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면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を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株價가 급속히 하락하여 상장주식 投資收益率이 생명보험업계 평균 3.2%에 그쳤던 1990년도에 많은 회사들이 不動産再評價를 통하여 투자수익을 제고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²⁵⁾. 과거 부동산수익액은 운용자산 수익의 2~5% 가량이었으나 1990년에는 不動産再評價를 통하여 운용자산 수익의 16.3%를 부동산수익으로 잡을 수 있었다.

결국 經營成果와는 관계없이 責任準備金の 積立方式이나 未實現利益의 평가 방식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의 규모가 크게 좌우된다. 배당자유화가 실시되었을 때 과도한 配當競争이 발생한다면 책임준비금 적립수준이 낮고 평가이익을 크

<표III-3> 投資收益率 推移

(단위 : %)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상장주식	26.1	63.9	44.4	16.3	3.2	3.1	3.4	9.0	12.3	8.1
부동산	4.1	4.0	4.7	5.1	27.6	9.5	6.3	3.1	3.3	3.4
운용자산	13.1	16.0	16.5	13.5	12.9	12.7	12.7	11.6	11.7	11.5

25) 1990년도 부동산 투자수익 및 수익률 : 대한생명 1,074억원 수익률 36.7%, 제일 60억원 수익률 6.5%, 삼성 1,319억원 수익률 17.1%, 흥국 854억원 수익률 96.6%, 교보 1,202억원 수익률 26.6%, 동아 545억원 수익률 50.9%

계 계상한 회사는 배당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당경쟁에 유리한 반면 반대의 경우는 동일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할 지라도 배당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가능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の 配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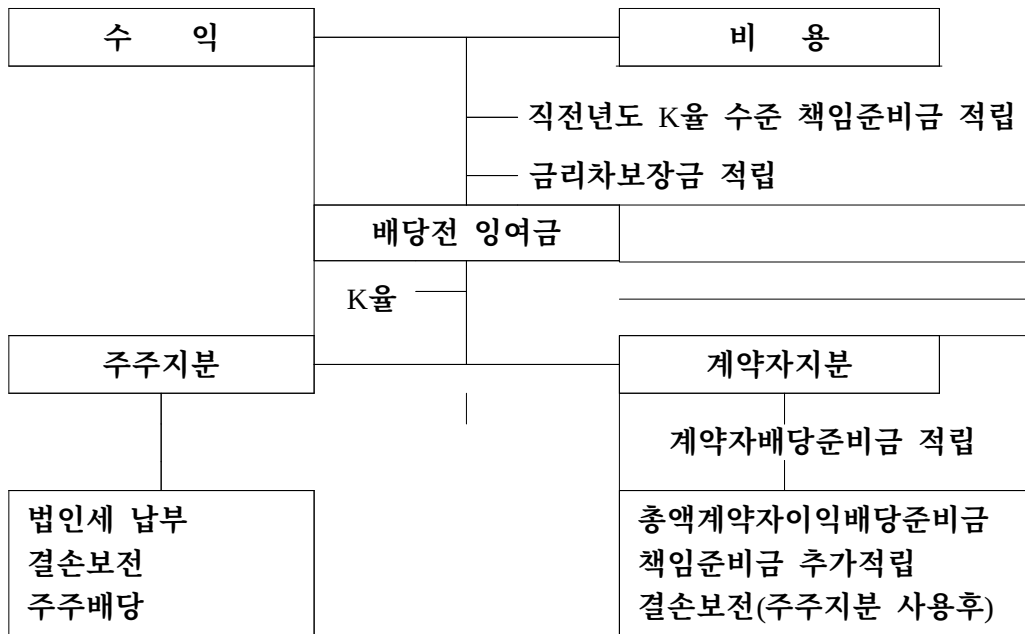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은 “生命保險會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指針”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회사의 책임준비금 積立狀態別로 株主持分の 上限을 제한하여 K율이 낮은 회사는 주주지분을 낮게 설정토록 하고 있다.

<표Ⅲ-4> 責任準備金 積立狀態에 따른 契約者配當前 剩餘金の 配分方式

K 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100% 이상	30% 이하	7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20% 이하	80% 이상
50% 미만	10% 이하	90% 이상

주주지분은 法人稅 納付, 缺損補填 또는 株主配當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주주배당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K율이 100%) 이상을 적립한 회사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다. 계약자지분은 당해 사업년도의 契約者配當準備金を 先積立하고 잔여금액은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차기 배당소요액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3년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Ⅲ-1> 準備金 積立 및 剩餘金 配分



자료 : 김성재, “환경변화에 따른 생보사의 경영리스크와 감독정책”, 한국위험관리학회 세미나 자료, 1994. 4, P90

이와 같이 일단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이 결정되면 이를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으로 분리하게 되는 데, 배당자유화에 앞서 株主配當 可能額의 범위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는 配當前 利益剩餘金의 30% 이내에서 주주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發生源泉에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지분은 인정되지만, 배당전 이익잉여금의 30%는 過度한 감이 있다. 英國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確定剩餘金의 10% 정도를 주주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日本도 결산시 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함으로써 주주지분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총잉여금의

99%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주주배당 실적을 보면 通常的인 狀況에서는 額面價의 10%를 지급하고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배당율을 낮추는 등 과도한 주주배당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해 政策當局이 干與하고 있고 또한 많은 상장회사들이 배당율을 액면가의 10%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만, 향후 보험회사의 自律性이 擴大되고 상장회사들의 배당율도 時價基準으로 결정되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지분을 결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III-5> 保險會社의 利益剩餘金 處分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임의적립금 이입	이익준비금 및 임의적립	주주 배당	차기이월 이익잉여	납입 자본	주주배 당율(%)
		수정후 전기이월	당기 이익						
1	삼성	120,754	51,590	1,112	8,718	9,360	155,378	93,600	10.00
9	흥국	2,830	4,075	431	-	-	7,336	8,000	0.00
9	교보	136,974	47,298	-	13,813	6,860	163,599	68,600	10.00
4									
1	삼성	154,705	25,287	3,574	-	9,360	174,205	93,600	10.00
9	흥국	6,697	3,306	-	-	-	10,003	8,000	0.00
9	교보	160,627	51,686	-	13,407	6,860	192,046	68,600	10.00
5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라.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積立과 内部留保

契約者配當前 剩餘金으로 부터 契約者持分이 결정되면 이를 어떻게 處分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르면, 契約者持分은 당해 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先積立하고 잔여금액은 총액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は 次期 配當所要額으로 優先 사용되어야 하며, 3년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積立時期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에 既支給된 배당금을 사후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적립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精算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당율이 결정되는 決算日에 이에 소요되는 배당준비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고 다만 지급될 배당율을 결정하기만 한다. 결정된 배당율에 의거하여 실제 지급된 배당금은 그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에 적립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된 배당금을 사업연도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보통 先配當後積立制度라 한다.

선배당후적립제도하에서는 어떤 사업연도 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정산할 수 있는 잉여금이 부족하게 된다. 물론 지속적으로 既支給 配當金を 적립할 수 있도록 黒字를 내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생명보험산업이 주식시장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제도에 의해 영업실적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실제로 몇몇 생명보험회사는 精算資金의 不足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익으로 계약자배당적립금 부족액을 보전한 경우가 있었다.

선배당후적립제도는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완전히 적립되기도 이전에 주주지분이 먼저 확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는 배당금 지급에 충분한 배당준비금을 적립했는지의 고려없이 잉여금의 30%이내에서 주주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株主配當은 契約者에 대한 義務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은 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재원의 부족가능성이 있음에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美國과 日本 등 外國에서는 배당율을 결정하는 사업년도 말에 배당소요액에 대한 적립이 실제 이루어지며, 배당금은 配當積立金에서 지급된다. 이를 先積立後配當制度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배당결정 시점인 사업년도말에 차년도 배당준비금을 실제로 적립하고 그것을 재원으로하여 차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는 각 계약의 보험년도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先積立後配當體制로의 轉換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은 차기 배당소요액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성격을 契約者配當率을 安定化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서는 既積立된 準備金²⁶⁾이 死差配當에 소요될 금액에 未達할 경우에는 사차배당수준이 政府가 提示하는 최고배당율(1996년도 현재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총액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사차배당재원의 先積立方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차배당 자유화에 따르는 무리한 배당지급을 억제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총액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 5%의 최고 사차배당만을 지급하는 회사가 1996년

26) 총액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의 합계 (1996년도 개정)

도에 총 33개사중 26개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배당율을 안정화시키고 배당 재원을 事前積立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 契約者配當의 分配

1) 分配方式

계약자배당의 분배방식에는 利原別配當方法(Contribution Plan), 資産割當方式(Asset Share Method), 經驗保險料方法(Experience Premium Method), 一律保險金增額 配當方法(Uniform Reversionary Method), 累加配當方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이원별 배당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리차보장, 장기유지특별배당 등의 독특한 형태를 가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별 손익을 무시한 채 배당율이 결정되는 등 이원별 배당방식을 變形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배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²⁷⁾.

① 金利差保障金

金利差保障 혹은 確定配當은 銀行金利와 豫定利率間の 差異를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예정이율을 實質利率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금리차보장을 통하여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차보장율은 終身保險인 年金保險과 이를 제외한 一般保險으로 구별하여 보장율을 달리하고 있다. 금리차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7) 재정경제원,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1996.

- 금리차보장금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 금리차보장율

- 금리차보장율 =

┌ 일반보험 : (정기예금 금리 - 0.5%) - 예정이율
└ 연금보험(보험기간 종신) : (정기예금 금리 + 0.5%) - 예정이율

② 利差配當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投資機能을 수행한다. 이차배당은 實勢金利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금리(=예정이율+금리차보장율) 이상의 투자수익율을 거두었을 때 그 超過收益을 계약자에게 환원한다. 이차배당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고 있다.

- 이차배당액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단, 종퇴보험은 전보험년도말 보험료 적립금에 당해연도 수입순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의 경과일수에 따른 적수를 가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곱한 금액

- 이차배당율 = 이차배당기준율 - (예정이율+금리차보장율)

利差配當基準率は 1996년 현재 10.5% 이하(단, 예정잔존탈퇴율을 사용한 저축성보험의 이차배당기준율은 9.5%이하, 종퇴보험의 이차배당기준율은 9%이하)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²⁸⁾.

28) 96년도 이차배당기준율 : 9%(기존사 등 30개사), 10%(영풍, 프랑스), 9.5%(네덜란드)

③ 長期維持特別配當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계약의 장려와 장기유지로 인한 투자효율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기간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特別配當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6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종퇴보험과 투자수익보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기유지특별배당액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장기유지특별배당율
- 장기유지특별배당율 = 0.25% + (경과년수 - 6) × 0.05%

④ 死差配當

보험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계산에 사용하는 사망율을 실제 經驗死亡率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안전율이 감안되어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사차배당을 통하여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를 환원한다. 사차배당 대상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이다.

- 사차배당액 = 연간 위험보험료 × 사차배당율
- 사차배당율 = 100% - $\frac{\text{현행 경험생명표상 사망율(성별, 연령별)} \times \text{회사율}}{\text{보험료산출시 사용한 예정사망율}}$

⑤ 再評價特別配當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지된 계약이다. 배당금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급금 지급시에 지급된다.

배당종류별 支給規模를 보면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死差配當이 약 30%, 利差配當 25%, 長期維持特別配當 12%, 金利差保障 33%로 구성되어 있다.

費差配當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업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실시가 유보된 상태이다.

<표Ⅲ-6> 配當種類別 規模 및 構成比(1995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사차	구성비	이차	구성비	장기 유지	구성비	금리차 보장	구성비	배당 합계	구성비
준비금	3,705	31.6	1,901	16.2	1,470	12.5	4,667	39.7	11,743	100.0
지급금	1,495	30.1	1,227	24.7	610	12.3	1,635	32.9	4,967	10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통계연보, 1996

현행 배당체계에서 금리차보장, 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은 그 성격상 넓은 의미의 利差配當으로 볼 수 있다. 금리차보장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와의 차이, 이차배당은 정기예금과 투자수익율과의 차이,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투자의 효율성 증대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배당대상이 금리차보장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 이차배당은 2년 이상 유지된 계약,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되어 있어 적용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금리차보장은 그 기초가 前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인데 비해, 이차배당의 산출기초는 前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이라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간의 차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_tW = {}_tV^{(N)} - \alpha \cdot \frac{m - t}{m}$$

여기서, ${}_tW$: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 ${}_tV^{(N)}$: 순보험료식 준비금

α : 예정 신계약비, m : 보험료 납입기간, t : 납입 경과 년수

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간에는 新契約費의 상각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험계약 경과기간이 3년 초과일 경우에는 동일하다. 예 정신계약비 상각방법에서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은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는 m대신에 7을 적용하고, 7년미만일때는 납입기간(m)을 그대로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t)이 3년이하로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m)을 10으로 하고, 경과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입기간이 7년이상일 때에는 납입기간을 7로 적용한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생명보험자산의 장기투자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계약의 長期維持 獎勵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차배당의 일종으로 보기에는 異論이 있겠으나,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은 명백히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금리차보장은 1978년 高金利時代(예정이율 12%, 정기예금이율 18.6%)에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약에 의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생명보험산업이 慢性的 赤字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제도 도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臨時方便的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金利自由化에 따라 金利水準이 下向하고 있고 이차배당제도도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리연동형 상품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금리차보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금리형 상품은 모두 금리차보장율을 초과하는 이차배당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차보장을 이차배당으로 부터 분리하여 二元化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定期預金金利가 자유화되어 變動性이 增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가격정책에 의해 보험권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보험권이 금리차보장의 기초로서 사용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수신고 기준 상위 5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단순평균 금리로서, 은행간 금리 차이를 평준화하여

변동성을 다소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의 금리결정에 보험권이 종속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최근 금리자유화와 함께 CD, RP 등 단기시장성 상품들의 만기가 단축되고 최저가입금액도 하향조정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1년만기 정기에금이율이 市場金利와는 크게 乖離된다는 면에서 정기에금이율을 금리차보장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妥當性이 缺如된다.

2) 内部留保 剩餘金の 處分

우리나라 配當分配 方式上的 문제점으로서 또 하나 지적하여야 할 점은 資本利益(capital gain)을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만기 또는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할 때 消滅時配當을 통하여 자본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고 있다. 英國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멸시배당을 1950년대에 도입하였고, 日本은 책임준비금 적립이 충실화됨에 따라 1971년부터 소멸시배당을 실시하였다. 美國의 소멸시배당은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영국과 일본의 자본이익 분배라는 사고방식과는 달리 책임준비금 등의 금리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했던 内部留保를 還元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당중 자본이익의 환원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再評價特別配當과 長期維持特別配當이다. 그러나 자산의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의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대상도 2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소멸한 계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평가특별배당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보유자는 보험자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자산재평가 이전에 소멸한 계약의 보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新舊契約者間の 公平性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0.25%를 기초로 하여 6년이상 초과년도 마다 0.0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장기계약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할 뿐, 매 보험계약이 보험자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이 같아도 보험종목에 따라 資産形成에 寄與한 貢獻度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금리가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貸出收益率과 債券收益率을 비롯한 固定收益投資收益率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침체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보험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기유지특별배당을 고정된 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豫定利率制度

가. 豫定利率 運用 現況

生命保險 契約은 收支相等의 原則에 따라, 수입될 保險料의 現在價値와 지급될 保險金의 現在價値를 同一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현재가치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豫定利率이라 한다. 즉 예정이율은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율중의 하나로서, 보험회사는 예정이율 이상의 資産運用收益率을 올려야만 계약자에게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은 실제 예상수익율 보다 낮게 책정하여 安全性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정이율을 초과한 실제 수익율은 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환원한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保證하는 利率로서 향후 실질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변동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일본의 超低金利現狀과 유가증권 수익률 악화로 일본 생명보험회사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은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인 長期性を 감안하여 장기적인 經濟與件, 金利變動 推移, 配當率과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예정이율에 대한 規制는 1958년 11월 財務部 指示에 의해 예정이율의 최고한도 설정, 부가보험료(사업비)의 범위요율화가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그 以前에는 보험요율에 대한 규제 없이 회사가 自律決定하고 있었으며 예정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준하는 수준이 사용되었다. 요율산출기초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既存契約을 비롯한 전보험계약에 遡及適用하였다. 그 이후 예정이율 변경을 통해 시중금리 변화에 대응하였으나, 예정금리의 변경으로 인한 판매중지 상품이 전체 판매중지 상품의 25%에 달하고 판매수명이 2년이 채 안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배당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예정이율을 빈번히 변경하는 일은 없어졌다.

配當保險의 예정이율 체계는 1958년부터는 12%이하로 정하여 上限을 規程하고 있을 뿐 보험기간에 따른 구분은 없었다. 그후 1965 1982년 까지 보험기간별로 구분사용하였으며 1982년 이후는 다시 단일화 되어 현재 원칙적으로 7.5%를 예정이율로 사용하고 있다. 금리연동형보험²⁹⁾은 정기예금이율이나 약관

29) 정기예금 금리연동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이며, 이들 상품은 (정기예금 금리 + 2%)로 운용되고, 노후적립연금보험은 (정기예금 금리 × 125%)로 운용된다. 약관대출 금리 연동상품에는 새가정복지보험이 있으며, (약관대출금리 - 1%)로 운용된다.

대출금리에 연동되어 있고, 1994년 6월 도입된 個人年金保險의 예정이율은 5.0% 7.5% 사이에서 회사가 자율결정토록 함으로써 範圍豫定利率 體系³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연동형 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위험 보험료에 대해서는 7.5%를 예정이율로 사용한다. 1992년에 도입된 無配當保險은 그 계약기간에 따라 10년 이하는 9.5%, 10년 초과는 8.5%를 사용한다.

<표III-7> 우리나라 豫定利率의 變遷過程

구 분	예정이율		정기예금 금리 (해당 연월)	자산운용 수익률 (해당년도)
	단기(5년이하)	중장기		
1958.11	12% 이하(산출기초 최초규제)		10.0%	N.A
1958.12	15% 이하(생존 15이하, 기타 12이하)		10.0%	N.A
1959. 7	12% 이하(이율통합)		8.0%	N.A
1965.10	20% 이하	12% 이하	30.0%	20.0%
1967. 2	25% 이하	12% 이하	30.0%	27.8%
1968.11	20% 이하	12% 이하	25.2%	38.5%
1972. 8	15%	10%	12.0%	10.2%
1973. 5	12 15%	10 11%	12.0%	11.1%
1976. 3	19%	15%	15.0%	13.6%
1978. 9	정기예금금리 이내	12%	18.6%	16.2%
1982. 7	8%		8.0%	11.6%
1987. 6	7.5%		10.0%	15.4%
1992. 7	배 당 부 : 7.5% 무 배 당 : 10년이하 9.5% 10년 초과 8.5%		9.5%(92년) 8.5%(93년)	11.9%
1994. 6	개인연금 : 5.0 7.5%		9.0%(94 95년)	10.9%

자료 : 생명보험상품사(1985, 한국보험공사) 및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를 참고하여 작성

30)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인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을 7.5%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사 및 합작사들은 6%(프랑스, 네덜란드) 또는 5%(영풍메뉴라이프)를 사용하는 등 최고한도 보다 낮은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예정이율과 동일하다. 즉 금리연동상품과 개인 연금을 제외한 배당보험은 7.5%, 무배당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9.5% 또는 8.5%를 사용한다. 金利連動商品은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7.5%,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는 定期預金 또는 約款貸出金利에 연동된 부리이율이 책임준비금 산출이율로 사용된다.

나. 獨自的 豫定利率體系 未備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는 은행의 1년만기 定期預金 金利와 密接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배당보험 예정이율이 7.5%로 결정된 것은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며, 1987년 6월 예정이율 개정시에 금리차보장을 2%를 포함하여 實質的인 保障利率이 정기예금 금리인 10%에 근접하도록 책정한 것이다.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은 1991년도 생명보험회사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배당보험의 예정이율과 利差配當基準率(1992년 현재 12%)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서,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의 경우 배당보험 예정이율 7.5%에 금리차보장을 2%와 이차배당을 2.5%를 합산한 4.5%를 예정이율에 반영하기 위하여 純保險料로 換算하면 약 3% 정도이나, 이중 1%는 무배당보험의 자체안전율로 인정하여 2%만 가산하여 9.5%로 결정된 것이다.³¹⁾ 또한 판매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노후 복지(설계, 적립)연금보험의 부리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은행금리와의 연관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은행금리에 연동되는 보험회사의 이율체계가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이는 은행금리가 일단 公信力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

31) 이명주, “무배당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소고”, 「생협」, 1992.9, P11

금리는 은행금리에 2%를 더하거나 125% 할증하여 적용하므로 은행금리에 비해 플러스 요인이 있음을 강조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홍보함으로써 生命保險產業 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권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권의 基本金利³²⁾로서,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公示制度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에는 오히려 기본금리와 실제금리의 차로 인한 民願所持만 內包하게 되어 보험권의 이율체계를 채권수익율 등 시장금리에 연동하거나 보험권 자체적 금리를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過度한 豫定利率 水準

예정이율을 7.5%로 결정한 1987년도는 정기예금이율이 10%, 자산운용수익율은 15.4%, 債券收益率은 12.8%로서 당시에는 7.5%의 예정이율 수준이 이러한 이자율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값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金利自由化의 進展 등으로 金利의 下向趨勢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예정이율 수준이 결코 안정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자산운용수익율의 계속적인 하락은 보험자산의 利差逆마진(margin)마저 招來할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무배당보험은 최고 9.5%의 예정이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最近 株價暴落과 景氣不進 등에 따라 많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율이 10%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보험회사의 利差益 達成을 威脅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인 노후 복지연금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은 적립이율이 총자산운용수익율을 상회하여 利差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정이율을 7.5%로 적용하는 배당상품은 현재까지

32) 실제로는 기본금리에 2~3%의 특별금리를 더하여 수신하고 있다.

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장기간 유지될때 금리의 하향추세를 반영한다면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예정이율의 문제는 傳統的商品 보다는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의 부리이율은 정기에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게 되므로 總資産運用收益率이 낮아 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그 이상의 수익율을 보장하게 되어 會社の 不實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부리이율 조정 및 개선을 통하여 財務健全性을 確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자산수익률이 예정이율을 하회하거나 비슷한 경우, 貯蓄性 比重이 높은 年金保險이나 教育保險 등은 준비금 적립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保障性保險은 준비금이 이자율 변동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편이므로 저축성보험에 비해 준비금 적립의 부실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는다.

또한, 現實的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서 국내에는 長期・安定的인 投資對象이 貧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長期債券 市場의 非活性化로 많은 자산이 주식, 단기채권, 단기대출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손이 발생하거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성에 맞도록 운용자산을 長期投資할 수 있다면, 설혹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존 자산은 장기적으로 운용될 것이고, 新商品의 경우는 豫定利率의 調整으로 이차역마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높은 예정이율의 사용이 가능한 이유로서는 높은 失効・解約率과 營業競爭力의 提高를 勘案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상품개발 과정에서 價格決定前 損益分析을 실시하여 장래 이차역마진의 발

생가능성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높은 실효·해약율로 인하여 실제로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보험회사의 保險計理 및 보험상품개발 부문에서는 安定的인 예정이율을 원하고 있으나, 營業部門에서는 販賣力の 劣勢때문에 높은 예정이율을 원하게 된다.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을 5 7.5%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정이율로 하였지만, 大部分의 會社가 最高利率 7.5%를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영업부문에서 연금상품 판매시 “생명보험상품은 7.5%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므로 향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동이율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연동상품에 비해 강점이 있다.” 는 등의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는데는 이제까지의 고금리상태의 유지와 이차역마진에 대한 不感症 및 금리가 하락하기전 대부분의 계약이 解約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非合理的인 損益管理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V. 契約者配當自由化의 推進方案

1. 概觀 및 基本方向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配當額의 分配方式, 配當金 積立方式, 消滅時 特別配當, 配當例示 등 계약자배당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外國制度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나, 각 나라마다 생명보험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이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외국제도를 수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외국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국내 보험계약자 배당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保險株式會社の 契約者配當制度는 그 설정방식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利害相沖의 調整이 불가피하며, 이에는 일련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회사의 財務健全性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모든 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契約者配當의 衡平性이다. 여기서 형평성이란 모든 개별 계약간의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계약자집단 내에서의 형평성이라 보아야 한다. 同質的 危險體를 보험단체로 하여 收支相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는 保險原理面에서 볼때, 동일 계약자집단 내에서의 형평성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배당제도는 이와 같이 재무건전성과 계약자집단간 형평성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하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剩餘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一般的 原則이다.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잉여금을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계약자몫과 주주몫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험선진국에서는 利益共有說³³⁾과 株主歸屬說³⁴⁾의 중간적 입장에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⁵⁾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아직 上場會社가 없어 시가배당을 할 수는 없지만 주주지분을 자율결정할 경우 계약자의 이익이 손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지분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자배당이 가능한 잉여금중 어느 정도를 실제 배당으로 지급하고 어느 정도를 社內留保할 것인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과도한 사내유보는 契約者 世代間 衡平性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내유보분 중 契約者 寄與分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一部 利源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利源에서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면 결국 계약자배당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보험료의 산출기초인 豫定利率, 豫定死亡率, 豫定事業費率이 각각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산출예정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는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利源別 配當原則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손실을 기록하였다 할 지라도 일부 이원에서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超過保險料의 返還側面에서 해당 이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청산급 행위가

33) 주주는 배당상품 부문의 이익중 일정부분을 계약자와 공유할 권리가 있음.

34) 주주는 각종 보험금, 배당금 지급후 이익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음.

35) 박영준외 3인, “향후 계약자배당의 바람직한 방향”, P115, 보험계리인회지 제3호, 보험계리인회

다.³⁶⁾ 그러나 이익시현 이원의 잉여금을 모두 配當財源化 하는 것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익시현 이원의 잉여금중 일부만을 배당재원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契約者配當을 실시하기에 앞서 配當財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보한 배당재원을 초과하여 과도한 配當率을 결정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가격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配當例示制度의 導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원칙적인 배당예시는 도리어 계약자를 혼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合理的인 指標의 開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配當可能 剩餘金の 決定

가. 責任準備金の 評價

配當可能 剩餘金은 保險計理人을 포함한 회사 경영자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회사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副次的으로는 회사의 경쟁상황, 계약자의 기대감 충족 등이 반영된다.³⁷⁾ 그리고 實務的으로는 배당가능 잉여금 규모를 결정짓는다는 책임준비금 적립방식과 자산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먼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관해서 보면, 배당규모가 변동하는 것은 배당시기의 차이를 초래할 뿐 회사의 利益規模와는 관련이 없다. 즉 純保險料式의 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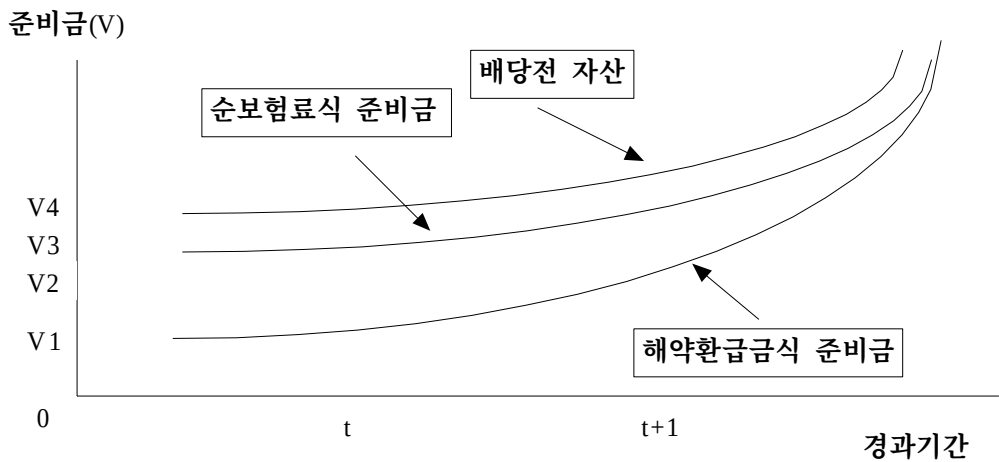
36) 김종국, 생명보험총론, 보험연수원, 1995, P336

37) R. Arthur Saunders, FSA, Individual Life Insurance Dividends, Educ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of the S.O.A, 1989

任準備金を 적립하는 회사는 배당가능 잉여금이 K率方式 責任準備金を 적립하는 회사에 비해 적게 계상되지만 그만큼 내부유보가 크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 K率方式 적용 회사는 배당가능 잉여금은 크지만 내부유보는 적게 된다. 결국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배가능잉여금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會社の 利益自體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契約者配當과 内部留保의 相互交換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配當時期만이 차이가 나게 될 뿐이다.

한편, K율 적용회사가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회사에 비해 더 많은 계약자 배당을 할 수 없는 이유로서 責任準備金 増加速度의 差異를 지적할 수 있다. 임의의 t시점에서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적립회사의 배당가능 잉여금($V_4 - V_1$)이 순보험료식준비금적립회사의 잉여금($V_4 - V_3$)보다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를 전부 잉여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림IV-1> 責任準備金 積立方式別 責任準備金額의 變化



<그림 IV-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解約還給金式準備金の 증가속도가 純保險料式準備金の 증가속도보다 빨라 次期(t+1期) 준비금적립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留保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된다. 즉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회사는 次期를 위한 준비금 증가액이 $\Delta V(V_4-V_3)$ 에 해당되지만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는 $\Delta V_w(V_2-V_1)$ 으로 後者が 前者보다 커 동일한 보험료 수입 및 금융환경에서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의 준비금적립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途解約者 保護를 위하여 内部留保金の 분배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계약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회사와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 계약자 모두 동일한 解約還給金이다. 이때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회사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에 비해 배당금을 적게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회사는 순보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과의 차액에 대한 内部留保를 얻게 된다. 이러한 내부유보금액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배당이 자유화 되면 會社別 配當原則이 결정되겠지만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계약에 대해서 해당계약의 내부유보분을 消滅時配當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資産의 評價

자산을 현행과 같이 非定期的으로 평가하는 것은 契約者 世代間 衡平性を 해치게 되기 때문에 定期評價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不動産 등 長期投資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만일 有價證券 評價損이 크게 발생하였을 때 배당지급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의 위험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자산가치의 변동에 대한 이익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을 추구

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資産再評價에 대한 이익을 계약자배당화 함으로써 資産價值 増加에 대한 寄與度에 따른 분배가 반영되지 못해 계약자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資産評價益을 모두 配當財源化하는 것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一定部分은 内部留保토록 하면서 내부유보 동안 評價損 등 자산관계손을 優先的으로 보전하여 지급능력 확보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一定部分은 장기계약자 등 資産評價益의 寄與度에 따라 消滅時特別配當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株主持分の 決定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계약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중 株主持分の 上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대 주주지분은 잉여금의 30%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配當前 剩餘金の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주주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주주지분을 적정수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주배당은 현재 行政措置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株主總會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주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K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보다 잉여금이 크게 계상되나, 그 잉여금이 모두 배분가능 잉여금으로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K율 적용회사가 분배가능잉여금을 과도하게 주주지분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契約者利益을 株主利益化하는 셈이 된다. 주주지분은 법인세 납부, 결손보전, 주주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세 납부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손보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資金의 社外流出인 주주배당을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에 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배당재원이 충분치 못한 회사에 대하여 契約者配當의 最高限度를 정하여 制限하고 있는 조치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배당을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회사에 한하여 계약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契約者配當의 分配方法

배당금을 계약자간에 분배하는 방식은 먼저 공평성(equity)이 최우선시 되지만 이와 더불어 경쟁성(competition), 신축성(flexibility), 단순성(simplic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것은 利源別配當方法과 資産割當方法이 있다.

이원별배당방법(Contribution Plan)은 보험료산출기초가 안전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임을 인정하고, 각 예정율과 실제율과의 차이를 배당으로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익의 원천이 되는 이원은 보험의 종류, 유지기간, 보험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단순화하면 利差(excess interest), 死差(mortality savings), 費差(loading savings)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질병이나 재해 사망 등 附加給付 要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美國, 日本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배분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할당방법(Asset Share Method)은 해당 보험계약자 집단이 계약유지기간 중에 회사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배당가능 잉여금을 해당 계약집단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英國에서 배당지급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이 방식에 기초하여 消滅時配當을 계산하고 있다. 이 방법은 대표적인 保險種類, 年齡을 모델로 하여 각 保險年度別로 실제의 利率, 死亡率, 事業費率에 의해 계산된 자산(asset share)으로부터 年度末 責任準備金を 차감하여 純資産割當額(net asset share)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약집단별 계약자배당율을 결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산할당방법은 利源別 配當方法과는 달리 이익의 원천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원에서 이익을 거두고 타 이원에서 손실을 입어 총체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하였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赤字를 기록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할당방식으로 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적자의 주요인은 과다한 초과사업비,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금융형상품의 과다 판매 등 주로 保險會社の 經營效率性과 營業政策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산할당방법의 채택은 보험회사의 政策意思決定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는 보험계약자에게 會社經營의 責任만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발생한 利源의 最小配當의 근거마저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원별 배당방법을 수정하여 당기이익을 실현한 회사에 대하여 배당이 자유화된 利源에 限하여 利源別 配當率을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자유화될 예정인 이차배당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차배당 성격을 갖는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이 분리되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리차보장은 1982년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豫定利率 引下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금리와 예정이율간의 금리차를 보전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자배당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利差配當基準率이 항상 金利差保障基準率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받는 배당금은 이차배당기준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타금융권의 금리에 의존하는 金利差保障을 廢止하고 이를 利差配當으로 흡수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금리차보장과 이차배당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자산운용 수익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손실을 이유로 利差配當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비 손실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차손은 特定金融型商品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契約者配當計算時 商品別 區分을 하도록 한다면, 상품에 따라 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금융형상품의 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계약자 측면에서는 정기에금이율의 下方硬直性으로 당분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리차보장금과 이차배당과의 통합으로 전체적으로는 배당금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측면에서는 利差逆마진(금리차보장금 고려)³⁸⁾이 발생함에도 계속적으로 금리차보장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의 부실을 가속화 시키는 한편 나아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등 각종

38) 1996년 10월 현재 생명보험 전회사 자산운용수익율이 10.1% 이고, 회사그룹별로는 기존사 10.3%, 내국사 9.3%, 지방사 8.4%, 합작사 9.5%, 외국사 8.9% 임.

금리차보장 기준율이 연금보험 등 종신보험은 9.5%, 일반보험 8.5%임을 감안하면, 지방사의 자산운용수익율은 금리차보장기준에 미달하며, 1994년 이후 개인연금보험의 판매확대에 따라 많은 회사가 금리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

지급의무와 지급능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계약자에게도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권에서 적용하는 이율체계는 타금융권 이율 연동에서 탈피하여 보험권 고유의 이율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금리차보장금과 이차배당제도의 통합운영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의 변경으로 배당금이 줄어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산운용 전략으로 종래의 배당금 수준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영업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차배당과 금리차보장을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初年度에는 超過事業費의 執行으로 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配當對象 契約을 현행 이차배당제도와 같이 2년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하며, 配當基準率은 前年度末 解約還給金式準備金에 利差配當率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遡及適用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금리차보장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업무편의상 既存契約과 新契約을 통합관리할 경우는 이차배당율이 금리차배당을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기존계약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의 모색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先積立後配當制度의 擴大

先配當後積立制度는 적자배당의 가능성, 주주지분의 사전결정, 적립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당의 지급시점 이전에 配當率을 결정하고 이에 합당한 契約者配當準備金을 실제로 적립한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先積立後配當

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다. 이미 배당율이 자유화되어 있는 死差配當의 경우 既積立된 準備金에 사차배당 소요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最高配當率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사차배당재원의 先積立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적립방법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향후 사차배당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적립후배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적립제도가 시행되는 첫회계년도에서는 前期 配當金の 精算과 次期 配當金の 積立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制度導入의 관건이 된다.

재원확보 방법으로는 첫째, 현행 선배당후적립체계에서 도래하는 今期の 配當額을 今期和 次期の 配當額으로 分割하여 배당하는 방안을 들수 있는데 이는 배당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제도도입후 2년만에 선적립후배당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어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방안은 선적립후배당제도로의 移行期間을 5년으로 연기하여 매년 배당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적립토록 하여 5년후에는 완전히 선적립후배당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支給餘力을 충족하지 못한 新設社 등의 경우도 추가배당소요액이 미미하여 제도 전환시 재무구조를 심각히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도를 전환하더라도 지급여력 부족으로 인한 배당제한때문에 배당액이 절대액 기준으로 보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의 시행에 있어 현재의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변경시 일시에 先積立이 가능한 회사도 있을 것이나, 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보험회사가 동시에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안은 資産再評價 財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각사마다 자산재평가 시점과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동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配

當의 連續性 側面에 意義를 둘 수 있다. 신설사와 같이 재평가 대상자산이 없어 곤란한 경우는 자산이 형성될때까지 선적립을 유보해야 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곤란이 따를 것이나, 배당의 궁극적 의미는 잉여의 발생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선적립이 가능한 회사부터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消滅時特別配當

잉여금의 내부유보 및 재평가익 적립금에 대한 배당은 利源別 配當이 아닌 特別配當의 성격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과거 특별배당 형태로 지급된 배당은 배당제도가 정착되기전의 사차배당, 이차배당 등의 정산배당이다. 현행 장기유지특별배당은 특별배당으로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 배당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기간이 경과할 수록 배당율이 높아진다. 이외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한 바도 있다.

재평가적립금 등 資本利益 性格의 財源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발생하므로, 이를 定期的으로 평가하여 實效·解約, 滿期時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의 資産形成에 기여하게 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자산할당(Asset Share)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에 유보된 積立金의 貢獻度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 特別配當의 趣旨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산평가기준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公示地價를 사용하는 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消滅時特別配當은 그 성격상 純粹保障性保險을 제외한 준비금이 적립되는 보험의 長期契約者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금리연동상품 등 이차역마진의 가능성이 큰 상품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는 계약소멸 당시의 준비금에 經過期間別 加重値가 감안된 배당율을 곱하므로써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유지되는 계약에 대해 株式, 不動産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한 내부유보 및 지급여력으로서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정산해 주는 배당으로 소멸시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멸시 준비금이 없는 정기보험 등은 保險料 基準으로, 기타 준비금이 적립되는 보험은 消滅時 準備金에 배당율을 곱하여 지급하나, 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배당율은 상이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소멸시배당 운용을 참고하여 가격관련 정보가 투명한 조건에서 합리적인 계약자라면 상품유형에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별배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순보험료식 준비금 적립회사와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와의 배당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회사의 경우 특별배당 재원을 K率을 상향조정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解約還給金式 準備金 積立會社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純保險料式 準備金 積立會社도 배당차등화에 대한 영업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衡平의 原則에 부합되는 자율화시대의 최소한의 규제라 생각된다.

6. 契約者配當 例示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配當商品과 無配當商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무배당상품의 경우 안내장이나 약관 등의 상품명 앞에 “無配當” 임을 표시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배당상품은 단순히 商品名만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차별화 시키고 있다. 무배당상품의 경우 1992년 무배당보험제도 도입시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豫定基礎率을 안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保險料 引下나 保險金 増額 등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사업방법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계약자 이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의 전문적인 특성으로 一般消費者들이 보장급부의 내용 및 가격 결정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상품구입 과정에 있어서도 價格公示制度가 활성화 되지 않아 타상품 또는 타금융권 상품과의 比較購買를 할 수 없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 즉, 실제 보험가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구입한 격이 된다.

그럼에도 현행 보험업법 제155조(保險案内資料) 제3항³⁹⁾에서 장래의 豫想配當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豫想配當이 보험회사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고 이러한 이익 또는 잉여금은 당해년도 사업성적이나 경제계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장래 일정한 배당을 한다는 것을 確定的으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⁰⁾ 결국 이 조항은 豫想配當

39) 제155조(보험안내자료)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 금지하고 있을 뿐 配當例示를 금지할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公正去來委員會의 不公正去來行爲基準에서도 소비자를 현혹 또는 기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適正基準을 정하여 배당예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향후 보험가격이 자유화 되면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配當例示는 보험상품의 판매 또는 구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상품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事前的價格인 보험료와 장래의 배당예시를 통한 事後的價格이 제시되어야 한다. 배당계획이 투명화되지 않는 것은 예정된 가격 이상의 보험료 징수에 대한 결산이 명확화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생명보험 계약자들은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여타의 投資收益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수익을 바라고 있으므로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예시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消費者 立場에서는 配當例示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어느정도 비교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영자 또한 예시배당에 대한 약속을 이행키 위해 최선의 경영을 수행할 것이다.

계약자배당예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現行의 配當率을 토대로 未來의 豫想 配當額을 例示토록 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不公正去來 行爲의 禁止)⁴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保守的으로 例示할 필요가

40) 노상봉·홍범식, “보험업법 축조해설”, 매일경제신문사, 1995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1. 5. (생략)

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있으며, 이러한 예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회사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配當率의 變動에 의해 배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향후 계약자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계약자배당 예시제도가 계약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우선 直前年度 配當率을 기준으로하여 년차별로 이차, 사차 등 利源別 配當額을 例示하고, 만기 또는 계약소멸시에 대해서는 利子率을 감안한 배당합계액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現在基準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여 배당을 또는 이자율이 변동되더라도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事前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配當例示處로서 보험약관과 안내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일괄 제작되었기 때문에 個別的 配當例示를 하기는 곤란하나, 안내장의 경우는 特定年齡에 대해 하나의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가입설계서와 보험증권은 人的特性이 반영되기 때문에 계약자별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나, 保險證券에 기재될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시 제공하는 加入設計書⁴²⁾에 배당액을 예시하고, 매년 제공하는 契約公示資料에 현재까지 발생된 배당의 원리합계액과 현재기준으로 장래의 배당예시를 기재함으로서 회사는 계약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적 수행, 계약자에게는 회사와 계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維持率 提高 및 配當에 대한 信賴性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42) 가입설계서는 회사가 계약체결전에 특정상품에 대한 해당피보험자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예시하는 보험안내자료임.

배당예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첫째, 商品別 價格比較가 가능하게 되어 보험소비자들이 상품 구입시 最適의 保險料支出로 最大의 保障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은 장기상품으로 배당예시를 하지 않고서는 판매에 어려움이 따른다. 먼 장래에 지급이 약속되는 금액은 인플레이등 物價上昇을 보상하지 못하나 배당예시를 통한 인플레 헷지효과를 추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안심하는 기능을 주게 된다.

둘째, 보험가격의 차별화에 따라, 他社와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실제 배당액을 예시수준보다 높게 지급함으로써 顧客의 評價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無限競爭에 진입하게 되면 각사는 언더라이팅 기법 향상, 자산운용의 효율화, 사업비 절감 등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최대의 잉여를 추구할 것이며, 이의 배분을 통하여 契約者 權益의 最大化에 주력할 것이다.

세째, 배당금의 합리적인 지급방법의 마련 등으로 보험업무의 수준을 향상시켜 업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保險種類別, 男女別, 年齡別, 經過期間別 등 잉여의 원천에 따른 배당방법의 지속적인 연구로 계약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당방법의 연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 배당예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로서 부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영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된다.

7. 契約者配當 自由化의 副作用 및 對應方案

가격자유화의 일환인 계약자배당의 자유화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계약자에게 최대한의 잉여금을 지급하게 하는 肯定的 效果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나, 그 이면에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경영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배당자유화 및 배당예시에 따른 副作用과 그에 대한 對應方案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다.

첫째, 사전적 가격 책정시 배당액을 감안하여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價格情報에 둔감한 계약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 만일 상품간에 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대부분의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市場原理가 작용하겠지만 보험의 복잡·전문성으로 인하여 배당의 자유화가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保險情報公示制度를 활성화 시켜 보험료 산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의 공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配當例示의 不履行時 民願이 제기될 수 있다. 무리한 배당예시를 하거나,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또는 방만한 경영 등으로 예시한 배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민원 발생요인이 되거나 계약자에게 생명보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물론 예시된 배당액이 確定된 配當金額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배당예시를 감안하여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회사는 가급적 예시된 이상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安定的으로 例示할 필요가 있다.

셋째, 富益富 貧益貧 現象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신설사 등 배당능력이 부족한 회사의 도태가 우려된다. 현재 배당자유화가 도입되면 준비금 적립 등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회사는 規模의 經濟 進入으로 잉여금이 상대적으로 커 높은 배당이 가능한데 비해, 그렇지 않은 회사는 만성적인 費差損과 準備金積立의

隘路 등으로 잉여가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自由化 日程을 늦추어야 할 것이나 이는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진행 및 대내외개방에 逆行하는 것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無配當商品의 販賣 또는 고유의 特化商品 販賣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네째, 保險契約의 不實化 可能性이 높다.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에 의해 판매되고, 우리나라 보험상품을 유형별로 주요 급부가 획일화 되어 있어 많은 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既契約者라 하더라도 모집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의 배당예시와 보험가격을 설명하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乘還契約이 발생함으로써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상품판매시 保障內容 및 價格產出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통하여 完全販賣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섯째, 無配當保險의 販賣萎縮이 우려된다.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의 配當擴大政策으로 판매우위가 예상되어 무배당보험의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현행 무배당보험의 계산기초율은 배당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配當保險을 선호⁴³⁾하게 될 것이고 더구나 配當競爭이 치열해지면 무배당보험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다.

배당자유화는 後述하는 준비금 적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純保險料式準備金 積立契約의 配當에 대해서는 剩餘의 期間對應이 되어 있지 않은 過剩積立은 아닌지, 적립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利益還元에 소홀하게 되어 있

43) 보험개발원, 무배당보험 판매에 따른 회사의 손익구조 변화, 생명보험상품, 1993. 7, PP3 26 참조

지 않은지 등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支給能力確保가 계약자 이익환원을 소홀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당환원을 滿期까지 일부 유보하는 것으로 본다면 잉여는 최종적으로 그 契約者群에 돌아갈 것이다. 다만 早期解約 등의 경우에 환원분이 잉여의 몫보다 적을 수 있지만 消滅時配當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配當自由化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공고히 하면서 분배방식, 할당방식, 특별배당, 배당개시기 등 계약자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자배당은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배당율이 오르는 것일 망정 내려가는 것은 좀처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配當率의 引下는 보험회사 실적의 악화와 결부시켜 생각⁴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内部剩餘를 적절히 활용하여 長期的 安定性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配當計劃을 마련해야 한다. 배당을 장기안정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배당가능 잉여금을 반드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배당패턴⁴⁵⁾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자유화든 施行初期에는 副作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배당자유화는 보험가격과 직결되기때문에 공공성을 참작하여 각사에서도 회사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따라 적정한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당예시제는 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4) 鎌野創一郎, 이차배당의 장기안정화에 관하여, 일본 계리인회보 제44호(1991), P 152

45) 영국 보험계리인회의 연구지 "Actuarial Investigation" 에는 배당의 패턴을 Forward Approach 와 Backward Approach 두가지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음.

Forward Approach : 분배가능 잉여액 결정 → 분배방법(배당율) 결정

Backward Approach : 분배방법(배당율) 결정 → 분배가능 잉여액 결정

V. 豫定利率 自由化 推進方案

1. 概觀 및 基本方向

生命保險 價格自由化는 1994년 4월 豫정유지비의 자유화에 이어 1995년 4월부터는 사차배당이 자유화됨으로서 第1段階 및 第2段階 價格自由化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第3段階로서 위험율의 자유화와 이차배당의 자유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1998년 이후로는 第4段階 自由化로서 費差配當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率의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예정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유화 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가격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價格競爭體制로의 轉換이 예상된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제4단계 가격자유화를 통해서는 規制를 最小化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급능력 부족과 재무구조의 취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도 적절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消費者保護 側面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예정이율의 책정에 있어서 장래의 금리변동을 적절히 예측하여 회사 체질에 맞는 料率政策 (高料率高配當 또는 低料率低配當政策)의 채택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장에서는 제4단계 가격자유화의 中心이 되는 豫定利率의 自由化에 대해서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상품은 그 구조상 순수보장성보험보다는 만기시 납입보험료 이상을 환급하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나 貯蓄性保險의 판매가 대부분이므로 예정이율의 결정은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소비자들의 金融商品에 대한 認識이 增大되면 高收益을 보장하는 節稅商品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측면에서도 예정이율은 장래의 부채(책임준비금)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사용할 경우는 상품판매력에서 타사 또는 타금융권에 비해 유리하지만 운용수익율이 그 이하로 나타나면 利差損이나 支給不能 事態에 도달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낮은 이자율을 책정한 경우는 회사는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측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따라서, 保險價格의 水準은 보험영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험가격의 기본 요소인 예정이율의 변동에 따라 販賣量이 變動되는데, 보험시장의 不完全市場⁴⁶⁾ 성격으로 인해 완전경쟁적 시장에 비해 변동폭은 적다. 즉, 예정이율이 자유화 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상위비판점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판매량이 급減하게 되고, 반대로 인하할 수 있는 하위비판점 이하가 되면 소비자들이 市場不完全要素를 克服하여 판매량이 急激하게 增加한다.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준비금적립의 충실화 등 간접적인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하위비판점 이하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그림 V-1>로 설명하면 판매선은 일직선이 아니고 二重的으로 屈曲되어 있다. 가격 P1 과 P2 사이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변동

46) 趙海均, 新保險經營論, PP161 169, 1994,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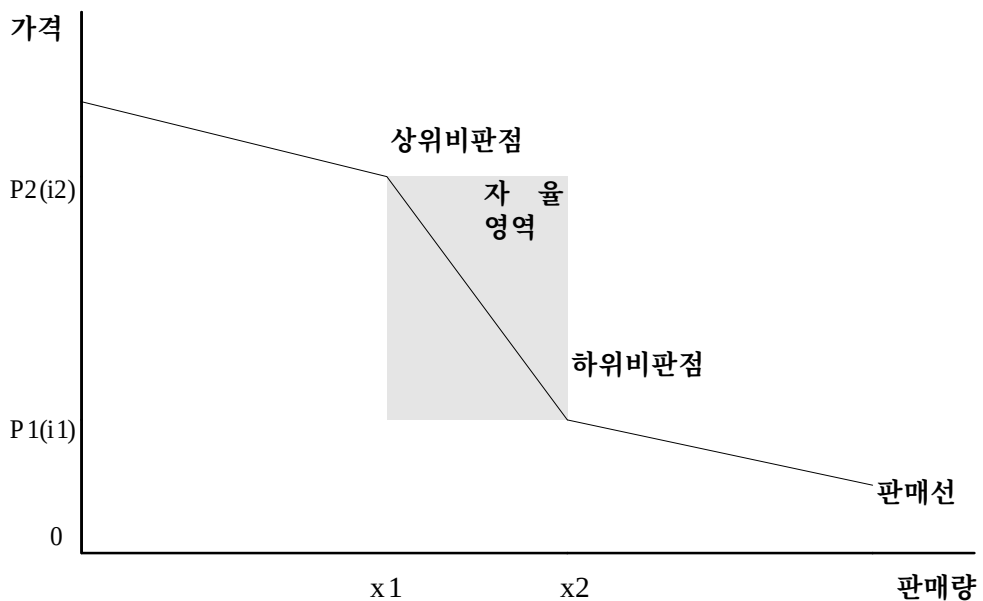
保險市場 不完全市場 原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① 優越性이 質的側面과 人的側面에서 강하게 존재하며,
- ② 市場洞察力이 크게 결여되어 있으며,
- ③ 利益極大化 및 效用極大化를 위한 合理的行動이 불가하고,
- ④ 市場條件 및 環境與件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이 不足하며,
- ⑤ 보험사업이 規制事業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國家의 干涉과 監督, 規制를 받기 때문이다.

시키더라도 보험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판매량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⁴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정이율이 자유화 되더라도 보험가격은 일정한 영역 이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영역을 보험회사의 自律領域이라 하는데,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정도에 의존한다. 이를 예정이율 측면에서 분석하면 이자율 변화에 민감한 貯蓄性保險은 i_1 과 i_2 차이가 적어 자율영역이 좁아 운용의 폭이 적은 반면, 保障性保險 특히, 순수보장성보험은 i_1 과 i_2 차이를 확대하더라도 보험료 차이가 적어 예정이율에 대한 자율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 保險市場에서의 價格形成



주 : $i_1 > i_2$, i_1, i_2 는 예정이율

47) 趙海均, 앞의 책, PP 182 183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정이율은 需要・供給의 原理에 입각하고,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科學的이고 合理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銀行 등 타 금융기관 상품의 경우 저축기간이 단기이고, 부리형태도 實積配當形態가 많아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가 적은 반면 生命保險商品은 보장기간이 장기이고, 준비금의 안정적 적립, 배당의 지속성 유지와 확정금리 보장형으로 安定的인 利率을 요구하게 된다.

보험권 固有의 독자적인 이율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금리에 의존하는 현재의 이율체계에서는 생명보험의 主力商品이 은행권 금리에 연동되어 운영됨으로써 업무처리의 複雜性和 보험이 銀行에 隸屬되는 감을 가져와 소비자의 생명보험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율은 保險料算出 豫定利率과 責任準備金 評價를 위한 評價利率體系로 二元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산출 예정이율은 가격자유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經營實積이 반영되어 회사별로 차별화된 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보험의 사회적 공공적 성격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채(준비금) 수준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998년 이후 검토될 第4段階 價格自由化는 보험요율에 관련된 제가격 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동안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保險料率의 自由化, 責任準備金 評價水準의 規制라는 두 軸을 중심으로 保險會社, 保險契約者, 保險募集人 3者共榮의 原則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豫定利率 自由化 方案

가. 二元化의 必要性

국내 생명보험의 가격체계는 현재까지 예정이율이 一律적으로 規制되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각사별 경영실적 및 장래를 추정한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效率的 經營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였다.

<표 V -1> 商品別 豫定利率

구 분	배당보험	무배당보험	개인연금	금리연동형 상품
예정이율	7.5%	10년이하 : 9.5% 10년초과 : 8.5%	5 7.5%	정기예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 연동

주 : 개인연금의 경우 범위이율로 되어 있지만 외국계 회사의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이 7.5%를 적용하고 있음.

자료 :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1996. 8

그러나, 自由化, 開放化의 進行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회사별 경영실적 또는 향후 금리추이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판매하는 한편 다만 준비금적립 등 대계약자 부채 확보측면에서는 정부가 정한 保守的 利率을 적용하여 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二元的 利率 運用方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자율의 이원화는 自律性和 強制性を 同伴하게 된다. 보험료는 회사의 언더라이팅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에 따른 豫定危險率과 자산운용수익

을 등 장래의 금리전망을 토대로 한 豫定利率, 보험계약의 가입부터 종료시까지 소요되는 경비 등을 분석한 豫定事業費率 등에 의해 회사의 規模에 맞게 自律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예정이율은 회사의 손익 및 타사와의 경쟁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會社政策에 附合하는 자율적인 이율을 적용한다. 획일적인 이율의 설정은 談合의 의혹을 안게 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마저 있다. 특히, 최근의 자산운용수익율은 무배당보험의 보장이율 9.5%에 근접해 있어 이자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상품은 금리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준비금적립이 안정적으로 적립되지 않을 경우는 會社の 不實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破産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준비금은 소비자보호 및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의 평가이자율 규제는 狹義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독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廣義적으로는 부실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계약자에 대한 부채, 준비금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자율 체계를 상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산출 이자율과 준비금적립 평가이자율 체계를 달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보험료산출을 통하여 營業活性化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消費者 權益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준비금적립을 통하여 회사의 健實한 資産構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豫定利率의 自由化

보험상품은 구매자들에게 條件附請求權을 부여하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보험

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現在價值化한 후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이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저축성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요소 중 가장 敏感한 부분이 되고 있다. 예정위험율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개선되어 안정적인데 반하여 예정이율은 장기적으로 하향화가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 산출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규제된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왔고 손실발생 시에도 政府의 配慮가 있었으나, 자율경영 시대에 진입한 현재는 회사의 責任經營體制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예정이율은 공금리(정기예금이율)에 안전할증을 가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권의 독자적인 이율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리의 자유화로 인하여 금융권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는 한편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추진되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競爭力強化 次元에서도 보험권의 자체적인 이율체계의 설정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固定利子率 체제에서 範圍利子率, 自由利子率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자유화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위이자율의 도입은 자유화의 진행과정상의 접근방법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자율은 보험료 산출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競爭이 深化된 영업환경에서는 범위이자율의 의미가 없어진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상품의 경우는 예정이율 1%의 변화만으로 보험료가 15% 정도까지 변화게 되며 이는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8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

로, 이처럼 타사보다 예정이율을 1%만 낮게 설정할 경우라도 競爭力을 喪失하게 된다. 그러나 純粹保障性保險의 경우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정이자율체제나, 범위이자율, 자유이자율 등에 상관 없이 보험료가 같은 수준이 된다.

범위이자율은 자유경쟁하에서 진행될 요율차등화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형사와 대형사가 혼합된 환경에서 소형사의 영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차배당이 자유화되고 이차배당의 자유화가 곧 시행될 예정인 상황하에서 범위이자율의 도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요율산출체계 및 배당의 획일화 등으로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료의 차별화가 輕微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연금 도입시 범위이자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여종의 상품 중 최고이자율인 7.5%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은 외국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3 4종에 불과하며, 판매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금보험이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동폭이 크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급부구조가 비슷하여 소비자의 價格比較가 容易할 뿐만 아니라 배당예시제가 허용되지 않아 영업측면에서 타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율 체계가 이원화되어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도입되면 보험료산출 예정이자율은 자동적으로 범위이자율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즉, 예정이자율이 완전자유화 되었다 하더라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료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는 支給能力 確保 때문에 보험료산출 예정이자율의 最高限度가 결정되고, 예정이자율의 하한은 동업타사와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이자율은 회사의 책임하에 운영되겠지만 설사 도입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많은 회사가 비슷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후술하는 準備金 積立水準 및 將來 金利推移, 投資收益率 등을 감안하여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자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업타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자율 수준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리스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범위의율을 도입한 후 조만간 자유이율제로 이행할 경우 범위의율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자유이율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정이율 체제하에서 損失이 발생했을시 이를 규제한 政府의 責任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범위의율제도하에서도 또한 일부의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자유이율제도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책임경영시대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다만, 예정이율이 자유화되면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회사의 경우는 價格競爭力에서 打擊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이러한 회사들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기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OECD 가입, 金融改革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때 그때까지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타금융기관의 금리(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되는 이자율을 보험권 또는 市場金利에 連動할 수 있는 이자율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점이다. 특히 1년만기 정기예금은 은행 負債計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또한 실제로 기준이율(현행 9%)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어 은행간 相異한 利率을

적용함에 따라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다. 즉, 競爭機關의 금리를 생명보험회사의 기준이율로 사용함으로써 은행의 수신 금리 전략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구조가 銀行機關에 隸屬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금리연동형상품의 예정이율(부리이율) 자유화 방안으로는 透明性 確保와 市場金利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매일 변동되는 체계가 아니라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금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解約發生 可能性이 높아지고,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장기예측을 통한 적절한 이자율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V -2> 預金銀行 負債現況

(단위 : 백억원, %)

구 분	정기예금			기타 예금	CD 및 차입금등	신탁 계정	해외 부채등	총 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					
금 액	431	1,178	1,085	11,063	10,538	10,176	8,016	43,027
구성비	1.0	2.7	2.5	25.7	24.5	24.9	18.6	10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 1995. 6

3. 標準責任準備金 評價利率 算出方案

標準責任準備金이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마련한 最低準備金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나 위험율보다 保守的으로 策定하여 評價한다.

보험에서 평가이율은 보험료 산출시의 예정이율 만큼 중요하다. 예정이율은 장래의 금융환경을 분석하여 상품별로 손익분석을 거친 후 타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安定的으로 산출하는 반면, 준비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이율은 신규계약 및 기관매계약의 계약자에 대한 負債移行을 充實히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이자율로서, 이에 따라 당년도의 손익이 결정되므로 계약자에 대한 配當, 經營效率 등의 評價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이율은 적용방법에 따라 이자율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산출과정에서는 동일한 결정인자를 적용한다.

평가이율의 산출시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準據利率을 산출하여야 하며, 준거이율을 기초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長期的인 金利展望 推移를 감안하고 가격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산출공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準據利率의 設定

준거이율(Reference Interest Rate)은 평가이율 산출에 필요한 基本利率로서 자본시장의 이익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또한 綜合金融化의 진행에 따라 타금융권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거이율의 산출방식으로는 資産運用收益率, 會社債收益率, Building Block방식⁴⁸⁾, Basket방식⁴⁹⁾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회사채수익율을 제외하고는 각사마

48) Building Block 방식은 각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각 자산별 장기수익율을 예측한 후 자산구성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생보사의 총자산 예상수익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예상수익율을 근거로 준거이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49) Basket 방식은 몇가지의 중요 시장금리로 금리포토폴리오(또는 Basket)를 구성하여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CD, RP, 어음매출 등의 금리 결정시 사용된다.

$$R = w_1 Y_1 + w_2 Y_2 + \dots + w_n Y_n$$

다 상이할 수 있고,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恣意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자산운용 실적이 불안한 대다수 소형사와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는 일부 대형사가 양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회사채 수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에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 등의 特定金利에 連動된 상품의 비중이 50%⁵⁰⁾ 이상의 수준이며, 향후 情報公示制度의 強化, 消費者의 金利選好度 增加 추세를 감안한다면 타금융권 상품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상품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채권시장이 빈약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현재 3년만기 「銀行保證付 會社債 收益率」이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율을 준거이율로 설정하는 것이 현행 여건상 불가피하다.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은 평가이율의 적용방식에 따라 장기적인 금리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시장금리에 일정 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評價年度方式(Lock-out method)” 및 “發行年度方式(Lock-in method)” 등으로 그 적립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나. 評價利率의 適用方式

평가이율 적용방식에는 발행연도방식과 평가연도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을選擇하느냐에 따라 평가이율이 달라진다. 발행연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R : Basket 의 가중평균 수익율
 $w_1, \dots, w_n$: 포트폴리오 자산의 구성비율(weights)
 $Y_1, \dots, Y_n$: Basket에 들어 있는 각 자산의 수익율

Basket을 구성하는 자산의 선정과 구성비율은 금융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무기획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50) 보험개발원, FY'95 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 1996. 7

계약에 대한 평가이율은 시장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판매당시의 평가이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평가연도 방식의 경우는 시장금리 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신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遡及 適用되기 때문에 발행연도방식에 비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적용방식에 따른 長短點을 分析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發行年度方式

발행연도방식은 상품이 판매되는 당해년도에 約定된 利率을 적용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이 終了될 때까지 최초에 산출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 일본 등의 생명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 판매당시의 금융환경(특히 금리수준)과 보험계약 종료시의 금융환경이 거의 변화가 없는 安定的인 狀況에 適合하다.

이 방법은 상품판매시 미리 계산된 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계산의 간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으나, 먼 장래의 금리수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安定的인 評價利率을 요하게 된다. 계약자에 대한 부채,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평가이율을 낮게 설정하게 되므로 경과년도별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過剩積立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편 금융환경의 불안에 따른 예측의 오류로 시장금리가 평가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준비금의 과소적립으로 인한 자본금의 준비금으로의 전입, 지급불능 등 현재 일본에서 겪고 있는 것과 같은 財務健全性에 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행연도방식을 채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OECD가입 등으로 인한 금융의 개방화에 따라 國內金利가 下向安定化로 이행될 것이 확실시 되나, 어느 정도까지 일지는 추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의 준비금 적립 부담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과의 차를 적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실제금리가 책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資本蠶食 등 회사의 損益이 惡化될 수 있다.

둘째, 현행 제도하에서도 많은 회사의 준비금 積立負擔이 높은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평가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모든 보험회사에게 커다란 負擔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장래의 부채 평가에 있어서 현재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장래 이자율의 예측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할 경우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 준비금적립이 충실하지 못한 회사들의 경우는 合併 또는 破産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국면에 이를 수 있다.

세째, 현행 우리나라의 준비금 적립형태는 순보험료식 적립방법과 해약환급금식 적립방법이 양립⁵¹⁾하고 있어 표준책임준비금 적립방법 도입시 基準을 一元化하게 되면 순보험료식 적립사에게도 부담이 되겠지만 해약환급금식 적립사의 경우 순보험료식 적립사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준비금 적립에 대한 負擔을 더욱 加重시킬 것이다.

네째, 현행 예정이율 수준을 고려할 때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의 책정이 곤란하다. 다음 표는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을 기준으로 현행 예정이율(7.5%)

51) 순보험료식 적립사 삼성, 흥국, 교보 3사, 혼합식 적립사 제일,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기타 29사

수준에서 적정한 표준책임준비금 이율을 구하고자 분석한 것이다.

동 상품은 貯蓄과 保障을 겸한 보험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형상품, 생사혼합보험 등(연금보험도 연금개시전까지는 동상품의 유형에 포함됨) 國內商品을 單純化 한 例로 볼 수 있다.

분석방법은 발행년도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시에는 예정이율 7.5%를 적용하고,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에는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위험율 측면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산출 위험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상품의 보장내용>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보 장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사망 또는 1급장해시	1,000 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	1,000 만원
납입면제	2 3급장해	차회이후 보험료

<표 V -3> 豫定利率別 月納 保險料 例示

(단위 : 원)

구 분	7.5%	7%	6%	5%
순보험료	22,900	23,900	26,200	28,700
영업보험료	29,600	30,600	32,800	35,200

<표 V -4> 利率變動에 따른 責任準備金의 變化

(단위 : 백원, %)

구 분	1 년	2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20 년
7.5 % ①	2,490	5,130	7,931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②	0	2,988	6,217	13,206				
7 %	2,614	5,375	8,293	14,643	21,746	34,076	60,849	100,000
증가 ①	105.0	104.8	104.6	104.1	103.7	102.9	101.6	100.0
율 ②	-	179.9	133.4	110.9				
6 %	2,879	5,898	9,062	15,864	23,352	36,080	62,748	100,000
증가 ①	115.6	115.0	114.3	112.8	111.3	109.0	104.7	100.0
율 ②	-	197.4	145.8	112.8				
5 %	3,170	6,466	9,894	17,171	25,051	38,162	64,659	100,000
증가 ①	127.3	126.0	124.8	122.1	119.4	115.3	107.9	100.0
율 ②	-	216.4	159.1	130.0				

- 주 : 1. 7.5 % 난의 ①은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이며, ②는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임.
2. 증가율 난의 ①은 보험료 산출이율 7.5%로 계산한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에 대한 각 이율별 표준책임준비금에 대한 비율이며, ②는 보험료 산출이율 7.5%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에 대한 각 이율별 표준책임준비금에 대한 비율임.
3. 7년 20년은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이 동일함.

발행연도 기준으로 할 때 위 <표 V -4>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0.5% 하향 시킬 경우 初年度 책임준비금은 약 5% 증가한 값이 되며, 2.5% 하향시킬 경우 27% 증가한 값을 追加 積立하여야 한다.

더구나, 解約還給金式準備金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는 현행 기준으로 초년도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표준책임준비금 도입시 현행 순보험료식준비

금 이상의 적립을 하여야 하므로 준비금적립 능력 및 지급여력 확보가 곤란한 회사는 자본잠식은 물론 추가적인 자본금 전입이 필요하게 된다.

준비금 적립이자율을 6% 이하로 할 경우 초년도를 분석하면 總納入 純保險料(274,800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 지출, 위험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회사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評價年度方式

평가연도방식은 상품의 販賣時期와 관계없이 신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하여 평가시점의 평가이율을 적용하여 장래의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毎年 市場金利에 따라 준비금을 再計算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생명보험과 미국의 일부 연금상품이나 GICs의 경우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평가연도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이율은 평가년도별로 매년 다르게 산출하므로 시중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여 부채의 평가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계산과정에서 평가이율별 기수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의 複雜性과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른 準備金 增加는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리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행년도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금리전망의 어려움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보 차원에서 평가연도방식을 概略的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短期的인 금리하락시는 전년도 준비금에서 예정되어 있던 차년도 준비금에 追加的인 準備金이 필요하게 되므로 예정이율보다 평가이율이 높은 수준에서는 정확한 經營利益의 算定이 어렵다. 이러한 추가적 준비금 가운데 예정

이율과 평가이율의 차로 발생하는 순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시에 대비하기 위한 別途의 準備金 裝置가 필요하다. 예정이율보다 평가이율이 낮은 경우는 발행년도방식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자본잠식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장기적인 금리하락시에는 단기별로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으나, 발행년도방식에 비해 계속적으로 부담이 많아진다.

둘째, 평가연도방식은 시장금리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이율을 적용함으로 평가이율이 보험료 산출이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부채의 합리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평가이율이 높을 경우에는 현행의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하에서는 解約還給金 以下の 준비금을 적립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해약환급금을 最小準備金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해약될 경우의 대처능력이 未洽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 해약을 자체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각사의 代表計理人은 해약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해약율을 감안한 해약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 현행 배당체계⁵²⁾에서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連繫된 이차배당 등 各種 配當金 體系를 整備하거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재계산이 필요하다.

3) 評價利率의 水準

우리나라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7.5%로 현재 市場金利의 60%

52) 금리차보장 :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에 금리차보장율을 곱하여 계산

이차배당 :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이차배당율을 곱하여 계산

사차배당 : 전년도 위험보험료에 배당율을 곱하여 계산

장기유지특별배당 : 6년 이상 유지계약에 대해 전년도 말 해약환급금식준비금에 배당율을 곱하여 계산

수준이다. 美國의 경우 보험기간이 10년인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시장금리의 70% 수준이고, 日本은 84% 수준이며, 평가연도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英國은 자산운용수익율의 97.5% 수준이며, 3년경과 후는 연 7.2% 이하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積立負擔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수준이 높고 향후 하향안정화 추세로 진행된다면 발행연도방식으로는 보험의 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평가이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연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금리리스크 및 해약에 대한 추가 준비금의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이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V -5> 評價方法別 比較

구 분	평가연도 방식	발행연도 방식
준비금의 평가	연도별 실제금리 적용으로 합리적인 부채평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금리 적용으로 과다 또는 과소평가
급격한 금리 등락	하락시에는 준비금 부담이 증가되며, 상승시에는 이익잉여금 발생	금리의 보수적 적용으로 “평가연도방식”에 비해 하락시에는 충격이 적으며, 상승시에는 이익이 많이 발생
사무처리 수준	복잡함	단순함
해약환급금과 관계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계리인으로 하여금 당년도 해약율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과 준비금에 대한 차액을 별도의 준비금으로 적립토록하는 제도장치 필요	대체로 해약환급금보다 많음
국내에 적용	금리변동에 대한 준비금을 추가하면서 적용할 경우 현행 금리수준, 회사수준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긍정적인 방법임.	안정적인 방법이나, 종합금융화, 합병·인수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채택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

다. 評價利率의 算出⁵³⁾

평가이율의 산출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에 대한 검토가 先行되어야 한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자유화되면 현재와 같이 保險會社別, 商品別, 保險期間別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닌 회사의 규모에 적절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현재는 보장급부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거의 동일한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으나, 가격자유화가 완전히 진행되면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적용의 차등화에 따라 서로 差別化된 保險料가 算出될 것이다. 특히 보험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豫定利率은 각사의 재무기획 담당자, 계리인 등이 長期的인 利子率 및 資産運用收益率을 감안하고, 또한 향후 소비자의 金利敏感度 증가 및 保險에 대한 認知度 증가에 따른 價格公示制度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商品競爭力 確保를 위하여는 타사의 요율수준을 고려하여 회사의 체질에 맞는 적정 수준의 예정이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이처럼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에 있어서도 각사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겠지만, 평가이율 역시 예정이율 못지 않게 보험회사의 손익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격자유화와 더불어 각사가 經營戰略的 次元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후술하는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평가이율 산출방법은 간단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3) 이 보고서에서 평가이율은 작성자가 장래의 금리하향화를 고려하여 산출된 값이며, 필요할 경우는 가중치 또는 기본 이자율을 적절하게 조정가능 할 수 있음.

특히 시장이율이 낮은 경우 평가연도방식의 평가이율이 발행연도방식의 평가이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시장이율 수준에 중점을 두어, 향후 시장이율이 미국 수준인 7 ~ 8% 수준에서 안정을 이룰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준거이율 및 評價利率의 適用方式을 선택한후 평가이율의 산출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이율은 적용방식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발행연도방식을 택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支給不能 事態가 발생하지 않도록 安定的인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연도방식에서는 시장금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合理的인 부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1) 發行年度方式

최근 會社債 收益率이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율은 10% 수준(회사그룹별로 8.4% 10.3%의 편차를 가짐)을 보이고 있으며, 발행연도방식은 한번 결정하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이자율이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식에서는 보다 保守的으로 평가이율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행연도방식에서는 보험기간이 年金의 경우에는 종신까지, 年滿期保險은 보장기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황 및 금리의 하향 추세를 감안한다면 保險期間別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각 계약간에 형평을 부여하게 된다. 長期保險을 위주로 금리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가이율을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短期保險의 경우는 준비금의 과다적립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배당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단기보험 위주로 평가이율이 결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먼 장래에 회사가 지급불능 사태로 진전될 경우 장기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표 V -6> 主要 金利指標

구 분	1993	1994	1995	1996.10
생보사 자산 운용수익율	10.8	10.9	10.8	10.0(*)
약관대출이율(**)	12.0	12.0	12.5	12.5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	8.5	8.5	9.0	9.0
회사채 수익율	12.4	12.9	13.8	12.1

주 * : '96년 8월 실적임.

** : 대출로 운용되는 자산이 전체의 47%를 점유하며, 특정상품의 경우 약관 대출이율에 연동되고 있음.

*** : 동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의 점유율이 약 40%이고, 배당등 약관 운영체계가 1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 연동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期間別 區間을 短期貯蓄性 商品을 위한 10년 이내와 教育保險 등 55세, 60세만기 등의 세만기 보장상품을 수용하는 10년 초과 30년 이내와 年金保險 등 終身保險 상품을 위한 30년 초과로 경우로 구분하면 각 계약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기간별 평가이율은 장기보다는 단기쪽을 높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準據利率은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의 평균치를 이용하는데, 매년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회사채 평균수익율(Y12)과 36개월 회사채 평균수익율(Y36) 중 낮은 이율로 한다. 낮은 이율의 적용은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利率騰落에 대한 婉曲化效果(smoothing out)를 주게 된다.

<표 V -7> 發行年度方式의 評價利率 算出

보험기간	산 출 공 식	W
10년 이내	$I = 0.05 + W \times (R1 - 0.05) + W/2 \times (R2 - 0.1)$	0.4
11년 30년		0.3
30년 초과		0.2

주 : $R = \min(Y12, Y36)$, $R1 = \min(R, 0.1)$, $R2 = \max(R, 0.1)$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산출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숫점 이하 네째 자리에서 버림으로써 보수적인 요인을 가미시키고, 산출된 평가이율이 전년도 10% 이내일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율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簡便性을 도모할 수 있다.

<표 V -7> 산출공식상의 0.05는 주요 國際金利⁵⁴⁾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이율을 5%로 가정하였다. 이는 기간별 차등화를 최소화하고, 장기보험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W는 보험기간에 따른 加重値를 부여한 값으로 준거이율이 5% 10% 범위에 있을 때는 가중치가 100% 반영되며, 10%를 초과하는 경

54) 주요국제금리 현황

(단위 : %)

구 분	미국 Prime Rate	Euro-Dollar	Euro-yen	일본 Prime Rate	독일 Lombart	영국 Base Rate	미국채 TNB(30Y)
1991	6.50	4.25	5.56	6.63	9.75	10.50	8.14
1992	6.00	3.44	3.81	4.50	9.50	7.00	7.67
1993	6.00	3.31	2.09	3.30	6.75	5.50	6.25
1994	7.75	6.44	2.34	3.00	6.00	6.25	7.75
1995	8.50	5.69	0.50	1.63	5.00	6.50	6.00
1996.6	8.25	5.50	0.59	1.63	4.50	6.00	7.00

주 : 한일경제 '96. 9. 한일경제연구소

우에는 10% 이내에서 적용한 값의 50%를 초과이율에 대한 가중치로 부여하여 높은 금리에 대해서는 安全率을 가미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안정성을 높였다. 가중치 W는 현재의 준비금 적립이율(배당보험 7.5%)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기간별 차등화 비율을 소폭 반영하여 책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리체계가 현재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본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政策的으로 決定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처리하여 보다 實質的인 利子率에 접근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20년의 경우 준거이율이 5%이면 평가이율은 5%가 되고, 10%로 상승하면 기준이율 5%에 1.5%가 인상되어 평가이율은 6.5%로 계산되며, 준거이율이 15%로 상승하면 평가이율은 0.75%가 상승한 7.25%가 된다.

이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초기값(기본값)이 높고 가중치가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리체계가 현재 높은 수준에 있으나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안정보다는 상대적 안정을 추구하여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표 V -8>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發行年度方式 基準)

준거이율	보 험 기 간		
	10년 이내	11년 30년	30년 초과
6 %	5.4%	5.3%	5.2%
7 %	5.8%	5.6%	5.4%
8 %	6.2%	5.9%	5.6%
9 %	6.6%	6.2%	5.8%
10 %	7.0%	6.5%	6.0%
11 %	7.2%	6.65%	6.1%
12 %	7.4%	6.8%	6.2%
13 %	7.6%	6.95%	6.3%
14 %	7.8%	7.1%	6.4%

이상 客觀的인 보험료산출을 위한 예정이율 적용방법을 제시 했지만, 보험료 산출과 준비금적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발행연도방식의 경우 예정이율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예정이율과 규제되고 있는 最高 評價利率과의 관계이다.

시장금리가 높다고 예정이율을 높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어 영업측면에서는 판매력을 높일 수 있으나, 評價利率이 安定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년도 수입보험료 이상으로 法定準備金을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어느 특정시점의 준비금 V_t 가 전년도 준비금 V_{t-1} 과 전년도 수입보험료(P)의 元利合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적립에 있어 缺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리인은 평가이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평가순보험료(Valuation Net Premium, P)가 영업보험료(Gross Premium, G)보다 큰 경우에는 준비금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연중앙 시점에서 缺損準備金(Deficiency-Reserves)⁵⁵⁾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P - G) \cdot \left[\frac{a_{x+t-1:\overline{n-t+1}|} + \ddot{a}_{x+t:\overline{n-t}|}}{2} \right]$$

$$(P - G) \cdot \left[\frac{\ddot{a}_{x+t:\overline{n-t}|}}{1 + i/2} \right]$$

55) Mark A. Tullis 외, Valuation of Life Insurance Liabilities, ACTEX 1990, P99

<표 V -9> 保險料와 準備金の 關係

당년도 준비금	관계	전년도 준비금과 수입보험료 원리합계	비 고
V_t	$\leq$	$(V_{t-1} + P) \cdot (1+i')$	이익잉여금 발생
	$>$		준비금 결손

주 P : 자연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

i' : 자산운용 수익율

준거이율별 예정이율의 適正水準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준거이율이 결정되면 평가이율이 산출되므로 이에따라 평가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평가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최고 예정이율은 그 이하의 평가이율을 모두 모두 만족시키게 되고 그 이상에서도 任意의 保險料算出 利率로 계산한 연도말 준비금과 순보험료(연납 기준)를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율로 부리한 합계액이 평가준비금 수준을 만족하는 예정이율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는 初年度 準備金만 가지고 계산하여도 적정 예정이율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자산운용 수익율 (i')이 평가이율 또는 찾고자 하는 예정이율(i)을 상회하고 있어 前年度 準備金과 收入保險料가 자산운용 수익율로 부리되어 평가이율로 적립하는 당년도 준비금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의의 초년도 순보험료(P)의 연도말 원리합계가 초년도 평가준비금(V_1)을 상회하는 初年度 純保險料를 구하면 된다. 그 순보험료가 산출되는 예정이율이 평가준비금을 현재 기준으로 적절히 적립할 수 있는 예정이율이다.

즉, $P \times (1+i') > V_1$ 을 만족하는 P와 예정이율(i)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운용수익율(i')가 이용되는 것이다.

2) 評價年度方式

평가연도방식은 市場金利를 最大한 反影하여 해당 년도의 준비금을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회사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율이 상이하지만 객관적인 시장금리가 존재하므로 그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각사의 수익율을 수용할 수 있는 평가이율을 책정하는 것이 평가연도 방식의 취지라 생각된다. 그러나 당년도만의 시장금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기적이지만 향후 몇년간의 추이 예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金利下落에 따라 필요 준비금 전입액이 높아지는 경우 준비금 적립을 위한 財源 確保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연도방식은 장기적인 금리를 예측하는 반면 평가연도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금리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이방식에서는 보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금리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은 아니고, 商品類型別로도 金利差等化가 不必要하므로 보험기간별, 상품종류별로 준비금 평가이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一律적으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다만 시장금리가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 적립에 대비한 缺損準備金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준거이율은 발행연도방식과 동일하게 회사채 수익율의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시장금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基本利率을 削除하였다.

$$I = W \times R_1 + W/2 \times (R_2 - 0.1)$$

여기서, $W(\text{가중치}) = 0.8$, $R = \text{Min}(Y_{12}, Y_{36})$, $R_1 = \text{Min}(R, 0.1)$, $R_2 = \text{Max}(R, 0.1)$

위 식에 의한 평가이율은 준거이율이 10% 이하일 때는 80%를 반영하고, 10%를 超過할 경우는 10% 부분 80% 와 10% 초과부분 40%를 반영함으로써

고금리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여 評價利率의 安定性을 도모하였다. 다만, 이 방법과 발행연도방식을 비교할 경우 준거금리가 7% 이하의 저금리 기간에는 오히려 발행연도방식의 평가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발행연도방식에서 기본이율을 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7%를 초과하는 고금리 시장에서는 평가연도방식이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한다.

<표 V -10>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例示(評價年度方式 基準)

준거이율	6%	7%	8%	9%	10%	11%	12%	13%	14%
평가이율	4.8%	5.6%	6.4%	7.2%	8.0%	8.4%	8.8%	9.2%	9.6%

평가연도 방식의 준비금 평가에 있어서 평가이율의 하락에 따른 준비금 추가 적립분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V'_t = (V_{t-1} + P) \cdot (1 + i') + (V'_{t-1} - V_{t-1}) \cdot (1 + i')$$

V'_t : 평가이율 변동 후 t 년도 말 준비금

V_{t-1} : 평가이율 변동 전 t 년도 말 준비금

P : 자연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

i' : 변동 후 평가이자율

위식 右邊의 첫째항은 변동 전 전년도 말 준비금에 보험료가 납입되어 변동된 이율로 부리 적립되는 금액이고, 둘째항은 이자율 하락으로 준비금 증액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대로 평가이율이 상승하게 되면 준비금을 상승전보다 적게 적립하게 되므

로 준비금 적립에 있어서 잉여가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수식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상승전 준비금이므로 평가준비금 이상이 된다. 여기서 둘째항을 차감하면 당년도말 준비금이 되는데, 차감한 금액이 평가이율 상승에 따른 잉여가 된다.

$$V'_t = (V_{t-1} + P) \cdot (1 + i') - (V_{t-1} - V'_{t-1}) \cdot (1 + i')$$

이러한 잉여는 계약자 및 주주배당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전액 지급은 곤란하며 계약이 소멸 될 때까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추가 준비금을 위하여 일부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内部留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연도방식은 해약환급금보다 표준책임준비금이 낮을 경우는 경과년도별 해약율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과 표준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적립해야 한다. 연도별 해약율은 保險計理人이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추이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며, 해약에 따른 준비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평가연도식 적립방법에서는 標準責任準備金, 金利下落 리스크에 따른 準備金, 解約還給金 지급을 위한 準備金 등 세가지가 기본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며, 세가지 준비금의 합이 보험료 산출 이자율로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크게 되면 동 방식의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책임준비금 이외의 두가지 적립을 및 적립방법은 科學的으로 檢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계약의 t년도 준비금을 V_t 라고 할때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V_t = V1_t + V2_t + V3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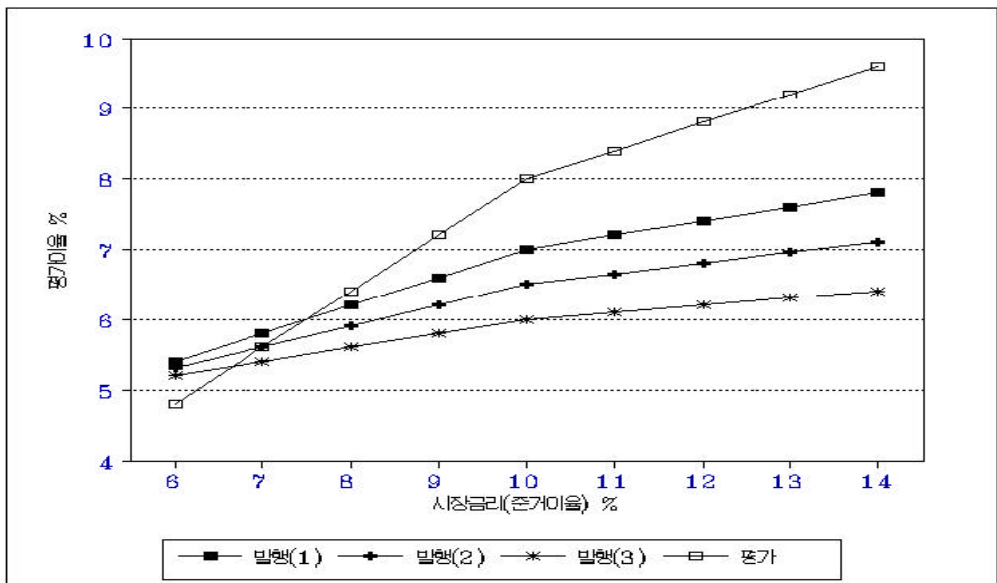
단, $V1_t$: 표준책임준비금

$V2_t$: $\phi \cdot (V_{t-1} - V'_{t-1})$, 금리리스크에 대한 준비금, ϕ 는 비례계수

$V3_t$: $\omega_t \cdot (W_t - V_t)$,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 ω_t 는 해약율

한편, 보험회사의 계리인은 V1, V2, V3 적립을 위하여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는 회사 준비금 적립의 안정성은 물론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행연도방식에 비해 보험계리인의 豫測力과 分析力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2> 市場利率 變動에 따른 評價利率



주 : 발행(1)은 보험기간 10년 이하, 발행(2)는 보험기간 10년 초과 30년 이하, 발행(3)은 보험기간 30년 초과에 해당하는 발행연도방식이며, 평가는 평가연도방식을 의미함.

위에서 작성한 표준책임준비금 적립방법별 평가이율 산출식을 토대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평가이율을 實證分析하면 아래 <표 V-11>과 같이 나타난다. 1990년대 보험료산출 예정이율은 배당보험의 경우 7.5%로 불변하였으며, 準據利率인 회사채수익율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급격

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율의 안정성을 위해 적용연도에서 회사채수익을 직전3년 평균치와 1년치의 최소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값은 많이 평활화 되었다.

계산된 평가이율의 경우 평가연도방식은 자산운용수익을 이하로 나타나 준비금적립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행연도방식도 평가이율이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아 준비금적립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행연도방식의 10년이하의 경우 평가이율이 보험료산출 예정이율 7.5% 전후로 산출되어 동방식의 특성인 保守性이 若干 缺如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 자산운용이 회사채수익율에 영향을 받는 貸出資産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주가폭락에 따라 자산운용수익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V-11> 市場金利에 따른 評價利率 推移

(단위 : %)

연도	자산운용 수익율	회사채 수익율	적용이율	평가연도 방식	발행연도방식		
					10년	11 30년	30년
1990	12.4	16.4	15.4	10.16	8.08	7.31	6.54
1991	12.0	18.8	16.8	10.72	8.36	7.52	6.68
1992	11.9	16.2	16.2	10.48	8.24	7.43	6.62
1993	10.8	12.4	12.4	8.96	7.48	6.86	6.24
1994	10.9	12.9	12.9	9.16	7.58	6.935	6.29
1995	10.8	13.8	13.0	9.20	7.60	6.95	6.30

주 : 적용이율은 회사채수익율의 직전3년치(당년도 포함)와 1년치(당년도)중 최소 값이며, 1988년도 회사채수익율은 14.5%, 1989년도는 15.2% 임.

자료 : 제일경제연구소, 제일경제연구, 1996. 8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8

4. 自由化 效果 및 時期

가. 自由化 效果

保險料算出 豫定利率의 자유화 뒤에는 準備金積立 評價를 위한 평가이율의 상한 규제가 뒤따른다. 현재는 상품유형별, 보험기간별 준비금 평가이율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제도가 도입되면 법정준비금 이상의 적립이 가능한 평가이율 수준 이하로 적립이율을 결정하여 準備金積立의 安定性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다.

먼저 예정이율 자유화의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 평가이율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豫定利率은 현재까지는 政策當國에서 決定하는 획일적인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不安과 保險의 社會的 機能을 고려하여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여온 결과이다. 그러나 이 제는 제1금융권의 금리자유화가 대부분 진행⁵⁶⁾되었고, 금융시장의 개방 및 보험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價格競爭이 深化되고 있음은 물론 금리 역시 하향 추이를 보임에 따라 예정이율을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금리의 예측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保險事業의 安定을 기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장기적인 특성때문에 예정이율은 장래의 금리전망 여하에 따라 회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사에서는 자산운용 수익율 등 經營의 效率性을 예측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예정이율을 선택함으로써 금리하락

56) '95년말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완료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별단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1 3개월짜리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초단기예금임.

에 따른 지급여력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선택범위 확대로 消費者 權益이 圖謀된다. 현재 3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가격체계로 인하여 동일한 보장내용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배당등 事後的인 價格差別化만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실정과 규모에 맞는 예정이율의 선택과 이에 따른 보험료의 산출은 동업타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로서 하여금 현재보다 有利한 價格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만든다.

세째, 經營의 效率性을 圖謀할 수 있다. 보험료, 준비금의 적립, 계약자배당 등이 일정한 틀에 짜여진 一律的 經營方式에서 벗어나 경제원칙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內實爲主의 經營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의 효율성에 따라 보험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각사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제고와 수익율의 증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責任經營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째, 예정이율의 신축적 운영으로 保險産業의 成長을 圖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보험권의 보수적인 예정이율과 시장금리간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상품의 誘引效果가 적었으나, 자유화에 따른 신축적인 요율운영은 보험상품의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충분히 發揮할 수 있게 하여 保險市場의 活性化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V -12> 豫定利率의 策定과 諸要素와의 關係

구 분	보험료	가격경쟁력	재무건전성
예정이율↑	하락	좋아짐	나빠짐
예정이율↓	상승	나빠짐	좋아짐

평가이율은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最高利率이며 준비금을 合理的이고, 安定的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적용방식에 따라 추구하는 효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發行年度方式에 의한 평가이율은 長期的인 豫測이 필요하므로 준비금 적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保守的으로 설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계약초기에 準備金을 過大評價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준비금적립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줄어 들어 계약자배당 등 契約者 保護側面이 未洽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만기, 실효해약 등 계약소멸시 특별배당 등을 통한 계약자 환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V-13>은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수준을 연차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책임준비금 및 현행준비금의 적립방식을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으로 구분하여 현행 준비금을 표준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할 때의 모델상품의 필요전입액을 고찰하고, 모델을 단순화하여 각 회사 그룹별로 증감액을 분석하였다. 다만, 준비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등 金利連動商品과 從業員退職積立保險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V -13> 發行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단위 : 백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표 준 준비금	a	2,665	5,476	8,442	11,573	14,880	22,060	34,471	61,227	100,000
	b	93	3,333	6,728	10,287	14,023	22,060	34,471	61,227	100,000
현 행 준비금	A	2,490	5,130	7,931	10,905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B	0	2,988	6,217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추 가 적립액	①	175	346	511	668	817	1,082	1,367	1,322	0
	②	2,665	2,488	2,225	1,954	1,674	1,082	1,367	1,322	0
	③	-2,397	-1,797	-1,203	-618	-40	1,082	1,367	1,322	0
	④	93	345	511	668	817	1,082	1,367	1,322	0

주 1.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예정이율 7.5%, 평가이율 6.8%(시장금리 12% 가정)

3. 표준책임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현행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추가적립액 ① : 순보험료식 → 순보험료식

② : 해약환급금식 → 순보험료식

③ : 순보험료식 → 해약환급금식

④ : 해약환급금식 → 해약환급금식

<표 V -14>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단위 : 억원)

구 분	가 회사 (기존사)	나 회사 (기존사)	다 회사 (기존사)	라 회사 (신설사)	마 회사 (신설사)
①	25.7	20.0	-	-	-
②	-	-	77.6	157.6	472.8
③	-27.0	-21.0	-	-	-
④	-	-	24.8	19.8	59.4

- 주 1. 종퇴보험과 금융형상품은 현행대로 적립
2. 상품별로 준비금 적립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전통형상품을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으로 환산함.
3. 경과연도별로 보유계약 점유율을 단순화함.
가, 나, 다 회사 : 1차년도 20%, 2,3차년도 15%, 4,5차년도 10%,
6차년도이상(7년) 30%
라, 마 회사 : 1차년도 40%, 2차년도 30%, 3차년도 25%, 4차년도이상(5년) 5%
4. 보험료 적립금 1,000억원 기준
‘가’ 회사 : 순보험료식 적립사 , 전통형 45%,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5%, 금융형 40%
‘나’ 회사 : 순보험료식 적립사 , 전통형 35%, 종업원퇴직적립보험 20%, 금융형 45%
‘다’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4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5%, 금융형 45%
‘라’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2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35%, 금융형 45%
‘마’ 회사 : 해약환급금식 적립사 , 전통형 6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5%, 금융형 35%

회사그룹(가, 나, 다, 라, 마그룹)별로는 준비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회사그룹의 經過年度別 占有率, 商品別 構成比率을 단순화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추가 준비금 소요액을 파악하였다.

‘가’회사 그룹의 경우 순보험료식으로 이행시 25억 7천만원(전체 준비금의 2.57%)이 추가로 전입되며,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는 27억원(전체 준비금의 2.7%)의 잉여가 발생한다. ‘라’회사 그룹의 경우 순보험료식으로 이행시 157억 6천만원(전체 준비금의 15.76%)이 추가로 전입되며,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는 19억 8천만원(전체 준비금의 1.98%)을 추가로 전입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評價年度方式에 의한 평가이율은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短期的으로 시장금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負債를 合理的으로 評價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이는 시장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준비금평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금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금리가 높으면 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많은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金利連動型 準備金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장금리가 높을 때에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小型社의 準備金積立의 脆弱性 및 시장금리와 예정이율간의 상당한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방법은 획기적인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약자 측면에서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배당금 등의 지급이 많을 것이므로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금리하락시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며, 失効・解約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준비금보다 높을 수 있어 支給不能 등 經營危險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음 표 <V-15>는 현재 금리상황에서 표준책임준비금 적립현황을 연차별로 나타내었다.

<표 V -15> 評價年度方式에 의한 標準責任準備金 積立 現況

(단위 : 백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표준 준비금	a	2,193	4,543	7,059	10,449	13,504	22,060	34,471	61,227	100,000
	b	0	2,400	5,345	9,164	12,647	22,060	34,471	61,227	100,000
해약환급금		0	2,730	5,831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현행 준비금	A	2,490	5,130	7,931	10,905	14,063	20,978	33,104	59,905	100,000
	B	0	2,988	6,217	9,619	13,206	20,978	33,104	59,905	100,000
추가 적립액	①	-297	-587	-872	-456	-559	1,082	1,367	1,322	0
	②	2,193	1,555	842	830	298	1,082	1,367	1,322	0
	③	-2,490	-2,730	-2,586	-1,741	-1,416	1,082	1,367	1,322	0
	④	0	-588	-872	-455	-559	1,082	1,367	1,322	0

주 1.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예정이율 7.5%, 시장금리 1 3년 12%, 4 6년 10%, 7 20년 8.5% 가정

3. 표준책임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현행준비금 A : 순보험료식, B : 해약환급금식

추가적립액 ① : A→a, ② : B→a, ③ : A→b, ④ : B→b

<표 V -16> 會社別 追加 所要額 推定

(단위 : 억원)

구 분	가 회사 (기존사)	나 회사 (기존사)	다 회사 (기존사)	라 회사 (신설사)	마 회사 (신설사)
①	-2.3	-1.8	-	-	-
②	-	-	49.6	100.8	302.4
③	-51.3	-39.9	-	-	-
④	-	-	0.2	-27.2	-81.6

주 1. 시장금리 1 3년 12%, 4 6년 10%, 7 20년 8.5% 가정

2. 기타 사항은 앞의 <표 V -14>와 동일함.

평가연도식 적립방법에서는 해약환급금식에서 순보험료식으로의 이행을 제외하고는 契約 初期에 剩餘가 발생하며, 기간 경과에 따른 시장이율의 하향 조정으로 後期로 진행되면서 追加 準備金이 필요하게 된다.

회사별 분석에서는 해약환급금식 적립사가 순보험료식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 전입액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잉여가 발생한다. ‘다’회사의 해약환급금식에서 해약환급금식으로 전환시에도 미미한 추가 전입을 요하는데 이 경우는 후기의 保有契約이 ‘라, 마’에 비해 많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가정으로 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維持契約 形態別로 분석하면 유지율이 높을 수록 현행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서 표준책임준비금식으로 이행시 추가준비금 또는 감액비율이 낮다. 앞에서 예시한 생사혼합보험의 모델을 각 경과연도별 유지계약의 비율별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시나리오 1의 경우 發行年度方式으로 이행시 현행 준비금의 5.7%의 추가 준비금 전입이 필요하며, 評價年度方式으로는 3.9%의 減額積立을 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發行年度方式으로 이행시 0.9% P 가 높은 6.6%의 準備金 轉入이 필요하며, 評價年度方式으로는 5.7% P 높은 9.6%를 減額 積立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지율이 높을수록 표준준비금으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유지율이 낮은 경우는 잉여 또는 결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가중을 고려한다면, 3차년도 이후 유지계약이 많지 않아 시나리오 2의 평가연도방식에서 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평가연도방식의 적용도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V -17> 시나리오별 維持契約 準備金 占有率

(단위 :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7차년도
시나리오1	20	20	10	10	10	30
시나리오2	50	30	10	5	5	-

주 : 시나리오1의 7차년도 값은 7차년도 이상이며, 시나리오2의 5차년도 값은 5차년도 이상임.

나. 自由化 時期

위험을 자유화와 이차배당 자유화가 1997년 4월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고, 비차배당 및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유화는 1998년 이후 검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표준책임준비금 도입도 예정이율 자유화 시기와 같이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保險理論的으로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에 앞서 준비금적립에 필요한 危險率 및 利率이 自由化 되어야 한다. 즉, 표준책임준비금은 위험율 및 이율 등 계산기초율의 적용에 있어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과 분리함으로써 準備金의 安定性 및 合理性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계산기초율의 二元化가 필요하다.

또한, 綜合金融化의 進行 등에 따른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準備金을 適正水準으로 적립하고, 배당금 등의 지급율을 높여 收益率의 向上을 기함은 물론 보험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보험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함에서는 조기실시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保險內的 環境으로는 많은 회사의 준비금적립에 대한 부담, 솔벤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時期로는 會社の 不實化防止를 통한 계약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우선 預정이율 자유화를 수용하기 위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해약환급금제도에 관한 制度的 整備와 소비자의 보험상품 구입을 위한 價格에 대한 情報가 충분히 公示되어야 하고, 금융환경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선진외국에 비해 높아 預정이율의 변동으로 인한 회사의 금리리스크가 아직은 클 것이기 때문에 市場金利가 安定性を 維持하고 長期資本市場이 活性化되어 장기적인 금리예측이 가능해질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豫定利率 自由化의 副作用 및 對應方案

豫定利率 自由化는 생명보험 가격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자유화에 따른 副作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하면서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預정이율의 자유화는 회사간 過當競爭에 의한 보험산업의 混亂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율 최고사와 최저사의 편차가 2% 수준이어서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면 경쟁력이 열악한 회사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豫定利率 1% 上昇에 따른 保險料 減少額은 純粹保障性保險 0원, 生死混合保險 19원, 年金保險 46원으로 연금보험이 가장 많다. 이는 貯蓄性이 강할 수록 預정이율 즉, 이자율에 敏感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 수익율의 최고 편차 2%만큼 預정이율의 차이(預정이율 5.5% 적용과 7.5% 적용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 1년간 보험료 차이가 4.4개월분, 預정이율 1% 차이는 1.9개월분에 해당하므로 價格競爭力 면에서 계속적인 상품판매가 어렵게 된다.

<표 V -18> 豫定利率 變化에 따른 商品種類別 保險料 比較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40세, 2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구 분	순수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5.5%(B)	138	339	479
6.5%(C)	137	316	408
7.5%(A)	136	296	351
8.5%(D)	136	277	305
9.5%(E)	135	261	267
(B-A)/A(%)	1.5%	14.5%	36.5%
(C-A)/A(%)	0.7%	6.8%	16.2%
(A-D)/A(%)	0.0%	6.4%	13.1%
(A-E)/A(%)	0.7%	11.8%	23.9%

주 : 연금보험은 40세가입 60세납 종신보험임.

이자율의 保險料 彈力性⁵⁷⁾은 보험기간별, 보험상품별로 상이하지만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이 높고,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이 이자율 변화에 따른 보험료 차가 크다. 따라서 금리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는 보험료 차이가 적고 保險 固有機能을 強化한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 판매 정책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특정 위험율의 개발 등 市場細分化 政策을 병행한 틈새시장 상품과 회사 이미지와 상품을 연계한 特化商品의 판매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資產負債 綜合管理(Asset Liabilities Management, ALM)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부채관리를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

57) 여기서는 이자율 1%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액을 의미함. 즉 $\Delta P / \Delta i$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 수익을 이상의 만기수익을 보장하는 金融型 商品은 회사의 적정 收支差를 考慮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보장수익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정이율 경쟁에 대비하여 회사는 자산운용 기법을 향상시키고, 正確한 損益診斷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예정이율의 자유화는 1997년도부터 실시되는 위험을 자유화와 함께 無 配當保險의 販賣減少를 예견할 수 있다. 현행 무배당기초율은 보험사업 운용상 안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배당보험의 가격이 무배당보험 가격 이하로 산출될 수 있다. 실제로 위험율의 경우는 사차배당율이 배당위험율에서 무배당위험율 割引幅보다 커 무배당 위험율이 지나치게 安定的으로 산출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선택폭 확대 등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무배당 계산기초율을 배당보험과 균형있게 산출함으로써 무배당보험 판매회사의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豫定利率의 自由化는 財務構造 惡化와 支給能力 弱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점유 확대와 보험료 거수증대를 통한 자금유입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간에 덤핑판매 등 불공정한 요율경쟁이 심화됨으로서 保險價格이 平均費用水準 以下로 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보험료의 과학적인 산출과 준비금 적립에 대한 규제(표준책임준비금 적립)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예정이율의 자유화로 소비자의 가격분석 및 상품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는 동일하고 계약자배당은 대형회사가 많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자유화가 진행되면 保險料算出에서 부터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상품구매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가격

자유화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政府나 客觀性을 갖춘 第3의 機關을 통한 情報公示制度를 強化함으로써 각사의 상품가격이 투명화되고 상품 결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를 위한 평가이율은 適用方式에 따라 副作用이 相異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간단히 要約하면 發行年度方式에서는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평가이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시장금리와 의 괴리로 인하여 準備金이 過多 積立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評價年度方式에서는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른 추가 준비금의 적립 및 해약 환급금과의 調和問題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評價利率의 최고한도 설정은 예정이율 자유화에 대한 契約者保護 및 會社의 不實化를 防止하기 위한 규제이다. 즉, 예정이율 자유화에 따른 회사의 과당경쟁을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제도를 이용하여 규제함으로써, 損益分析을 통하여 적정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평가이율 제도를 도입하든 準備金積立에 不實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준비금 적립제도와 배당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금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예정이율 산출체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價格自由化의 核心이 될 수 있는 豫定利率自由化는 보험선진국에서 운용하는 바와 같이 완전자유화 방향으로 하되, 그 時期는 시장금리가 안정을 이루고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도입 및 이와 관련된 制度的 整備가 完備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표준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은 발행연도방식, 평가연도방식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金融環境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도 합리적으로 평가

하면서, 支給餘力(Solvency Margin)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회사별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한다면 가격자유화를 成功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때, 解約환급金式 이상 純保險料式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K율적립방식을 一元化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준비금 적립의 충실도에 따라 지급여력이 조정되고 나아가 이에따라 계약자배당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

價格自由化의 成熟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소비자가 가격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情報公示를 強化하고, 保險約款의 平易化, 商品內容의 單純化 및 契約者 爲主의 商品設計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집질서의 확립과 마케팅 능력의 강화를 통하여 健全한 自律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인들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장에서는 분석의 편리를 위해 많은 가정을 단순화하였으나, 科學的인 分析을 위해서는 평가이율 산출시 상품유형별, 보험기간별로 차별화하여 상품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는 先進外國에서도 規制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政策決定者가 責任準備金의 安定的인 積立을 고려하여 평가이율을 합리적으로 告示함으로써 契約者保護 및 會社의 不實化를 防止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結 論

그동안 生命保險價格은 사회적, 공공적 특성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규제되었으며 이는 消費者의 權益保護와 생명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を 確保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가격자유화가 진행된 선진외국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 자율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계약자 권익과 관련된 준비금 적립 등 公共性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만 保守的으로 실질적인 감독을 행사함으로써 消費者 權益保護와 會社の 財務健全性を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흐름과 國際的 趨勢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산업도 가격자유화의 완성이 목전에 와 있다. 실제적으로 OECD가입, 크로스보더 허용 등에 따라 외국사는 자사의 보험요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 가격자유화의 마지막인 第4段階는 짧게는 1년후부터 시작되며, 배당자유화와 보험료의 자유화가 그 대상이다. 앞에서 配當自由化에 관해서는 이원별 배당자유화와 특별배당 등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配當例示制度, 先積立後配當制度 등 향후 배당제도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자율자유화에 관해서는 이자율의 이원화와 보험료 산출을 위한 豫定利率 自由化 및 준비금적립을 위한 평가이율제도, 평가이율 산출방법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준비금 적립규제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前提條件이 필요하다.

첫째, 價格決定이 科學的이고 合理的이어야 한다. 생명보험은 가격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즉, 장

래 금리의 예측, 사망율의 추이, 실효해약율 등을 감안하여 科學的으로 價格을 算出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이 불안정하여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적절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산출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消費者의 保險 또는 金融知識이 向上되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품별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각사가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公示制度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유요율 시장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공시제도와 함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금융, 보험지식이 향상되어, 소비자가 가격결정에 間接的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보험가격 자유화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세째, 商品別 販賣構成比가 安定的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생명보험의 판매구성이 저축성보험 위주가 되면, 특히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등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어렵게 된다. 금리부담이 높은 금융형상품의 과도한 판매로 일반상품의 가격정산(배당 등 사후적인 가격)에 合理性이 缺如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별 판매구성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 특성에 맞는 판매 구성비를 도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상품의 계약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등 價格 以外の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販賣生産性이 向上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가격자유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성도 가격결정 과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인정 받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절감, 모집인 1인당 생산량 증대 등 회사 内部的 經營革新이 필요하다.

다섯째, 保險計理人의 資質向上이 필요하다. 보험사업 특유의 수리적 계산 즉, 책임준비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이나 보험료 계산은 專門的인 知識과 複雜한 計算技法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업무는 보험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자유화시대에는 會社의 責任經營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장래의 시장금리, 자산운용수익율 등 금융환경을 적절하게 예측하여 보험료를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선진외국의 경험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最小限의 規制만 가해야 한다.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완전한 자율화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감독기관은 최소한의 규제로 보험회사가 최대한의 經營自律性を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제원칙으로는 契約者保護, 會社의 財務健全性 確保, 公共機關으로서의 役割 등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間接的인 規制를 통하여 회사가 自發的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감독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主要國의 生命保險 價格制度

生命保險의 價格은 保險料와 契約者配當으로 構成되며, 價格規制도 보험료율과 계약자배당에 대해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우선, 생명보험의 요율규제는 보험료산출 豫定利率에 대해 直接 規制하는 방식과 책임준비금 산출 예정이율을 통해 間接的으로 規制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의 범주에, 미국, 영국 등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美國에서는 保險料算出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험료산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비에 각 자산 종류별 長期豫想收益率을 곱하여 산출하는 Building Block방식이 대표적이며, 이는 시가에 가까운 자산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保險料算出에 自律性을 부여하는 대신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 責任準備金の 最低限度를 설정한다. 따라서 생명표, 적용이율, 계산방법 등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적용이율은 動的最大利率(Dynamic maximum interest rate)方式에 의해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한편 發行年度方式(Lock-in method)이 채택되어 계약체결시 적용된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이후 금리환경과 관계없이 固定되어 운용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은 資産充分性分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7가지 이상의 금리시나리오하에서 현금흐름분석을 실시하여 責任準備金の 過不足을 檢證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순보험료식적립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EU에서는 生命保險 指針上 會員國이 요율에 대한 사전인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보험회사가 예정이율을 自律的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사소재국 감독당국이 하나 또는 複數의 最高利率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예정이율이 보험상품의 滿期에 상응하는 國債收益率(Gilts Yield)를 기본으로 하고 다수의 변수를 감안하여 설정되고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이율은 자산운용수익율의 97.5%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評價年度方式(Lock-out method)이 채택되어,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이 매년 변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 평가이율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자산가격의 일시적인 하락을 가정한 계산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규모를 하회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責任準備金の 適正性を 檢證하고 있다. 실제 책임준비금의 결정은 보험회사의 先任計理人 (Appointed Actuary)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bonus valuation reserve」이다. 이는 현재의 배당율이 장래에도 지속되리라 하는 가정하에서 예상배당지급금 규모를 책임준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日本の 경우 보험요율 산출 예정이율은 各社가 保險料算出方法書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것은 대장성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업계 전체적으로 동일한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 이율은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는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동일했으나, 業法改正과 함께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導入되었고 이율은 2.75%로 정해졌다.

臺灣의 경우 배당보험 예정이율은 4 10%에서 자유롭게 설정하나 보험기간이 장기일수록 예정이율을 保守的으로 책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7% 정도에서 결정된다. 책임준비금의 산출이율은, 보험료 예정이율이 6.5%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동일하고 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5%를 적용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예정이율은 3 4년간의 자산운용 실적을 참고로 하여 일정 범위내

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관계없이 生命保險은 4%, 年金保險은 5%를 사용한다.

<표 부록-1> 主要國의 生命保險 價格 規制制度 概要

항 목	미 국	영 국	일 본
약관 및 요율규제	약관은 사전인가 요율은 자유	모두 자유	모두 사전인가
예정이율	4~5%로 안정적인 회사별 차등화	회사별 차등화	높은 수준, 2.75%로 회사별로 동일함
해약가격	보증함	보증안함	보증함
최저 책임준비금	법으로 규정 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되며 보험종류별 차등화 발행연도방식 보험감독관식	법으로 규정 이율은 자산운용 수익율의 97.5% 보험종류와 무관 평가연도방식 3.5% 질멜식	법으로 규정 이율은 2.75% 보험종류와 무관 발행연도방식 순보식, 5년질멜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자산충분성분석 :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cashflow test를 실시함	자산가치 하락을 가정 하여 책임준비금을 계 산하여 적정성 검증	없음
배당규제	없음	없음	사전 승인
배당방식	이원별배당방식	자산할당방식	이원별배당방식
소멸시배당	있음	있음	있음

契約者配當制度에 대해서 살펴보면, 美國의 경우는 배당율을 保險會社가 自律적으로 결정한다. 배당액은 利源別配當方式에 의해 결정되며, 초년도부터 배당이 이루어진다. 또한 배당방식은 投資年度別方式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멸시

배당도 존재한다.

英國에서는 계약자배당이 매년 실시되는 保險金買増配當(reversionary bonus)과 계약소멸시 실시되는 소멸시배당(terminal bonus)으로 구분된다. 소멸시배당은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르는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에 도입되었다. 영국의 계약자배당제도의 특징은 배당금이 현금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을 증액시켜 계약소멸시에 비로소 배당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日本の 경우 계약자배당율의 결정은 대장성의 事前承認을 필요로 한다. 배당에는 이차배당, 사차배당, 비차배당과 더불어 특별배당이 있는데, 이는 장기계약자에 대해 형평성이 있는 대우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1. 美國

보험요율 산출의 세가지 원칙, 즉 비과도성(not excessive), 적정성(adequate), 형평성(not unfairly discriminatory)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요율의 비과도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두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競爭이 요율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며, 보험료 공시는 경쟁의 효과를 더해준다는 사고방식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한 가격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많은 주에서 보험료에 비해 급부수준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상품인가가 거부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일부 종목, 특히 공영의료보험을 보조하기 위해 판매되는 健康保險에 대해서는 最低損害率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⁵⁸⁾ 이러한 방식과 대조적으로 뉴욕주의 경

우는 사업비 한도규제를 통해서, 요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料率의 適正性은 요율에 대한 직접규제가 없기 때문에 責任準備金 및 解約還給金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달성되고 있다. 즉,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법으로 최저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생명표, 최고이자율, 계산방법 등이 전미보험감독관협회 (NAIC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제정한 표준책임준비금법 (Standard Valuation Law)와 표준해약환급금법 (Standard Nonforfeiture Law)에 포함되어 있다.

형평성의 추구는 NAIC Model Unfair Trade Practice Act를 많은 주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를 통해 약관의 이해가능성, 해약환급금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 保險料率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으나, 뉴욕주를 비롯하여 일부 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사업비의 경우 뉴욕주에서는 모집관련비용의 年間限度를 정하고 있다.

1) 豫定危險率

生命表는 計理人會 (Society of Actuary)에서 정부기관 및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데, 대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生命表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소형사는 대형사에 출재하는 조건으로 대형사의 기초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58) Harold D. Skipper,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OECD, 1993

2) 豫定利率

보험료 산출 豫定利率은 장기적인 경제여건, 금리변동 추이, 투자수익율 전망, 배당경쟁 등을 고려하여 保險會社가 自律的으로 決定하는데, 계약자배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傳統型保險의 경우 4~4.5% 수준에서 주로 결정되며, 金融型保險의 경우 시장금리를 감안한 公示利率이 이용되거나 특정자산의 수익율에 연동되기도 한다.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결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Building Block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는 자산 구성비에 해당 자산의 장기적인 예상수익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예정이율로 사용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資産이 時價로 評價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보험회사의 사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豫定事業費率

사업비 부과방식으로는 保險料比例方式, 保險金額比例方式, 件當 一定額을 附課하는 方式이 주로 이용된다. 대부분의 州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뉴욕州와 위스콘신州에서는 일정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뉴욕州에서는 보험료, 보험금액, 회사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집관련비용(field expenses)에 대해서는 年間 使用限度가 설정되어 있다.⁵⁹⁾ 또한 무배당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한도도 정해져 있다.

59) 뉴욕주 보험법 4228조에 의하면 모집관련비용에 대한 정의 및 연간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나. 標準責任準備金 (NAIC, Standard Valuation Law 1992)

標準責任準備金制度는 NAIC가 1981년에 표준책임준비금법(Standard Valuation Law)를 제정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에 이용되는 이자율을 법규에 직접 數値로 표기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動的最大利率 (dynamic maximum interest rate)이 도입되어, 법의 개정 없이도 시장금리의 변동을 신축적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美國은 各州에서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州에 따라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요소도 다르다. <표 부록-2>은 최소한 26개주 이상에서 채택된 생명보험 표준책임준비금 산출요소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표 부록-2> 生命保險 標準責任準備金 算出要素

발행연도	최고이자율	보통생명보험		간이보험
		생명보험	폐질보험	
'48 - '60	3.5	CSO 41	C3DT 26	SI 41
'61 - '62	3.5	CSO 58(a)	C3DT 26	SI 41
'63	3.5	CSO 58(a)	P2DS 52	SI 41
'64 - '74	3.5	CSO 58(a)	P2DS 52	CSI 61
'75 - '79	4.0	CSO 58(a)	P2DS 52	CSI 61
'80 - '82	4.5	CSO 58(b)	P2DS 52	CSI 61
'83 - '85	6.0	CSO 80	P2DS 52	CSI 61
'86	6.0	CSO 80(b)	P2DS 52	CSI 61
'87 - '89	5.5	CSO 80(b)	P2DS 52	CSI 61

주 1. 1983년부터는 보장기간이 20년 초과하는 보험에 대한 이자율임.

2. CSO 80은 Commissioners 1980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

(a) CSO 80은 성구분 생명표(선택표를 부착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음)

(b) 1986년 현재, 흡연/비흡연 구분 생명표는 26개주에서 허용되고 있고, CSO 80 대신에 이용될 수 있음

1) 生命表

生命保險의 경우 (i) Commissioners 1980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 (CSO 80), (ii) 10년 선택사망율을 부착한 CSO 80, (iii) NAIC에 의해 1980년 이후 채택되고 감독관이 승인한 普通生命表를 사용할 수 있다. 簡易保險에서는 (i) Commissioners 1980 Standard Industrial Mortality Table 또는 (ii) 1980년 이후 채택되고 감독관이 승인한 기타 간이생명표가 이용된다. 個人年金 및 生存保險 계약에 대해서는 (i) 1937 Standasrd Annuity Mortality Table(감독관의 승인하에 수정 가능) 또는 (ii) Annuity Mortality Table for 1949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연금의 경우 (i) Group Annuity Mortality Table for 1951(감독관의 승인하에 수정 가능) 또는 (ii) 개인연금에 이용되는 生命表 또는 그 수정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廢疾保險 등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표가 적용된다.

2) 動的最大利率率

동적최대이자율은 Moody's社가 발표하는 Monthly Average of the Composite Yield on Seasoned Corporate Bonds(이하 무디스 수익율)를 準據利率로 하여 보험종류 및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반올림하여 1/4% 단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부록-3>은 보험종류별 동적최대이자율 산출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가방식, 보장기간에 따라 準據利率 및 加重値의 차이로 공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3> 動的最大利子率 算出 方式 (要約)

구 분		생명보험	일시납 즉시연금	기타연금 및 GICs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평가방법 (보장기간별)		발행 연도방식	발행 연도방식	발행연도방식	기금 변동방식	발행 연도방식
준거 이율	10년 초과	Min(Y 12, Y 36)	Y 12	Min(Y 12, Y 36)	Y 12	Y 12
	10년 이하			Y 12		
산식	10년 초과	식(1)	식(2)	식(1)	식(2)	식(1)
	10년 이하			식(2)		식(2)
가 중 치	5년 이하	0.5	0.8	0.8	0.95	0.8
	5~10년			0.75	0.90	0.75
	10~20년	0.45		0.65	0.80	0.65
	20년 초과	0.35		0.45	0.60	0.45

주 1. 산식(1)은 $0.03 + w(R1 - 0.03) + (w/2)(R2 - 0.09)$, 산식(1)는 $0.03 + w(R - 0.09)$

단, w는 가중치, R는 준거이율, R1은 3% 초과 9% 이하 구간의 준거이자율, R2는 9% 초과 구간의 준거이자율임.

2. 기타 연금 및 GICs는 인출조건에 따라서 A, B, C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A형을 기준으로 했음.

3. Y12는 직전년도 6월 30일 현재 무디스수익율의 12개월 평균치이고, Y36은 36개월 평균치임.

動的最大利子率は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安定性を 갖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성에 대한 배려는 생명보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동적최대이자율은 무디스收益率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

의 일정부분만을 반영하여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3% 초과 9% 이하의 구간에서는 최대 50%, 9%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 25%만이 동적최대이자율에 반영된다. 一時納即時年金의 경우 3% 초과 구간에 대해서 80%만 반영된다.

둘째, 加重値의 調整을 통해서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길면 길수록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보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10년 이하이면 가중치가 0.5인 반면 20년 초과면 0.35로 줄어든다. 일부 연금에서는 보장기간의 차이에 따라 가중치 뿐만 아니라 適用算式까지 차별화되고 있다.

세째, 연금보다 생명보험에 대한 동적최대이자율이 낮다. 이는 산식 뿐만 아니라 준거이율의 결정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연금보험은 무디스수익율 12개월 평균치를 準據利率로 사용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12개월 평균치와 36개월 평균치 중 적은 것을 준거이율로 하고 있다.

네째, 一時納生命保險 및 年金에 대해서는 多衆시나리오 분석 (Multi-scenario test)⁶⁰⁾에 의해 法定基準보다 높은 이율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일부 예외적인 보험종목을 제외하고는 發行年度方式이 採擇되어 계약체결 시점에서의 평가이율이 보험기간 동안에 수정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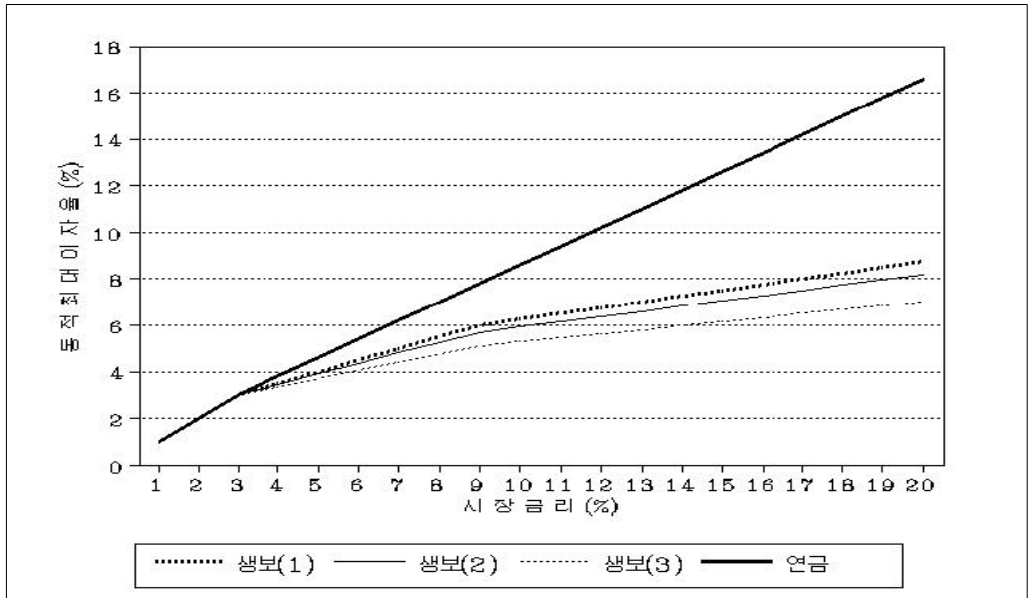
여섯째, 일부 연금보험에서는 이율의 보장정도가 약할수록, 發行年度方式 대신에 評價年度方式을 선택할 때 가중치의 조정을 통해 평가이율이 보다 높아지

60) 투자의 종류, 특성, 대표적인 금리 및 이회율의 추이 등을 고찰하고, 또는 급부금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따라 이회율과 그것에 연동하는 탈락율·신계약율 추이를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측에 따라 항상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인정된다.

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곱째, 標準責任準備金에 이용되는 이자율은 標準解約還給金에 이용되는 이자율보다 낮는데, 단 후자가 전자를 25%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부록-1> 市場金利와 動的最大利子率과의 關係



- 주 1. 생보(1)은 보장기간이 10년 이하, 생보(2)는 보장기간이 10년 초과 20년 이하, 생보(3)은 보장기간이 20년 초과임.
2. 연금은 일시납즉시연금임.

가) 準據利子率

준거이자율은 무디스收益率인데, 보험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1)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직전년도 6월 30일 현재의 무디스 수익율 12개월 평균치(Y12)와 36개월 평균치(Y36)중 낮은 것으로 한다.

(2) 一時納即時年金(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ies), 保險金一時拂 옵션(cash settlement option)⁶¹⁾이 있는 기타 연금과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GICs(guaranteed interest contracts)에 의해 발생한 年金給付金에 대해서는 Y12로 한다.

(3)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기타 연금 및 GICs 중 發行年度方式⁶²⁾으로 평가되고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Min(Y12, Y36)으로 하고, 보장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Y12로 한다. 基金變動方式에 의해 평가되는 기타 연금 및 GICs는 Y12가 적용된다.

(4)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기타 연금 및 GICs의 경우에는 Y12로 한다.

나) 生命保險

생명보험의 동적최대이자율 (I)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단, 동적최대이자율이 전년도에 비해 0.5% 포인트 미만으로 변할 경우에는 전년도 동적최대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61)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험금일시불옵션인데, 이는 보험금이 일시불(lump-sum)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옵션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른다. 이밖에 Interest Option, Fixed-period Option, Fixed-amount Option, Single Life Income Option, Joint and Survivorship Life Income Option 등이 있다.

62) 평가방식에는 발행연도방식(issue year basis)과 기금변동방식(change in fund basis)이 있다. 발행연도방식에서는 연금이나 GICs의 발행연도의 동적최대이자율이 全契約期間에 걸쳐 적용된다. 기금변동방식에서는 연금이나 GICs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변하는 해의 동적최대이자율이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기타 연금과 GICs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연도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I = 0.03 + W(R1 - 0.03) + (W/2)(R2 - 0.09) \text{ ----- (1)}$$

단, W는 가중치

R1은 3% 초과 9% 이하 구간의 준거이자율

R2는 9% 초과 구간의 준거이자율

가중치는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保障期間이란 계약 당시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保險料 및 解約還給金の 변화없이 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장되는 최대년수를 의미한다. 가중치는 보장기간이 10년 이하이면 0.5,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0.45, 20년 초과이면 0.35이다. 이러한 算出公式에 따라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생명보험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동적최대이자율은 <표 부록-4>과 같다.

<표 부록-4> 生命保險 動的最大限度利率

연 도	보장기간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1982	6.75	6.75	5.50
1983	7.25	6.75	6.00
1984	7.25	6.75	6.00
1985	7.25	6.75	6.00
1986	7.25	6.00	6.00
1987	6.50	6.00	5.50
1988	6.00	6.00	5.50
1989	6.00	6.00	5.50
1990	6.00	6.00	5.50

다) 年金

(1) 一時納即時年金, 保險金一時拂 옵션이 있는 기타 年金과 保險金一時拂 옵션이 있는 GICs에 의해 발생한 年金給付金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는 동적최대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가중치는 0.8이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동적최대이자율의 변화를 보면 <표 부록-5>과 같은데, 생명보험에 비해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I = 0.03 + W(R - 0.03) \text{ ----- (2)}$$

<표 부록-5> 一時納 即時年金의 動的最大利率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이자율	11.50	13.25	11.25	11.25	11.00	9.25	8.00	8.75	8.75

(2) 기타 연금 및 GICs

기타 연금보험 및 GICs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는 보험금일시불옵션의 유무, 평가방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있는 연금 및 GICs의 경우 보장기간은 생명보험(보장기간이 20년 초과하는 경우) 동적최대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보장하는 최대년수이다. 보험금일시불옵션이 없는 연금 및 GICs의 경우 보장기간은 契約發行日에서 연금급부가 개시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기타 연금 및 GICs는 基金의 引出條件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인출조건은 A형에서

C형으로 갈수록 완화되는데, 그에 따라 가중치가 줄어들면 평가이율도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⁶³⁾

(가) 發行年度方式에 의해 평가되며, 保險金一時拂 옵션이 있는 其他年金 및 GICs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1) —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산식 — 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식(2) — 일시납즉시 연금에 적용되는 산식 — 가 적용된다. 단, 가중치는 별도로 <표 부록-6>과 같이 적용된다. 보험금일시불 옵션이 없는 기타 연금 및 GICs는 반드시 發行年度方式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행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연금 및 GICs (보험금 일시불 옵션이 없는 연금 및 GICs는 제외)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一律적으로 0.05% 포인트씩 높인다.

<표 부록-6> 年金の 加重値 (1)

보장기간	가중치(%)		
	A형	B형	C형
5년 이하	0.8	0.6	0.5
5년 초과 10년 이하	0.75	0.6	0.5
10년 초과 20년 이하	0.65	0.5	0.45
20년 초과	0.45	0.35	0.35

63) NAIC, Standard Valuation Law, Section 4b 참조

(나) 基金變動方式에 의해 평가되며, 保險金一時拂 옵션이 있는 其他年金 및 GICs

일시납즉시연금의 산식이 적용되며, 가중치는 <표 부록-7>과 같이 적용되는데 동적최대이자율이 연도별로 변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발행년도방식에 비해 A형에서는 0.15% 포인트, B형에서는 0.25% 포인트, C형에서는 0.05% 포인트씩 일률적으로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評價日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연금 및 GICs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0.05%포인트씩 증가한다.

<표 부록-7> 年金의 加重値 (2)

보장기간	가중치(%)		
	A형	B형	C형
5년 이하	0.95	0.85	0.55
5년 초과 10년 이하	0.90	0.85	0.55
10년 초과 20년 이하	0.80	0.75	0.50
20년 초과	0.60	0.60	0.40

3) 計算方法

최저 표준책임준비금은 保險監督官式 (CRVM ; 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에 따라 계산되는데, 개념적으로 질멜식과 유사하며 다음 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初年度定期式 (Full Preliminary Term Method)

보험계약의 특성상 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초년도를 定期保險으로 간주하여 初年度準備金을 적립하지 않고, 2차년도부터 적립하는 방식으로 2차년도 이후는 계약연령이 1년 증가하고, 보험기간이 1년 단축된 平準純保險料 積立方式임.

○ 修正初年度定期式 (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

초년도정기식 방법을 “보험기간이 짧은 고액보험료를 지닌 계약”에 적용할 경우 미래로 상각 이연시킨 사업비 양이 지나치게 크게 되어 초년도정기식 원래의 취지에 반함에 따라 新契約費가 남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계약을 초년도정기식으로 수정했을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수정순보험료(*)가 동일연령으로 가입한 20년 납입 종신보험의 수정순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사업비 유예금액이 제한(***)되는 준비금 적립 방식

$$\text{주}^* : {}_{m-t}P_{x+1:\overline{n-1}|} \quad ** : {}_{19}P_{x+1} \quad *** : {}_{19}P_{x+1} - \overline{C}_x$$

$$V_t = A_{x+t:\overline{n-t}|} - ({}_mP_{x:\overline{n}|} + \frac{({}_{19}P_{x+1} - \overline{C}_x)}{\ddot{a}_{x:\overline{m}|}}) \cdot \ddot{a}_{x+t:\overline{m-t}|}$$

4) 保險計理人 意見書 및 資産充分性分析

생명보험회사는 준비금 및 관련 계리항목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약관상의 가정과 일치하는지, 이전에 발표되었던 금액과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州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計理人 (qualified actuary)의 의견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은 資産充分性分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선임계리인은

미국보험계리인회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가 작성한 표준실무기준을 따라야 한다. 즉 보험종류별로 자산을 구분하고 금리시나리오에 기초해 현금흐름 분석(cashflow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금리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7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 i) 동일 수준의 유지
- ii) 10년간 매년 0.5% 포인트 상승한 후 유지
- iii) 최초 5년간은 매년 1% 포인트 상승한 후 다음 5년간은 매년 5% 포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 iv) 최초 일시에 3% 포인트 급격하게 상승한 후 동 수준을 유지
- v) 10년간 매년 0.5% 포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 vi) 최초 5년간은 매년 1% 포인트 상승한 후 다음 5년간은 매년 1% 포인트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 vii) 최초 일시에 3% 포인트 급격하게 하락한 후 동 수준을 유지

다. 契約者配當制度

1) 制度 內容

美國에서 보험상품의 비용비교를 함에 있어 계약자배당의 기본방향이 문제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計理人會는 1976년 3월 배당제도위원회 (Committee on Dividend Philosophy)를 설립하여 배당금의 계산 및 모집자료에 이용되는 배당금에 관한 計理的 原則과 實務上의 諸問題를 연구하게 되었다. 위원회에 의뢰된 檢討項目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 비용비교가 유효하게 만들어졌고, 모집자료에 예시되어 있는 배당율은 각

社間 充分한 統一性을 갖고 작성되었는지 여부

- 계약자배당이 계약자간 公平性의 原則에 비추어 적절한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
- 경쟁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기존 계약자의 희생을 통해 新契約者를 우대하는지 여부
- 투자년도별 배당방식이 개인보험의 배당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계약자배당에 관련된 실무가 충분히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위원회는 배당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이 부과되어야 한다면, 배당방식을 규제하지 않는 대신 公示를 이행토록 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1980년 가을 유니버살보험, current-assumption 据置年金保險 등 보험회사가 종래와 다르게 보험료를, 부리이율의 변경권을 유보한 새로운 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그와 같은 비보증요소 (non-guarantee elements)의 문제는 계약자배당은 아니지만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여 계약자배당제도와 整合性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확대·재발족하고 최종보고서 및 권고문을 1983년 여름에 완성하였다.

2) 契約者配當의 問題點

(1) 約款貸出

1970년대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약관상 5~6%의 대출이자율이 인정되는 약관대출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NAIC는 최고연이자율을 8%로 하는 變動貸出條項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각 주법에 반영되어 일부 보험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관상

의 대출조항의 차이에 의해 배당군단별로 利差配當率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는데 약관대출의 활용여부에 따라 利差配當率을 변경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약관대출조항을 배당율에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群團平均法과 個別計算法이 있다. 동일한 계약조건의 契約群을 풀(pool)로하여 평균적으로 공평성의 원칙이 달성되는 群團平均法은 문제가 없지만, 개별 계약마다 약관대출의 유무를 직접적으로 계약자배당의 계산에 반영하는 個別計算法은 약관상 보장된 대출권리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⁶⁴⁾

(2) 消滅時配當

미국의 소멸시배당은 英國과 日本의 資本利得(capital gain)의 분배라는 사고방식과는 달리 책임준비금 등의 금리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했던 內部留保를 환원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1948년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영업하고 있던 회사중 메트로폴리탄만이 消滅時配當을 실시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게 되고, 펀치카드시스템이 발전됨에 따라 1955년경에는 많은 회사가 消滅時配當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멸시배당에 대해 업계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1958년 뉴욕주 보험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運營基準를 작성·공표하였다. 즉, 이는 소멸시배당을 사망, 만기, 해약을 포함하는 모든 소멸계약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한 매년 保險廳의 認可를 받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3) 投資年度別配當

투자년도별방식 (Investment Year Method)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團體年金을

64) H. S. Huntington & R. M. Astley, Legal Requirements on Distribution of Surplus, S.O.A. Study Notes Part 10L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뉴욕주에서 1961년에 규칙33을 개정·공포), 1970년대 시중금리가 상승하여 신규투자의 수익율이 회사의 평균수익율보다 높아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보험에 대해서도 투자년도별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보험의 배당에 投資年度別方式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입장이 존재했었다.

- (i) 고금리상태에서 투자년도별배당방식을 적용하면 新契約者에게 有利하다. 즉, 이방식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분배가능한 잉여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계약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과거 20년간 대체로 기존계약은 신규 투자수익율보다 낮은 회사전체의 收益率에 기초해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그리고 만약 회사전체의 이율이 장기유지계약에 유리하게 되는 시점, 즉 금리하락기에 배당원칙이 변경된다면 형평성에 관한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ii) 可望顧客의 계약선택에 필요한 例示配當의 중요성은 점증하는데 비해, 그 신뢰성이 문제시된다. 신뢰성은 配當算式 變更의 頻度 및 程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규투자 이율은 회사전체의 이율보다 변동하기 쉬워, 신규투자 이율에 기초한 배당제도는 회사전체의 이율에 기초한 것 보다 例示配當과 實際配當의 乖離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 (iii) 신규투자에 의한 配當算式으로 이행하는 것은 일방통행과 같이 위험할 수 있다. 금리수준의 순환적 성질에 따라 신규투자 이율이 높을 때 표준적 방식을 포기한 회사는 예시배당으로 당분간은 有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조만간 이율은 주기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뉴욕州

뉴욕州 보험법 제4231조 및 규정39조는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州內 生命保險會社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당보험계약 및 연금·순수생존보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매년 발생된 잉여금 부분을 확인하고 또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毎年 契約應當日에 배당금을 할당해야 한다.
- (ii) 제1 보험년도 이후는 계약자배당의 지급을 다음 년도의 보험료의 납부조건으로해서는 안된다.
- (iii) 初年度配當은 사망율, 사업비율, 이율 등에 대해서 合理的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그 해에 실제로 수익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
- (iv) 할당된 배당금은 契約者의 選擇에 의해 다음 4종류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支給된다. 혹 계약자가 지급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상 어떤 방법에 의하는가를 明示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금보험, 정기보험은 ①, ②의 방법만으로 한다. 이밖에 제5의 방법으로서 1년 정기보험의 구입이 있지만, 이 방법은 당초 約款貸出에 의해 보험금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칙39로 정해져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積立配當金의 일부에서 정기보험을 구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① 現金
- ② 保險料 相殺
- ③ 完納保險의 購入
- ④ 附利 積立.

- (v) 相互會社は 配當保險만 판매한다. 단, 1983년의 하이만 보고서에서 이 조항의 삭제가 제안되어, 1987년 법개정으로 條件附로 상호회사의 無配當保險 판매가 인정되었다.

2. 英國

保險料 算出基礎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으며, 책임준비금 평가시 최고 이자율 등의 설정을 통해 요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責任準備金 評價利率은 평가년도방식으로 기존계약에 대한 평가이율도 매년 수정되기 때문에 평가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配當率이 전년대비 5%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 무역통산부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承認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가. 保險料率

(1) 料率規制

보험요율 또는 계산기초는 公示主義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경영판단에 맡기고 있다. 면허신청에 대한 業務計劃書의 일부분으로서 선임계리인이 보험사업의 각 종류에 적용하려는 기술적 기초(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필요한 기초를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뿐이다⁶⁵⁾.

65) 1982년 보험회사법 : The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제5조 1항,
1994년 보험회사규정 : The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1994, Schedule 1 Part I)

(2) 豫定利率

예정이율은 보험상품 만기에 상응한 국채 (Gilts) 수익율을 기본으로 인플레이션, 사업비, 세금, 향후 수익율예상 등의 변수를 감안한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다. 배당보험의 경우 3~4% 정도 수준이다.

나. 數理的 責任準備金(mathematical reserve)⁶⁶⁾

선임계리인은 1년에 1회씩 실시되는 재무상태 조사에서 소정의 평가규칙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貿易通産部에 보고해야 한다⁶⁷⁾.

(1) 計算基礎率

豫定利率은 생명보험에 귀속된 現存資産의 수익율 또는 필요한 경우 장래의 투자액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율을 감안하여 신중한 평가 (prudent assessment)를 통해 결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규정 69조). 여기서 신중한 평가란 자산운용 수익율의 97.5%를 의미한다.

자산운용 수익율의 평가는 固定收益資産에서는 연간 이자율로 하며, 變動收益資産중 주식 및 토지의 경우 평가일 이후 12개월동안 예상되는 수입의 자산 가치 대비 비율로 하고, 기타 변동 자산의 경우에는 年間收益率로 한다. 장래 투자에 대한 수익율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3년 이내의 경우에는 上記 방법을 따름) 다

66) 책임준비금(mathematical reserve)은 생명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설정하는 준비금(규정 2조)이다.

67) 1982년 보험회사법 18조

음 3가지 중 최저값으로 한다.

- 평가일 현재 장기국채수익율(만기 15년물 수익율의 中位數)

- $6\% + (\text{장기국채수익율} - 6\%) \times 1/4$

- 7.5%

평가이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투자대상 수익율의 97.5%를 加重平均하여 구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책임준비금은 자산의 변동에 대해 항상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計理人會의 「guidance note」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은 자산가격이 즉시에 하락하는 경우(예를들어 주가의 25% 하락, 금리의 3% 인상 등) 법령상의 最低責任準備金을 초과하는 준비금, 즉 mismatching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망율은 공표된 적절한 生命表 및 해당회사의 經驗死亡率을 이용하고, 사업비율은 현존 계약의 보전, 세금, 장래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計算方法

생명보험 채무의 규모는 개별 계약별로 將來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규정 65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 단위로 평가될 수 없는 일반적 위험에 대비해 추가적인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고, 계산방법 및 계산에 이용된 가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장래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경우 過去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계약별로 계산하는 것보다 채무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경우 근사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純保險料式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3.5% 이내의 질

멜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단, 질멜공제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신계약비의 동일계약군의 평균을 상회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業務計劃書에 기재된 新契約費까지 질멜控除를 할 수 있다.

(3) 實際 責任準備金の 積立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은 최저책임준비금 이상을 조건으로 각 회사의 選任計理人이 결정한다. 실제로는 장래 배당지급을 고려한 bonus valuation reserve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는 장래에도 현재의 배당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배당지급규모를 책임준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한편 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은 評價年度方式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다.

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식을 원칙으로 하고, 全期질멜式을 최저한도로 하여 적립하며, 질멜控除 限度는 보험금액의 3.5% 이내와 신계약비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무역통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적용하는 평가이율은 자산운용수익율의 97.5% 수준이며, 사망율은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공표된 死亡率이나 障害率을 적용한다. 또한 負債準備金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준비금이 해약환급금 이하가 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다.

다. 契約者配當

1) 保險契約者 配當制度의 內容

영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利源別配當方式이 아니고 資産割當方式 (asset share)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유지기간중에 회사재산에 기여한 정

도(미실현이익 포함)를 자산할당방식⁶⁸⁾에 의해 계산한 후 계약자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평할조정과정(soomthing)을 거쳐 매년 保險金買増配當 (reversionary bonus)을, 계약소멸시 最終精算配當의 성격인 消滅時配當 (terminal bonus)을 실시한다. 여기서 「reversion」은 장래재산권이라는 辭典的 意味를 갖는데, 배당금이 被保險者의 사망이나 보험계약의 만기시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 배당, 현금배당, 보험료상쇄배당은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할 때만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매증배당은 자산할당에 의해 산출된 계약자의 보험회사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기초하고, 배당이 매년 실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配當率을 결정한다. 따라서 형평성을 위한 조정도 消滅時配當에 비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 배당규모는 보험금액의 일정비율로 표시되는데, simple bonus는 보험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compound bonus는 당초보험금액과 직전년도 보험금매증배당 누계액의 일정 퍼센트로, super-compound bonus는 당초보험금액의 일정 퍼센트와 직전년도 보험금매증배당 누계액의 일정 퍼센트의 합계액이며, 배당율이 가장 높다.

68) 과거법 자산할당 (retrospective earned asset share)은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산출한 개별계약의 회사재산에 대한 개념적 지분의 가치이며,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A_t = \{(A_{t-1} + \pi_t - E_t)(1+i_t) - Q_t\}(1/P_t)$$

단, A_t , A_{t-1} : 자산할당액

π_t : 영업보험료

E_t : 경비중 해당계약에 할당되었다고 평가되는 액

i_t : 자산수익율

Q_t : 연중의 사망급부금중 해당계약에 할당된 금액

P_t : 연말의 생존율

소멸시배당은 재산형성 기여도(未實現利益 포함)를 자산할당방식으로 추정하고 계약자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소멸시 정산의 성격으로 결정된다.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투자내역을 보면, 주식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배당결정시 보험계약자간 衡平性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소멸시배당은 도입 원인이 전후 株價上昇에 따른 미실현이익의 환원에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국의 배당제도는 確定剩餘金 (established surplus = 생명보험펀드 - 책임준비금)과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확정잉여금에서 계약자배당과 주주배당이 이루어지는데 (1982년 보험회사법 34조 4항), 주주배당은 1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보험펀드 (long-term business fund)는 보험채무나 배당을 위해 설정된 계정으로, 前年度末 殘高에 당년도 收支殘高(보험료, 이자, 배당수입, 매각익 등에서 보험금,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를 합한 금액이다. 미실현이익중 일부는 수지잔고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재평가준비금 (revaluation reserve)로 귀속되며, 재평가준비금 귀속 부분도 추후 수지잔고로 다시 환입될 수 있다. 賣却益은 일부가 투자준비금 (investment reserve)으로 귀속되고 추후 다시 수지잔고로 환입될 수 있다.

배당규모는 생명보험펀드와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험회사는 지급능력 측면에서 보아 책임준비금의 조정은 힘들기 때문에 생명보험펀드에 의해 배당율이 결정된다. 先任計理人은 자본손익의 변동에 따라 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고 또한 보험회사의 支給能力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배당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배당환원율(배당금 / 확정잉여금)이 전년대비 0.5% 초과 인하되는 경우에는 무역산업부(DTI)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2) 配當制度의 變遷

영국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쿼티블社가 1776년에 결산을 실시하여, 보험료 총액의 10%를 1777년 11월 이후 納入保險料와 상쇄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상회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했다. 5년후 작성된 생명표와 3% 예정이율로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기존요율에 비하여 대단히 낮았지만 요율의 급격한 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15%의 安全割増이 부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율수준이 여전히 낮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既契約에 대해 보험료 불입회수에 따라 보험금액을 인상하였다. 1782년의 배당율은 경과연수 각년도에 대해 1.5%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약 200년간에 걸쳐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었던 보험금균일증액배당 (uniform reversionary bonus)제도의 시초였다.

19세기에는 다른 배당방식이 도입되었고, 특히 1985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8개사가 利源別配當方式를 채택했지만, 영국에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균등보험금증액배당방식으로 통일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주가 대상승으로 인한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증가는 약 200년간 유지되어 온 보험금균일증액배당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 대형 3사가 동시에 追加配當을 발표한 것이다. A사는 評價益의 計上에 의해 5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特別保險金額增額配當을 실시했다. B사는 투자준비금의 철폐에 의해 3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특별보험금증액배당을 하였다. C사는 주식배당의 증가에 의한 계상이익으로 次年度에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서 경과연수에 비례한 특별배당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주가상승에 따라 장기유지계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코자 한 것이었으며, 이는 다른 저축수단과 비교됨에 따라 그 정도가 더해졌다. 보험회사는 有價證

券의 미실현이익을 공표하였고, 특별배당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에는 資本利益(capital gain)의 환원을 위해, 그리고 投資信託會社와의 경쟁을 위해 C사가 채택한 소멸시배당방식이 정착되었다. 소멸시배당의 算式은 다음 3개의 방식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다.

- (i) 보험금 및 보험금매증배당에 대하여 경과연수별지수를 곱한 것
- (ii) 보험금을 기초로 경과연수별지수를 곱한 것
- (iii) 보험금매증배당의 일정율

3) 배당규제

확정잉여금을 구성하는 자산은 적절한 최저액 (relevant minimum) 이상을 배당한 경우, 또는 적절한 최저액 미만의 배당에 대한 무역산업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시하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 생명보험사업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ii)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적절한 최저액은 $(\text{전년도 배당금} \times \text{당년도 확정잉여금} / \text{전년도 확정잉여금} - \text{당년도 확정잉여금} / 200)$ 인데, 이를 정리하면 $\{\text{당년도 확정잉여금} \times (\text{전년도 배당금} / \text{전년도 확정잉여금} - 0.5\%) \}$ 이 된다. 즉, 배당율이 전년도에 비해 0.5% 초과하여 하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배당과 관련하여 선임계리인은 법 등에 의해 정해진 배당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普通保險과 簡易保險을 구분하여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평가보고서 (valuation report)를 결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 재무제표 등과 함께 무역산업부(DTI)에 제출해야 하고, 책임준비금의 평가, 생명보험펀드의 확정잉여금으로의 분배, 최저지급여력의 계산에 대한 양식이 정해져 있다. 또한 적정준비금 (proper provisions)에 대한 증명서를 무역산업부(DTI)에 제출해

야 하며, 실무기준(Guidance Note)에 의하면 전문가의무 (professional duty)가 부과되는데, 확정잉여금으로부터의 계약자와 주주간 분배 및 분배내용에 대한 경영층에의 조언 및 권고, 決算前에 배당율을 확정하는 경우 확정잉여금 예측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당예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가 작성한 guidance note에 잘 나타나 있다. 보험회사는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사망보장을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누적계산에 의한 급부액에 대체하여 적정한 배당율을 상정하여 例示受取額을 산출할 수 있다. 그 경우 예시수취액은 지정계산기초에 기초한 누적계산방법에서 산출한 최고액을 상회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상의 보험금증액배당과 소멸시배당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배당예시되는 금액이 장래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오도해서는 아니된다.

3. 日本

保險商品の 요율은 適正性, 公平性, 健全性を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契約者配當 역시 通達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認可・承認制度下에서 원칙적으로는 각사가 자유롭게 보험요율 및 배당율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각사의 經營效率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保險料

1) 料率規制

보험업법 제4조(면허신청절차) 제2항에서는 免許申請書에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23조에 의하면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大藏省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은 保險料率의 規制를 통해서 보험요율의 諸原則을 達成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회사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대장성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會社別 요율수준이 差等化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생명보험의 요율제도는 固定認可料率로 규정할 수 있다.

2) 豫定利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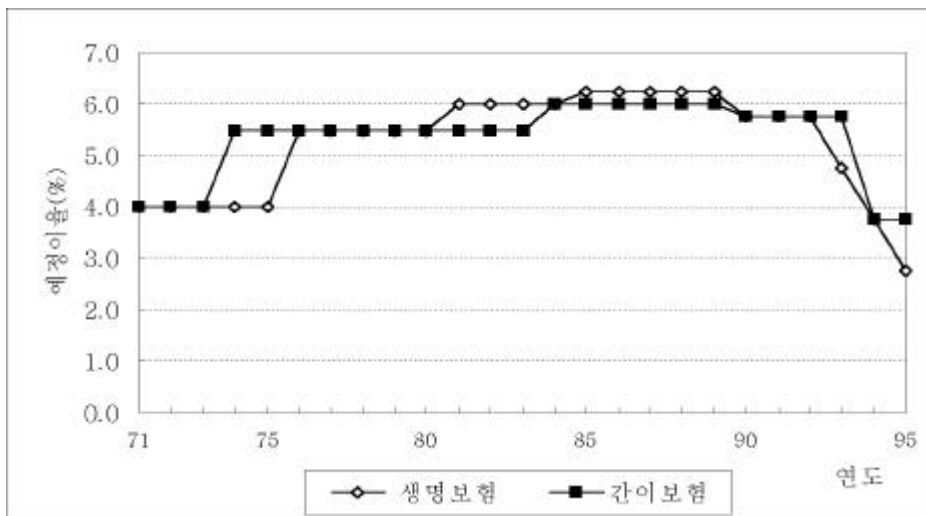
예정이율은 대체로 長期國債收益率의 80%와 株式配當 收益率의 20%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1993년 이후는 금리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단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형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배당보험은 배당보험 예정이율보다 0.5% 높은 수준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日本の 생명보험 예정이율은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1930년대 중반 자산운용수익율의 저하로 1937년 회사별로 0.5~1% 포인트 인하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3.5% 예정이율을 이용했다. 1946년에는 戰後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3%로 인하되었으나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산운용수익율이 상승

하여 예정이율이 1952년에는 4%로 복귀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簡易保險의 예정이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수익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예정이율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5.5%로(보험기간 20년 초과인 경우는 5.0%), 1986년에는 6.0%로(보험기간 10~20년은 5.5%, 20년 초과는 5.0%), 1985년에는 6.25%로(보험기간 : 10~20년은 6.0%, 20년 초과는 5.5%) 인상되었다. 1974년에는 5.5%로(보험기간 20년 이상은 5.0%), 1981년에는 6.0%로(10~20년은 5.5%, 20년 초과는 5.0%), 다시 1985년에는 6.25%로(10~20년은 6.0%, 20년 초과는 5.5%) 인상되었다(그림 부록-2 참조).

<그림 부록-2> 日本의 生命保險 豫定利率 推移



- 주 1. 예정이율은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임.
 2. 민영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실적임.

이러한 豫定利率의 引上은 자산운용수익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는 결국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예정이율을 1990년에 5.75%로, 1993년에는 4.75%로, 1994년에는 3.75%로, 1995년에는 다시 2.75%로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이 예정이율이 급락함에 따라 상당 부분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은 이차배당기준율을 초과하여 利差損이 발생하였고, 그 규모가 死差益과 費差益으로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는 보유주식의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個人保險의 예정이율과 함께 企業年金 예정이율도 1996년 4월부터 2.5%로 2%포인트 인하되었다. 개인보험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가 기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0.1 0.2% 인하효과밖에 없으나, 기업연금의 경우 기존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費用減少效果가 있다.

3) 豫定事業費率

개인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은 대형사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개진한 후 대장성에서 중소형사와의 절충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會社規模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회사가 同一한 예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예정사업비율을 높게 잡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다소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하여 보험료 수준을 동일하게 맞춘다.

新契約費는 1970년대 중반까지 보험금액의 30/1,000이었으나, 이후 보험금액 비례부분(10년 이상은 25/1,000이고 10년 미만은 17/1,000~25/1,000)과 영업보험료 비례부분(보험료의 0.1~2%)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維持費는 보험금액에 비례하는데, 1950년대 7/1,000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3년 3월

현재 양로보험의 경우 2.4/1,000이다. 收金費는 영업보험료에 비례하는데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보험료의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責任準備金

保險業法 제116조(責任準備金)에 의하면, ① 保險會社는 매결산기에 장래의 債務移行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② 大藏大臣은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기타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고,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보험계약을 再保險에 부보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기타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장성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도부터 標準責任準備金制度가 도입되었고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최저규모 이상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保險料 積立金, 未經過保險料, 危險準備金을 적립해야 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장성 告示 第48号⁶⁹⁾에 의해 적립방법, 예정

69) 保險業法 제116조 제2항 (제199조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기초하여 長期의 보험계약 (외국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일본에서의 장기의 보험계약)은 대장성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립방법, 예정사망률, 기타 책임준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호의 계산방법과 제2호 및 제3호의 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이 契約者價額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해 契約者價額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1. 적립방식은 평준순보험료방식으로 한다.
2. 예정사망율은 사단법인 일본계리인회가 작성하고 대장대신이 검증한 것으로 한다.
3. 예정이율은 연 2.7%로 한다.

사망율, 기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 즉, 積立方式은 平準純保險料方式으로 하고, 豫定死亡率은 사단법인 일본계리인회가 작성하고 대장대신이 검증한 것으로 하며, 豫定利率은 연 2.7%로 한다. 여기서 예정이율 2.7%는 지급여력기준에서 사용하는 금리리스크의 기준금리를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산된 보험료적립금이 契約者價額(해약환급금)을 下回하는 경우에는 당해 契約者價額을 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여기서 표준책임준비금 평가이율 2.75%는 1995년도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같은 값이다. 이는 아마도 일본에서는 아직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大藏省의 事前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과 표준책임준비금 평가이율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契約者配當制度

1) 配當制度의 概要

일본의 배당은 利差配當, 死差配當, 費差配當, 特別配當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이익(income gain)은 이차배당으로, 미실현이익(capital gain)은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利差配當은 (이차배당율 $\times$ 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산되는데, 大藏省의 行政方針으로 각사별로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死差配當은 {사차배당율 $\times$ (보험금액-보험년도말 보험료적립금)}으로 결정된다. 사차배당율은 성별·연령별로 결정되며 대체로 3~5년마다 변경되며 死差益의 5%는 위험준비금으로 사내유보토록 하고 있다. 費差配當은 (비차배당율 $\times$ 보험금액)으로 결정된다. 과거 비차익은 높은 부가보험료, 특히 높은 유지비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부가보험료가 줄어들어 비차익을 실현하는 회사가 소수에 불과하다. 特別

配當은 純保行政下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이 충실화되었고,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할 필요성이 생겨 1971년 결산부터 도입되었다. 특별배당은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배당으로 구분된다. 長期維持配當은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이차익의 범위내에서 이차배당 소요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과년수에 대응하는 일정율) \times 보험년도말보험료적립금\}$ 이 지급된다. 소멸시배당은 보험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된 후 소멸될 때 내부유보된 금액을 환급하는 배당이다. 현재 消滅時配當은 정기보험 등의 경우 (특별배당율 $\times$ 연간보험료), 다른 보험의 경우 (특별배당율 $\times$ 소멸시보험료적립금)으로 결정되며, 양자의 배당율은 같지 않다.

배당금 지급개시 시기의 관점에서 보면 個人保險은 3년차배당방식, 단체보험은 2년차배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年次配當方式의 경우 제1보험년도의 잉여는 제2사업년도말에 결정되며 이때 동 계약에 대한 배당을 할당하고 제3보험년도 개시일에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만기시에는 최종보험년도 및 직전 보험년도의 잉여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다.

2) 配當制度의 變遷

(가) 第2次大戰 以前

明治生命이 1881년 창업 이후 1885년 7월 첫번째 決算을 실시하여 配當金을 支給했다. 유배당계약의 보험료가 무배당보험에 비하여 10% 정도 높았기 때문에 보험료차를 매년 8%로 부리하여 배당한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어 다양한 배당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산출기준에서는 「연납보험료 $\times$ 경과년수 $\times$ 배당율」의 방식이, 配當開始期에서는 4년차배당이 가장 많이 이

용되었다.

昭和初期(1926년 이후)에는 低金利時代이기는 했지만, 保險料에 經過年數에 따른 係數를 곱한 소위 累加配當方式에 의한 高料率・高配當과 低料低配當商品이 시장에서 격심하게 경쟁한 시대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累加配當方式이 포기되었다.

(나) 第2次大戰 이후 保險審議會의 開催까지 (1948 1958)

1948년도 결산에서 0.3%의 配當을 再開하여 전후 혼란기의 付加保險料 引上의 정산을 도모하였고, 1950년에는 責任準備金 比例配當을 도입함으로써 利源別配當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또한 회사에 따라 配當開始年度가 2년차배당회사에서 4년차배당회사까지 다양하였으나 1958년 個人保險에 대해서 4년차배당이 3年次配當으로 변경하였다.

(다) 配當率의 個別化의 進展과 内部留保의 充實 (1959 1970)

1959년 7월에는 保險審議會가 개최되었고 1962년 3월 생명보험계리에 관한 答申에서는 계약자배당에 각사의 실적을 반영해야 하고, 2년차배당방식과 3년차배당방식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현실적으로는 1960년부터 각사의 經營效率, 内部留保의 水準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配當率의 個別化가 進展되었다. 또한 1968년 7월에는 “國際化・資本의 自由化”에 대비한 企業의 재무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서 責任準備金の 充實化가 行政方針으로 주창되어, 각사의 실정에 따라 計劃的 그리고 段階的으로 純保險料式的 積立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라) 特別配當의 導入과 發展 (1971)

純保行政 결과 1970년부터는 純保險料式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회사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 달성후 增配餘力を 과당경쟁으로 돌리지 않고, 契約者還元을 도모하기 위해 長期繼續契約者에게 重點的으로 還元하는 特別配當制度를 도입하게 되었고, 1975년에는 定着段階에 돌입했다. 1986년 결산부터는 金利低下에 따른 通常利差配當의 축소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특별배당의 역할이 다시 重要視되었으며, 現在는 株式의 時勢差益 還元이라고 하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特別配當의 財源確保와 관련하여 看過할 수 없는 點을 두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오일쇼크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1974년 昭和20년대(1945-1954) 계약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에 의한 實質價値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財源을 事前積立한 것인데, 그 방식은 特別責任準備金을 적립함으로써 실시된 點이다(一定期間으로 分割하여 積立했음). 둘째, 1976년 이후 昭和30년대(1955-1964)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도 특별배당의 財源確保를 위해 몇몇 회사에서 一部 事前積立制度의 導入을 꾀한 點이다. 이것은 消滅時特別配當에 대해서 그 1/2정도를 목표로 約款을 變更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구조는 소정의 年數가 경과한 뒤에 소멸하는 계약에 대하여 割當을 하는 契約者配當割當의 規定과 契約者配當金特殊支給特約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養老保險을 買增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후 特別配當은 定期保險등의 취급과 配當買增契約에 대한 取扱으로 전개되었다. 定期保險(정기특약을 포함)은 책임준비금이 만기시에는 영이 되므로 소멸시배당금이 (소멸시 책임준비금)×(경과년수에 따른 지수)로 결정되는 방식이 적합하지 못했다. 따라서 1986년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정기보험에 대하여 보

험료에 경과연수에 따른 一定率을 곱하는 방식을 채용하였고, 1987년에는 배당율의 인상을 단행하였다. 配當買増契約(소위 孫配當)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經過年數를 主契約의 年數와 같게 하고 그 率을 全般的으로 主契約의 0.1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 配當規制制度

配當率 및 그 財源의 계산은 대장대신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가지 관점에서보아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장대신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⁷⁰⁾. 또한 定款에 의거, 相互會社는 결산시 잉여금의 90%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다. 株式會社의 경우 배당준비금 전입이 비용항목으로 계상되고 이익금은 자본계정에 계상하는데, 배당준비금으로 배당준비금 전입액과 이익금 합계액의 9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정관의 변경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율 및 그 재원의 계산 뿐만 아니라 配當準備金의 事前 積立에 대해서도 規制를 받고 있다.

70) 通達 藏銀 제500호 제4의 경리관계 3(계약자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신고 등)

- (1) 법 제114조 및 58조 규정에 의해 계약자배당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의 분배를 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그 재원에 기초한 계약자배당을 및 사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율을 공평하게 설정한다.
- (2) (1)의 계약자배당을 및 잉여금분배율 및 그 재원의 계산에 대해서는 법 제128조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 및 정기사원총회 회의일 이전 8주내에 대장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대장대신은 신고받은 계약자배당을 및 잉여금분배율 및 그 재원의 계산이 생명보험회사의 업무의 건전성, 적정성의 확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132조 (또는 법 20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配當準備金 換入率을 보면 100%에 가깝다. 예를 들어 1994년도에 총잉여금이 1조 2,535억엔이었는데, 배당준비금으로 환입된 금액은 1조 2,414억엔으로 환입율은 99.0%에 이른다. 또한 배당준비금환입 규모가 1990년을 고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6 참조).

<표 부록-8> 日本의 保險契約者 配當準備金 換入規模의 推移

연 도	1975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총잉여금(억엔)	7,879	24,338	37,345	28,955	20,085	14,772	12,535
배당준비금환입액(억엔)	7,827	24,235	37,228	28,840	19,963	14,649	12,414
환입율(%)	99.3	99.6	99.7	99.6	99.4	99.2	99.0

資料 : 日本生保協會, 생명보험 Fact Book, 1995

4) 消滅時配當制度

특별배당은 純保行政下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이 충실화되었고,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變額保險의 도입에 영향을 받아 1971년 결산부터 도입되었다. 특별배당은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배당으로 구분된다. 장기유지배당은 이차배당을 보완하고 있으며, 소멸시배당은 계약소멸시 정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당초에는 滿期時에만 보험금의 1%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에 대한 호응이 좋아 만기 뿐만 아니라 사망(1972년), 해약(1974년) 등 消滅時 保險料積立金の一定率을 배당하기 시작했다. 배당율 또한 인상되었는데, 1972년도 10년 이상의 경과연수에 따라 증가하여 최고 15%, 1973년도에는 최고 40%, 1975년도에는 50%까지 올라갔다. 이를 통해 未實現利益을 환원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매

력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살렸다. 그러나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 보험료적립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멸시배당의 혜택을 볼 수 없었고, 또한 個人年金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는 특별배당을 지급하였으나 연금이 매년 지급되는 기간에는 보험회사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배당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계약자간 衡平性 問題가 대두되었다.⁷¹⁾ 이에 1986년 결산부터 정기보험에서는 보험료기준으로 소멸시배당을 실시하고, 매년 지급되는 연금에서도 특별배당을 도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배당은 정기보험 등의 경우 (特別配當率×年間保險料), 다른 보험의 경우 (特別配當率×消滅時保險料積立金)으로 결정되며, 양자의 배당율은 같지않다.

특별배당 도입 초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지급이 예정되는 特別配當金額에 대해서 當年度末 決算에서 剩餘金을 계상하는 Terminal Funding방식도 허용되었다. 그 후 特別配當制度가 定着함에 따라서 그 繼續的 安定性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財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特別保險金 買増이라는 형식으로 事前積立을 하는 회사가 증가하였다.

한편, 特別配當制度가 정착된 1974년도에 대장성은 일본계리인회에 「保險契約者配當의 基本方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答申을 하였다. (i) 特別配當制度란, 長期繼續的으로 維持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株式, 不動産등의 非固定 利付投資로부터 발생하는 内部留保 및 지불여력 (Solvency Margin)으로서 회사에 留保된 것 중, 그 계약의 持分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最終精算하는 것(μ 配當) 및 内部留保로부터 발생하는 利子配當(利配)收入을 還元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의 差異에 따라 分配可能剩餘金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회사의 利益自體가 그것(책임준비금 적립방식)

71) 1985년 보험심의회 답신

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分配可能剩餘金과 内部留保의 相互交換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金利下落期の 配當制度

일본의 金利는 198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1987년에는 중앙은행금리(公定歩合)가 2.5%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는 Hardy방식⁷²⁾에 따른 總資産收益率의 低下에 따라 利差配當率을 포함한 제반 利率의 再調整이 요청되는 한편, 巨額의 미실현이익의 발생이 예견되어 1986년 8월 생명보험협회내에 特別問題研究會를 設置하여 (i) 配當體系의 基本方向, (ii) 諸般 積立利率, (iii) 資産運用收益率의 表示, (iv) 一時納養老保險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利子配當 收入과 未實現利益과의 區分이 모호해져 利源分析 技法의 修正이 필요함
- 金利變動이 심한 시기에는 利差配當率의 彈力化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保險種類, 經過年數등에 따라 差異를 두는 것이 不公平性を 초래하는 것은 아님(投資年度別 配當的 概念의 容認).
- 特別配當에 대하여는 최근 수년동안의 高株價를 배경으로 契約者還元의 要請이 강해지고 있는데(금리의 下降期에는 株式, 債券등 保有有價證券의 價格이 上昇함) 특별배당 수준의 引上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72) \quad i = \frac{2I}{A + B - I}$$

i : 자산 수익율, I : 투자 수입
A : 연시 자산, B : 연말 자산

6) 配當例示制度

과거 법령인 「保險募集의 團束에 關한 法律」의 제15조 제2항에서 戰前의 契約者配當을 둘러싼 過當競爭에 대한 反省의 의미에서 “募集文書圖畫에는 保險회사의 장래의 利益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한 豫想에 관한 사항을 記載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募集資料에 配當金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품 선택시 정보가 不充分하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경고문과 함께 配當例示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⁷³⁾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收益率이 떨어져 配當을 줄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장래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有意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배려하여, 1987년도 결산에서 消滅時特別配當을 經過年數가 오래된 계약에 대하여 引上을 꾀했지만, 그 인상분은 모집자료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新保險業法 제30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將來의 契約者配當 또는 社員에 대한 剩餘金 分配 기타 장래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대장성령에 정한 것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확실한 것으로 誤解시킬 憂慮가 있는 것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73) 文句는 다음과 같다. 「기재된 配當數値는 ××××년도의 支給配當率이 지속된다 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것으로 向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將來의 支給額을 約束하는 것은 아닙니다.」

< 參考文獻 >

- 권재중,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김성재, “환경변화에 따른 생보사의 경영리스크와 감독정책”, 한국위험관리학회
세미나자료, 1994.4
- 김성재, 계약자배당의 이론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33집, 1989
- 노상봉, 홍법식, 「보험업법 축조해설」, 매일경제신문사, 1995
- 류근옥·구본성,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험조사월보, 1994. 7
- 박상욱, 생명보험 계약자배당에 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1994
- 보험개발원, 「FY'95 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 1996. 7
- , “무배당보험 판매에 따른 회사의 손익구조 변화”, 「생명보험상품」,
1993. 7
- 신남진, 계약자배당에 관하여, 보험학회지 제32집, 1988
- 양승규, 「보험법」, 1992
- 이경룡, 생명보험기업의 잉여금배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36집, 1990
- 이명주, “무배당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소고”, 「생협」, 1992.9
- 재정경제원,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1996. 8
- 조정구,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4
- 조해균, 「최신보험경영론」, 박영사, 1994
- 한국은행, 「한은정보」, 1995.10
- 한일경제연구소, 「한일경제」, 1996. 9

A.M. Best Company, *Insolvency study*, 1992

Trowbridge, Charles L., Theory of Surplus in Mutual Insurance Organization,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Actuaries, Vol.11, 1967

Huntington, H. S. & R. M. Astley, *Legal Requirements on Distribution of Surplus*,
 S.O.A. Study Notes Part 10L

Skipper, Harold D.,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OECD, 1993

Rosser, Harwood, A Present Value Approach to Profit Margins and Dividends,
Transaction of the Society of Actuaries, May, 1951

Birds, John, *Modern Insurance Law*, 3d, 1993

Black, Kenneth, Jr., Harold D. Skipper, Jr., *Life Insurance*, 11ed., 1987

Mark A. Tullis ²¹, *Valuation of Life Insurance Liabilities*, ACTEX 1990

Walden, Michael L., Can Regulators Help Consumers Make Better Choice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March, 1985, Vol.3 No.3

Saunders, R. Arthur, FSA, "Individual Life Insurance Dividends", Education and
 Examination Committee of the S.O.A, 1989

Winters, Robert C., Philosophic Issues in Dividend Distribution,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Actuaries*, Vol 30, 1978

Heath, Roger R., Disclosure System : Can an Ideal Method Be Found?, *Record*,
 Vol.17 No.2, 1991

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5,11

- 江澤 雅彦, 生命保険における利回り開示論議の展開, 文研論集, 1991.6
- 鎌野創一郎, "利差配當の 長期安定化に關する", 日本 計理人會報 第44號, 1991
- 山本孝之, 日本の生命保険, 財經詳報社, 1990
- 上田 和勇, 美國生保市場における價格競争と關聯問題に關する一考察, 文研論集, 1996.6
- 小藤 康夫, 生保の配當政策と資産運用, 文研論集, 1991.6
- 小藤 康夫, 生保會社の資産運用と配當率平準化現狀, 文研論集, 1992.6
- 矢野 陽一郎, インカム配當原則について, 生命保険經營, 1989.11
- 油谷 章, 總資産利回りと豫定利率について, 日本 保險計理人會 會報 第37號 第2分冊, 1984
- 井口富夫, 現代保險法の産業組織
- 河原崎 純 一, 豫定利率の數理, 日本 保險計理人會 會報 第39號 第2分冊, 1986